

目 次

第1章 區 沿革 及 現況	33
I . 沿革 及 現況	35
1. 西大門區 沿革	35
2. 區政現況	37
II . 行政與件	40
1. 行政機構 及 人力	40
2. 財政與件	41
III . 議會沿革 及 現況	43
1. 議會沿革	43
2. 議會現況	44
第2章 議會運營	47
I . 本會議 運營	49
1. 集會 · 本會議 · 會期	49
2. 構成	50
3. 案件處理	51
II . 委員會運營	67
1. 議會運營委員會	67
2. 總務委員會	77
3. 市民建設委員會	113

4. 特別委員會	128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181
I . 區政質問	183
1. 現況	183
2. 質問 및 踏査	184
II . 行政事務 監査	212
1. 概要	212
2. 議會運營委員會	212
3. 總務委員會	215
4. 市民建設 委員	235
III . 民願處理	254
1. 現況	254
2. 請願處理	255
3. 陳情處理	257
IV . 研修 및 세미나	259
1. 議員研修 및 세미나	259
2. 海外研修	259
附 錄	273

區 沿革 및 現況

I. 沿革 및 現況

II. 行政 與件

第1章 區沿革 및 現況

I. 沿革 및 現況

1. 西大門區沿革

서대문 지역은 멀리 석기시대로부터 씨족끼리 취락을 이루며 농경과 수렵·어로 활동등을 통하여 생활기반을 다져온 곳으로, 당시 유물로는 신촌에서 흑요석과 옥수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에 들어와 B.C 18년에 백제의 땅이었으나, A.D 475년 장수왕이 한강유역을 점령함에 따라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었다가, A.D 553년에 다시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양군으로, 고려시대에는 12목의 하나인 양주로 개칭되었으며, 문종 21년(A.D 1087년)에는 3소경제도를 채택하여 양주를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태조는 한양을 한성부로 개칭하고 5부 52방의 행정구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서대문구는 서부에 속하는 반송방, 반석방, 상평방, 연희방, 영은방의 일부지역으로 중국과의 교류시 진입로 역할을 하였다.

1910년 치욕적인 한일합방이 되면서 지금의 서대문구는 한성부와 경기도 고양군에 각각 분리 편입되었다. 1943년 6월 10일 區制가 실시되면서 서대문구역소가 경성부내에 설치되었으며, 1945년 10월 6일 서대문구역소를 서대문구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6년 8월 15일 경성부를 서울로 개칭하고, 그해 9월 18일 서울시가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었고, 9월 28일 서울시가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1946년 10월 일본식 동명 변경에 따라 町을 洞으로, 丁目을 街로, 通을 路로 고쳤으며, 1949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역확장에 따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전부를 서대문구로 편입하여 은평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2년 12월 28일 대신동을 신설하고, 1964년 6월 1일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서대문구의 노고산동과 대현동 일부지역을 서대문구로 편입하였으며, '64년 10월 29일

안산, 녹번, 대광, 흥은동을 각각 1,2동으로 분리하여 행정구역 동수가 53개동이였다.

1973년에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의 구파발리, 진관내리, 진관외리가 서대문구에 포함되어 진관동을 신설하였고, 마포구의 동교동, 서교동 일부가 서대문구에 편입되어, 서대문구의 성산동, 연희동 일부가 마포구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 및 시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연세대, 이화여대 등 대학이 8개교, 초·중·고등학교 43개교가 밀집되어 있는 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현재는 생활권이 다핵화됨에 따라 지역별로 특색있게 발전하고 있어 신촌지역은 외곽기능 역할증대에 따라 부도심권으로 성장, 상권형성 및 문화의 거리로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모래내지역은 농산물 직거래시장으로, 북아현지역은 가구전문상가로, 남·북가좌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 區政 現況

가. 一般현황

1) 위 치

구 청 소 재 지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 장 거 리
		지 명	극 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68-6	동단	서대문구 미근동 315-5	북위 37° 33' 33" 012 동경 126° 58' 08" 022	동서간 6.154m ² km
	서단	서대문구 북가좌동 254-1	북위 37° 34' 23" 761 동경 126° 54' 04" 616	
	남단	서대문구 창천동 30-16	북위 37° 33' 08" 408 동경 126° 56' 09" 822	남북간 6.275m ² km
	북단	서대문구 홍은동 산1-70	북위 37° 33' 36" 28 동경 126° 56' 08" 225	

2) 면 적

총 면 적	주 거 지 역	상 업 지 역	녹 지 지 역
17.7km ² (100%)	15.8km ² (89.3%)	0.2km ² (1.1%)	1.7km ² (9.6%)

3) 인 구

□ 동별세대 및 인구

동 별	면적 (km ²)	행 정 조 직		세 대 수	인 구 수
		통	반		
22개동	17.69	51	4,397	122,75	361,336
총 정 로 동	0.51	22	146	6	9,702
천 연 동	0.45	32	228	3,551	15,418
현 지 동	0.52	6	40	5,452	2,370
북아현 1동	0.28	21	152	873	11,911
북아현 2동	0.18	15	108	4,290	8,518
북아현 3동	0.62	26	189	2,986	16,463
대 신 동	2.02	23	130	5,572	8,387
창 천 동	0.61	22	154	3,340	11,833
연 회 1 동	0.90	27	202	4,744	16,241
연 회 2 동	0.58	25	180	5,637	13,979
연 회 3 동	1.57	19	147	4,663	12,964
홍 제 1 동	0.64	26	188	4,927	16,130
홍 제 2 동	0.59	22	168	5,482	13,934
홍 제 3 동	0.82	36	258	4,707	21,596
홍 제 4 동	1.06	17	109	7,237	9,424
홍 은 1 동	0.38	22	142	3,141	12,254
홍 은 2 동	1.22	39	277	3,826	23,058
홍 은 3 동	2.07	37	326	7,473	29,378
남가좌 1동	0.49	37	281	9,702	21,692
남가좌 2동	0.79	39	357	7,485	29,741
북가좌 1동	0.54	28	242	9,655	21,517
북가좌 2동	0.85	40	373	6,914	34,826

□ 인구추이

(단위 : 명)

연 도	세 대	인 구	인구밀도		면적(km ²)	세대당 인 구	
			남	여			
1986	99,148	401,326	201,176	201,150	22,699	17.68	4.0
1987	101,387	405,330	202,434	202,896	22,930	17.68	4.0
1988	103,151	396,892	198,541	198,351	22,449	17.68	3.8
1989	105,970	395,685	197,606	198,079	22,368	17.68	3.7
1990	103,372	387,089	194,964	192,964	21,882	17.69	3.7
1991	127,136	392,586	196,281	196,305	22,193	17.69	3.1
1992	122,844	390,140	195,000	195,140	22,054	17.69	3.18
1993	123,155	381,905	190,864	191,041	21,589	17.69	3.10
1994	123,325	374,662	187,350	187,312	21,179	17.69	3.04
1995	125,996	371,449	185,556	185,893	20,998	17.69	2.95

주) 1990년까지는 인구조사 결과이며, 1991년 이후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임(외국인 포함)

4) 주요시설

- 공공기관 - 88개기관(구·동23, 파출소 30, 소방서3, 우체국14, 기타18)
- 교육기관 - 51개교(대학8, 고등학교10, 중학교15, 초등학교18)
- 의료기관 - 396개소(종합병원3, 병·의원299, 안경업소71, 기타23)
- 문화재 - 17개소(사적6, 유형6, 무형4, 기념물1)
- 복지시설 - 134개소(도서관1, 수요시설4, 노인정51, 보육시설69, 공부방9)
- 도시기반시설
 - 도로 284.8km(도로율 16.8%)
 - 상수도 993.5km(보급율 100%)
 - 지하철 7.3km(2,3호선)
 - 하수도 397km(보급률 100%)
 - 도시가스보급 69,038가구(보급률 56.4%)

Ⅱ . 行政與件

1. 行政機構 및 人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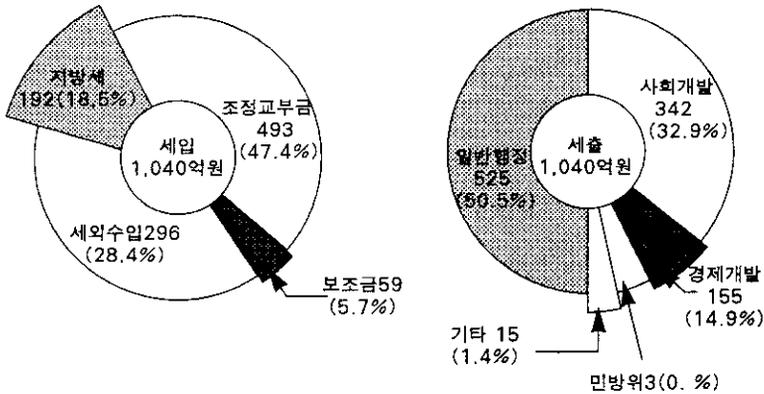
- 기구 - 1소, 1실, 5국, 3담당관, 27과, 22동, 143계, 2전문위원
- 인력 - 정원 1,451명, 현원 1,445명(부족 6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과 부 족
	계	행정	기술	별정	전문	기능	고용	계	행정	기술	별정	전문	기능	고용	
계	1451	748	198	24	12	307	162	1445	724	189	31	9	344	148	-6
구 본청	877	335	125	12	7	258	140	889	365	124	13	4	280	103	+12
동	465	395	22	4		22	22	449	340	15	10		40	44	-16
보 건소	83	7	51		5	20		81	7	50		5	18	1	-2
구 의회	26	11		8		7		26	12		8		6		

2. 財政與件

1997년도 최종예산규모는 1,11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040억원(93%), 특별회계가 11억원(7%)으로 편성되었다.

1)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규모는 아래 도표와 같다.



2)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총 3종으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13억원),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5억원), 주차장 특별회계(59억원)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7회계년도 규모는 77억원이다.

□ '97 자치구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 별	총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97예산	'96예산	증감	'97예산	'96예산	'97예산	'96예산
계	3,051,945	2,624,862	16.2	2,739,394	2,379,437	312,551	245,425
종 로	134,939	118,224	14.1	110,615	98,881	24,324	19,343
중 구	144,072	133,417	7.9	124,375	116,263	19,697	17,154
용 산	111,257	94,661	17.5	100,622	88,856	10,635	5,805
성 동	128,881	92,980	21.4	100,706	83,686	12,175	9,294
광 진	103,567	90,988	27.8	96,896	76,302	6,671	4,686
동 대 문	123,332	104,707	18.3	108,200	92,503	15,132	12,177
중 량	117,143	93,835	17.7	106,645	85,013	10,678	8,822
성 북	129,447	104,075	24.4	120,129	98,756	9,318	5,319
강 북	95,424	80,133	19.1	88,712	74,593	6,712	5,540
도 봉	85,248	72,871	4.1	81,091	68,887	4,157	3,994
노 원	136,110	108,155	17.0	117,909	96,092	18,201	12,063
은 평	106,750	86,721	23.1	96,700	80,340	10,050	6,381
서 대 문	111,696	96,618	15.6	103,981	89,752	7,715	6,866
마 포	130,663	106,919	22.2	116,087	95,632	14,576	11,287
양 천	107,977	90,414	11.8	103,500	87,292	4,477	3,122
강 서	120,426	121,032	△9.9	105,336	99,444	15,090	21,588
구 로	106,032	98,722	7.4	96,786	91,279	9,246	7,443
금 천	79,901	68,497	16.6	75,898	65,146	4,003	3,351
영 등 포	129,961	125,047	3.9	103,126	103,474	26,835	21,573
동 작	108,272	103,542	4.5	93,881	89,176	14,391	14,366
관 약	117,332	110,756	5.9	107,001	100,006	10,331	10,750
서 초	143,125	129,613	10.4	123,686	114,906	19,439	14,707
강 남	237,863	186,090	27.8	219,126	177,411	18,737	8,679
송 파	150,590	123,157	22.3	139,439	118,835	11,151	4,322
강 동	107,937	93,688	15.2	99,127	86,895	8,810	6,793

Ⅲ. 議會沿革 및 現況

1. 議會沿革

우리나라 정부수립의 이전의 지방자치는 고대관제나 지방제도를 통하여 그 연원을 상기할 수 있다. 즉 고구려의 5부 3경 군현제나 신라의 9주 5소경 117군 283현 등과 고려시대에는 사심판 제도와 상수리제도가 있었으며, 조선중기 이후 향약운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말기의 을미개혁으로 생긴 향회제도가 있었으나, 일제의 침략과 합병으로 더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폐지 되었다.

정부수립이후 1948년 7월 17일자로 제정· 공포된 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도록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및 의원의 선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써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도·시·읍·면에 각각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발발한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지방선거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구성이 지연되다가 1952년에 이르러 비로소 첫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1961년까지 9년간 3대에 걸친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된 바 있다.

제1대 : 1952~1956(4년)

제2대 : 1956~1960(4년)

제3대 : 1960~1961(1년)

그러나 1961년의 「5·16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적으로 해산되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수난 속에서 제7차 개정헌법(1972. 12. 27)에서 다시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동법 부칙 제10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 가능성은 아주 말살되었으며 지방자치의 암흑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제8차 개정헌법(1980. 10. 27)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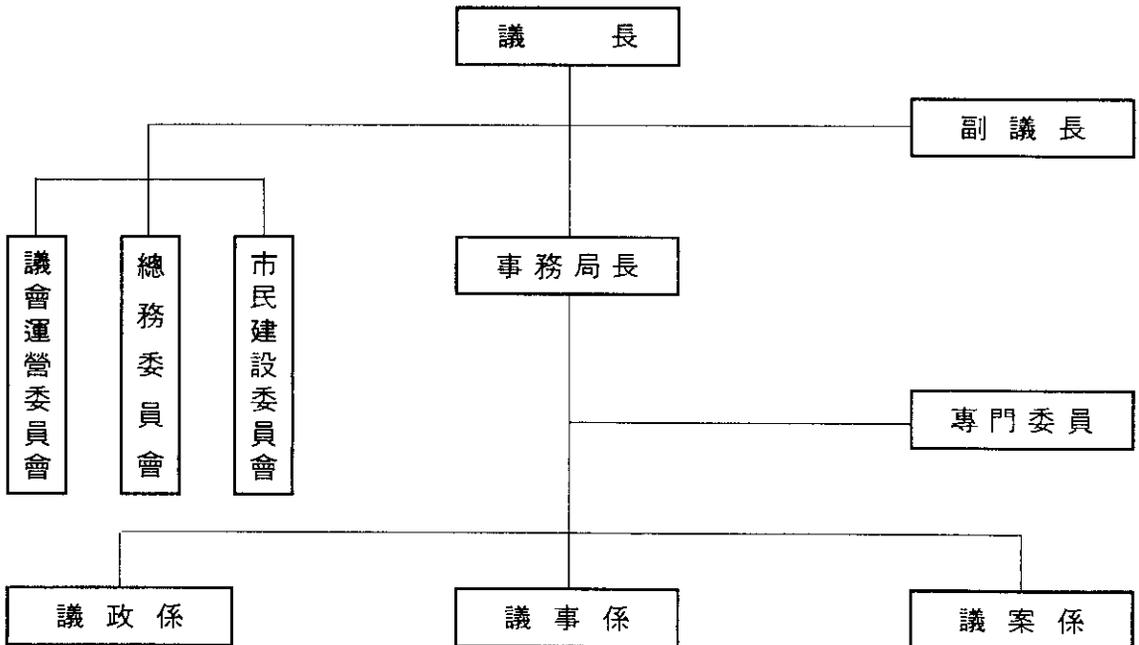
다。」라고 규정됨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가능성에 일말의 희망이 비쳐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여·야간에 정치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도 끝내 지방의회의 부활을 보지 못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민주화의 열망 속에 이룩된 제9차 개정헌법(1988. 2. 25일자 시행)에서 그러한 제한 규정(지방의회 구성의 유보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 지방자치법이 1988. 5. 1.부터 시행케 됨으로써 1991년 3월 26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도 관내 22개 동에서 당선된 29명의 의원으로 의회를 구성, 1991년 4월 15일 제1대 서대문구의회를 개원하였으며, 1995. 6. 27. 동시선거에 의거 제2대 의회를 구성, 1995. 7. 1.부터 의회가 활동중에 있다.

2. 議會 現況

가. 組 織



나. 構成

- 議 員 : 총 29명
- 構 成
 - 議 長 : 宋榮于 議員
 - 副議長 : 金平洛 議員
 - 常任委員會
 - 議會運營委員會 (9명)
 - 總務委員會 (14명)
 - 市民建設委員會 (14명)

다. 事務局 職員 現況

구 분	계	일 반 직					별 정 직				기 능 직				
		4급	6급	7급	8급	9급	5급	7급	8급	9급	타자	운전	방호	표결	위생
정 원	26	1	3	3	2	2	2	1	4	1	2	2	2	1	
현 원	26	1	3	4	4		2	1	3	2	1	2	1	1	1
과 부				+1	+2	△2			△1	+1	△1		△1		+1

라. 議會廳舍 現況

- 위 치 : 서대문구 현저동 산5-5
- 시설물 : 약 345평

(단위 : 평)

3층 (201)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제1 회의실	제2 회의실	사무국	사무국 장 실	전 문 위원실	자 료 실	방 호 원 실	복 도 기 타
	13.8	11	4.6	23	23	32	11	8.6	9	4	61
4층 (143)	본회의장	방청석		위원장실(3)		의원휴게실			복도, 기타		
	63	10		9		16			45		

第2章

議會 運營

I. 本會議 運營

II. 委員會 運營

第2章 議會 運營

I. 本會議 運營

1. 集會 · 本會議 · 會期

가. 集 會

- 地方議會는 항상 活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活動하게 되는데 議會고유의 權능을 行事하기 위하여 일정한 場所에 모이는 行爲를 말한다. 會期期間에는 本會議와 위원회 活動을 하게 되는데 委員會는 閉會期間에도 本會議 議決, 在籍議員 1/3이상의 요구, 의장 및 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하여 案件을 審査·議決할 수 있다.

나. 本會議

- 本會議는 在籍議員 1/3이상 出席으로 개의되며, 議會의 의사를 決定하는 최고 議決기관이다.
- 議會運營委員會가 있는 의회의 경우 本會議 개의시간은 本會議 의결 또는 議長이 동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동위원회가 없는 의회의 경우는 本會議 의결 또는 議長이 정하고 이를 變更할 때도 같다.
- 本會議에서 발언할 때에는 미리 議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質疑, 補充發言, 議事進行發言, 身上發言時間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會 期

- 地方議會는 臨時會와 定期會가 있는데 定期會는 매년 11월20일(광역)

과 11월25일(기초)에 정기적으로 集會하지만,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장이나 在籍議員 1/3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 議長이 15일 이내에 臨時會를 召集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 會期는 定期會의 경우 35일 이내, 臨時會의 경우 45일 이내로 하며 定期會와 臨時會를 합한 연간 總會期의 일수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構 成

第2代 前半期 議會가 '95. 7.19 構成되어 '97. 1.19 滿了되었으며, 議長團 및 議員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區 分		議長團		議 員	備 考
半期別	期 間	議 長	副議長		
전반기 (제2대)	96. 1. 1 ~ 10. 9	송영우	김평락	기창표 김동덕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종섭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박노현	총 29명
	96.10.10 ~ 10.22	조갑현	조재구	이석문 김영일 정연식 이진수 이성배 최광진 박덕균 강석준 정일출 권재일	
	96.10.23 ~ 12.31	송영우	김평락	임재선 홍성덕 오환인 허준구 정일수	

3. 案件處理

가. 현 황

區 分	會議 日數	案件 計	條 例			豫算案	決 議 承認案	請 願	陳 情 書	其 他
			制定	改正	否決					
計	80	148	9	19	7	4	16		17	76
臨 時 會	제39회	6	22	1	7	2		2	4	6
	제40회	10	19		1	1		1	3	13
	제41회	13	16					1	4	11
	제42회	2	19	3	4		1	1		10
	제43회	3	1							1
	제44회	1	7							7
	제45회	12	16					5		11
제46회	3	15	4	2	2			4	3	
定 期 會	제47회	30	33	1	5	2	3	6	2	14

1) 집회현황

회 기 별	집회공고일	개 회 일	폐 회 일
제39회 임시회	'96. 3. 7.	'96. 3. 13.	'96. 3. 18.
제40회 임시회	'96. 4. 26.	'96. 5. 7.	'96. 5. 16.
제41회 임시회	'96. 7. 6.	'96. 7. 19.	'96. 7. 31.
제42회 임시회	'96. 8. 16.	'96. 8. 22.	'96. 8. 23.
제43회 임시회	'96. 9. 24.	'96. 9. 30.	'96. 10. 2.
제44회 임시회	'96. 10. 2.	'96. 10. 10.	'96. 10. 10.
제45회 임시회	'96. 10. 12.	'96. 10. 19.	'96. 10. 30.
제46회 임시회	'96. 10. 30.	'96. 11. 2.	'96. 11. 4.
제47회 정기회	'96. 11. 19.	'96. 11. 25.	'96. 12. 24.

2) 會期別 開議日數와 會議時間

○ 本會議

會 議 別	會 期	開議日數	總會議時間
제39회 임시회	6	3	6시간 44분
제40회 임시회	10	8	3시간 9분
제41회 임시회	13	4	5시간 30분
제42회 임시회	2	2	10시간 28분
제43회 임시회	3	1	6시간 56분
제44회 임시회	1	1	3시간 37분
제45회 임시회	12	10	9시간 12분
제46회 임시회	3	2	29분
제47회 정기회	30	7	11시간 56분

○ 常任委員會

委員會 會期別	議會運營委員會		總務委員會		市民建設委員會		計	
	開議 日數	會 議 時 間						
제39회 임시회	3	5시간 30분	4	8시간 36분	4	7시간 21분	11	21시간27분
제40회 임시회	3	4시간 05분	1	3분	1	1시간 49분	5	5시간 57분
제41회 임시회	1	5시간 34분	4	7시간 19분	6	6시간 39분	11	19시간32분
제42회 임시회	1	2시간 02분	1	5분	1	2시간 24분	3	4시간 31분
제43회 임시회	3	6시간 24분					3	6시간 24분
제44회 임시회	1	24분					1	24분
제45회 임시회	1	58분					1	58분
제46회 임시회	1	2시간 14분	2	6시간 59분	2	2시간 6분	5	11시간19분
제47회 정기회	3	2시간 37분	15	25시간43분	13	30시간28분	31	58시간48분

○ 特別任委員會

위원회 회기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도시가스공사 행정조사특위		의사당건립 추진특위		윤리특위		조례정 비특위		재해대 책특위		일반폐기 물특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개의 일수	회의 시간
제39회 임시회			5	1시간24분										
제40회 임시회			4	5시간31분										
제42회 임시회	1	7시간38분												
제45회 임시회	1	58분			1	1시간 4분	1	12분						
제47회 정기회	4	16시간52분			2	28분	2	18분	1	50분	1	1시간13분	1	8분

3) 회기별 집회요구 현황

회기별	집회공고일	집회요구자	집회요구이유
제39회 임시회	'96. 3. 7.	김평락의원외 9인	
제40회 임시회	'96. 4. 27.	이석문의원외 9인	○'96년도 동행정업무보고청취 ○구정질문 및 조례안등 안전처리
제41회 임시회	'96. 7. 6.	박덕균의원외 9인	○'96추경예산안 ○조례안등 안전 처리
제42회 임시회	'96. 8. 16.	최광진의원외 7인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96추경예산안
제43회 임시회	'96. 9. 24.	박덕균의원외 18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및 조례안
제44회 임시회	'96. 10. 2.	박덕균의원외 19인	○의장,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제45회 임시회	'96. 10. 12.	박덕균의원외 10인	○구청업무보고 ○특별위원회구성
제46회 임시회	'96. 10. 30.	기창표의원외 9인	○조례안및 기타
제47회 정기회	'96. 11. 19.	지방자치법 제38조	○'96년도 정기회

○ 집회 요구자별 현황

요 구 자	회 수	비 고
의 원 집 회 요 구	8회	임시회
지 방 자 치 법 제 38 조	1회	정기회
계	9회	

의 회 운 영 현 황

1) 본회의

개 회 회 수			개 회 일 수			처 리 안 건			
계	정기회	임시회	계	정기회	임시회	계	조례안	예산안	기타안
10	1	9	80	30	50	148	35	4	109

2) 위원회

상 임 위 원 회			
계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
71	17회	27회	27회

특 별 위 원 회						
예결특위	도시가스공사행정조사특위	의사당특위	윤리특위	조례정비특위	재해대책특위	일반폐기물특위
6회	9회	3회	3회	1회	1회	1회

나. 主要案件 處理內容

1) 本會議 (第39回 ~ 第47回)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39회 임시회	96.3.13. ~3.18 (6일간)	제1차 3.13 (수)	1. 第3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 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3.13~3.18(6일간) 2. 第3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조갑현, 이석문 의원 3.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자 : 96. 3.15(1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장, 보건소장 4. '96年度 區政主要業務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 고 자 : 유명식 총무국장 - 보고내용 : 구정여건 및 주요시책사업 5. 休會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제2차본회의 3.15. 10시개의 	
		제2차 3.15 (금)	1. 區政에 관한 質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원 :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결정 - 질문 및 답변내용 : 별도수록 	
		제3차 3.18 (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 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 旅費의 지급에 관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 조례 증정 條例案 (수정안가결)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振興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登錄事務의 동위임條例中改正 條例案 (원안가결)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條例制定案 (원안가결)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管內도시가스공사에 대한 行政事務調査委員會 計劃書承認의件 (원안가결) 10. 獨島妄言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決議案 (원안가결) 11. 海外研修結果報告의件 (원안가결)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안건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 區稅減免條例中改正 條例案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會館設置및운영에 관한條例廢止條例案	
제40회 임사회	'96.5.7 ~5.16 (10일간)	제1차 5. 7 (화)	1. 제40회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5.7 ~5.16(10일간) 2. 제40회 西大門區議會(臨時會) 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정연식, 이진수 의원 3. '96年度洞行政業務報告청취의건 - 제안설명 : 이석문 간사 - 대 상 : 22개동 - 기 간 : 96.5.8~5.11(4일간) - 내 용 : 동순회 업무보고청취 4. 區廳長 및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자 : 96.5.13~5.14(2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 장, 보건소장 5. 休會의件	
		제2차 5. 8 (수)	1. 96年度洞行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5개반으로 편성 해당동 출장 동정업 무보고 청취	
		제3차 5. 9 (목)	1. 96年度洞行政業務報告聽取의件(계속)	
		제4차 5. 10 (금)	1. 96年度洞行政業務報告聽取의件(계속)	
		제5차 5. 11 (토)	1. 96年度洞行政業務報告聽取의件(계속)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6차 5. 13 (월)	1. 區政에 관한質問 - 질문순서 : 사무국 접수순 - 질문 및 답변내용 : 별도수록	
		제7차 5. 14 (화)	1. 區政에 관한質問 (계속)	
		제8차 5. 16 (목)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行政事務調査중간보고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行政事務調査委員會調査期間연장計劃承認의件 - 연장기간 : 96.5.5~7.31(88일간) 4. 洞行政業務聽取結果報告 - 보 고 자 : 이성배 의원 - 보고내용 : 22개동 방문결과 총평, 수범사례, 개선 및 건의사항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안건 1)서울特別市西大門區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條例制定案	(원안가결)
제41회 입사회	96. 7. 19 ~7.31 (13일간)	제1차 7. 19 (금)	1. 第41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7.19~7.29(11일간) 2. 第41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서명의원 : 이성배, 최광진 의원 3. '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제안설명의건 - 제안설명자 : 유영식 총무국장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 위원회구성 : 9명(의원) 5. '95年度決算감사위원선임의건 - 선임 : 3명(의원1, 공인회계사2)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1차 7. 19 (금)	6. 休會의件 7. 地方議會비교방문결과보고 - 보 고 자 : 이석문 의원 - 방문기간 : '96.7.8~7.12(5일간) - 방문대상 : 5개소(대전중구의회등) - 내 용 : 지방의회운영실태파악	
		제2차 7. 24 (수)	1. 議事日程變更案 - 변경안 : 96.7.19~7.31(13일간)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案 - 출석일자 : 96. 7.26(1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총무국장,전·현직 총무과장 3. 區民홍보에대한行政事務조사요구안 - 제안설명 : 오환인 의원	(다음회로 연기)
		제3차 7. 26 (금)	1. 區政質問 - 내용 : 의회권한침해의견	
		제4차 7. 31 (수)	1.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의하지 못함	
제42회 임사회	96. 8.22 ~8.23 (13일간)	제1차 8. 22 (목)	1. 정회후 자동산회	
		제2차 8. 23 (금)	1. 第42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8.22~8.23(2일간) 2. 第42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 서명의원 : 강석준, 정일출 의원 3. 常任委員選任의件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운영위원회 : 7명 - 총무위원회 : 8명 - 시민건설위원회 : 8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7명 -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7명 4. 常任委員長選任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운영위원장:김종섭 의원 - 시민건설위원장:김영일 의원 5. 豫算決算特別委員選任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 선임 : 7명(의원) 6. 議事堂건립추진위원選任의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선임 : 7명(의원) 7. '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8.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의 날條例制定案 9. 서울特別市西大門區수입증지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西大門區표창條例中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정원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西大門區광고게재에 관한조례制定案 13. 서울特別市西大門區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制定案 1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수수료징수條例中改正條例案 15. 議事堂건립추진사항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김종섭 의원 16. 區民홍보예산에 대한行政事務조사요구안 17. 도시가스공사에 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설명 : 홍성덕 의원 18. 海外研修結果報告 	<p>(수정안 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수정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다음회기로 연기)</p>
제43회 임사회	96. 9.30 ~10. 2 (3일간)	제1차 9. 30 (월)	1. 정회후 자동산회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44회 임사회	96. 10.10 (1일간)	제1차 10.10 (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議長不信任決議案 2. 副議長不信任決議案 3. 議長選舉의件 4. 제44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10.10(1일간) 5. 제44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 選出의件 - 서명의원 : 임재선, 정일출 의원 6. 副議長選舉의件 7. 常任委員會委員개선의건 - 의회운영위원회 : 9명 - 총무위원회 : 14명 - 시민건설위원회 : 14명 	
제45회 임사회	96. 10.19 ~ 10.30 (12일간)	제1차 10.19 (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5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96.10.19~10.28(10일간) 2. 제45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 선출의건 - 서명의원 : 홍성덕, 오환인 의원 3.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자 : 96.10.26(1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 장, 보건소장 4. 休會의件 	
		제2차 10.21 (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관한건 ○ 윤리특별위원회 : 7인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9인 ○ 재해대책특별위원회 : 9인 ○ 일반폐기물특별위원회 : 9인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및 委員選任의件 - 구성인원 : 7명(의원) - 위원선임 위원장 : 정연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간 사 : 이성배	
		제3차 10. 22 (화)	1. 條例整備特別委員會構成및委員選任의件 - 구성인원 : 9명(의원) - 위원선임 [위원장 : 전성장 간 사 : 이기봉 2. 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및委員選任의件 - 구성인원 : 9명(의원) - 위원선임 [위원장 : 정현철 간 사 : 오환인 3. 一般廢棄物處理特別委員會構成및委員選任의件 - 구성인원 : 9명(의원) - 위원선임 [위원장 : 김정현 간 사 : 김동덕	
		제4차 10. 23 (수)	1. 本會議 개의후 산회선포	
		제5차 10. 24 (목)	1. 會期延長및議事日程變更의件 - 변경안 - 회기결정:96.10.19~10.30(12일간)	
		제6차 10. 25 (금)	1. 區政業務聽取의件 - 부서명 : 3실, 총무국, 재무국	
		제7차 10. 26 (토)	1. 區政業務聽取의件 - 부서명:시민국,보건소,의회사무국	
		제8차 10. 28 (월)	1. 區政業務聽取의件 - 부서명:도시정비국, 건설국	

會議名	會期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9차 10. 29 (화)	1. 區政質問의件 - 질문건수 : 10건 - 답변자 : 부구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제10차 10. 30 (수)	1. 區民홍보예산에대한行政事務調査要求案철회동의의견 - 발의자 : 오환인 의원의 18인 - 내용 : 철회동의 원안가결	
제46회 임사회	96.11. 2 ~11. 4 (3일간)	제1차 11. 2 (토)	1. 제46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11.2~11.4(3일간) 2. 제46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任의件 - 서명의원 : 김평락, 허준구 의원 3. 소관常任委員會심사회부의건 - 상정 : 조례안 8건	
		제2차 11. 4 (월)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재정운영상황의공개條例制定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條例制定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수방단운영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災害對策本부의構成및운영등에관한條例制定案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안건 1)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수정안 가결) (수정안 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제47회 정기회	96.11.25 ~12.24 (30일간)	제1차 11.25 (월)	1. 제46회西大門區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 회기결정 : '96.11.25~12.24(30일간) 2. 제46회西大門區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 選任의件 - 서명의원 : 정일수, 기창표 의원 3.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제안설명 : 유명식 총무국장 4.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제안설명 : 김주억 재무국장 5. 1995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제안설명 : 김주억 재무국장 6. 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7.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출석일시 : 96.12.12~12.14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실·과 장, 보건소장 8.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 위원선임 : 11명(이기봉, 정혜연, 이성배, 박덕 균, 정일출, 오환인, 기창표, 이석문, 이진수, 최광진, 정일수 의원)	
		제2차 11.27 (수)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 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 3. 1997年度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衛生許可등에 관한手數 料徵收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안건 1)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 例中改正條例案	
		제3차 12. 12 (목)	1. 제47회 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案 2. 西大門區議會倫理特別委員會運營計劃書承認의 件 3. 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計劃書承認의件 4. 住宅改良再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書承 認의件 5. 區政에 관한 質問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차 12. 13 (금)	1. 區政에 관한 質問 (계속) ※ 구정질문 및 답변요지 별도수록	
		제5차 12. 14 (토)	1. 區政에 관한 質問 (계속)	
		제6차 12. 20 (금)	1. 議事日程變更動議案 2. 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案 - 보 고 자 : 오환인 의원 3. 1995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보 고 자 : 전성장 의원 4.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修正案 - 보 고 자 : 정일출 위원장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 - 보 고 자 : 정연식 위원장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7차 12. 24 (화)	1. 議事日程變更動議案 2. 96年度區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보 고 자 : 김종섭, 김종철, 김영일 위원장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 案	

會議名	會 期	次 數	主 要 內 容	備 考
			4. 西大門區議會議事堂敷地確保의件 -- 보고자 : 강석준 위원장 위치 : 홍은3동 산26-151의1필(면적 3,303.4㎡)	

II. 委員會運營

1. 議會運營委員會

가. 構成

區分	運營期間	委員長	幹事	委員	備考
전반기 (제2대)	'96. 1. 1. ~8.22	임재선	이석문 (96.10. 31까지)	전성장 김종섭 정연식 강석준 정일출 오환인 김평락	총 9명
	'96. 8.23. ~12.31	김종섭	이기봉 (96.10. 31부터)	임재선 전성장 정연식 강석준 정일출 오환인 정혜연	총 9명

나. 案件處理 現況

議會運營委員會는 제38회 定期會 폐회중('96. 3. 6.) 최초 開議하여 제47회 정기회까지 議事日程 협의의견등 22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前半期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새롭게 전개하여 각종 條例案 및 豫算案 審査와 區行政事務監査등 區政發展 및 住民福祉向上에 역점을 두고 활발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願	其他
29	2	.	.	1	.	4	.	22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38회 정기회 (폐회중)	제3차 ('96.3.6)	1. 第39回 西大門區議會(臨時會) 議事日程협의의 건 - 회기결정 : 96.3.13~3.18(6일간) 2. 기타 案件	(원안가결)
제39회 임시회	제1차 ('96.3.17)	1. 議會事務局所管業務報告의件 - 업무보고 : 조영환 의정계장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議員의議政活動費·會議手當및旅費의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獨島妄言에 대한강력대응促求決議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6.6.24)	1. 第2代西大門區議會開院1週年記念行事計劃案 - 제안설명 : 이정열 사무국장 - 내 용 : 원안대로 가결 2. 地方議會行政比較訪問計劃案 - 제안설명 : 이석문 의원 - 내 용 : 다음회기로 연기	(원안가결)
	제2차 ('96.6.27)	1. 地方議會行政比較訪問計劃案 - 출장기간 : '96.7.8~7.12(5일간) - 출장지역 : 대전,광주,목포,부산,제주시의회(1조) 대구,경주,부산,제주시(2조) - 참석인원 : 14명(의원) - 예 산 : 3,984,880원	
	제3차 ('96.7. 5)	1. 제41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협의의의건 - 회기결정 : 96. 7.19~7.29.(11일간)	
제41회 임시회	제1차 ('96.7.24)	1. 議事日程變更案 - 의장제의 2.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	(수정안가결)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算案 - 제안설명 : 이정열 사무국장 -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 수정내용 : 당초 46,725,000원에서 26,200,000원 증액된 72,925,000원으로 가결	
제42회 임시회	제1차 (96.8.23)	1. 幹事選任의件 - 간사선임 : 이석문 의원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96.9.24)	1. 第43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협의의건 - 회기결정 : '96. 9.30(1일간)	
제43회 임시회	제1차 (96.9.30)	1. 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 내 용 : 개의후 유회	
	제2차 (96.10. 1)	1. 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3차 (96.10. 2)	1. 議事日程變更協議의件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4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6.10. 2)	1. 第45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내 용 : 의장에게 위임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6.10.31)	1. 第46回西大門區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회기결정 : 96.11. 2~11. 4(3일간)	
제4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96.11.19)	1. 第47回西大門區議會(定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 회기결정 : 96.11.25~12.24(30일간) 2. 96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 대상 : 운영, 충무, 시민건설위원회	
제47회 정기회	제1차 (’96.12.11)	1. 1995歲入·歲出決算承認案 - 제안설명 : 박문규 재무과장 2. 1995豫備費支出承認案 - 제안설명 : 박문규 재무과장 3.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제안설명 : 류시원 사무국장 4. 第47回西大門區議會定期會議事日程變更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제2차 (’96.12.23)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수정안가결)

라. 議案審查 內容

■ 條 例 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3. 7 이석문 의원의 5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96. 3.17 제39회 임시회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7('95.12.30)]및 국내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4857호('95.12.29)]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 신설(안 제3조 제1항)
-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 함(별표1)

2) 審 查 結 果

-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석문 의원의 5인이 발의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決議案

❖ 독도망언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 ❖

1) 提案

'96. 3. 7. 이석문 의원의 5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96. 3.17 제3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한국의 영토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음모와 독도영유권 주장이라는 적반하장의 망언으로 우리의 주권행사에 도전하는 제2의 침략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독도망언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토록 결의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미화하는 망언을 수없이 되풀이 하여 수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여 놓고, 또다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일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3·1절에 즈음하여 7천만 민족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지난 3월 2일 방콕 한·일정상회담시 하시모토류타로 일본 총리마저도 미온적인 독도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적권위와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토록 하기 위함

2) 審査結果

-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석문위원의 5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提 案

'96. 10.18 정연식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注文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제정과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 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提案理由

-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윤리적 지표를 밝히기 위한 의원 윤리실천 규범들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건전한 구정발전과 서대문구의회에 명예와 권위를 제고하고 서대문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審査結果

-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提 案

'96.10.18 이기봉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注文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제약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 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提案理由

- 지방자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례와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한시적인 행정목적달성에 의하여 현행 규정대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사·정비하여 시민생활의 편익제공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審査結果

-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提 案

'96.10.18 전성장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注文

- 지방지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을 강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 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提案理由

-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폭발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審査結果

-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1) 提 案

'96.10.18 이진수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결의안으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注文

-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구성일로 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提案理由

- 일반폐기물 처리문제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시민의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공동생활에 대한 낮은 인식에 의하여 사업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와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거리에 방치되어 도심의 미관과 문화도시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일반폐기물 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2) 審査結果

-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 의결하였음.

2. 總務委員會

가. 構成

區分	運營期間	委員長	幹事	委員	備考
전반기 (제2대)	96. 1. 1. ~8.22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정현 정혜연 정연식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오환인 김평락 허준구	총 14명
	96. 8.23. ~12.31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정혜연 정연식 정일출 박덕균 오환인 김평락 허준구 조재구 김종섭	총 14명

나. 案件處理 現況

總務委員會는 제39회 臨時會('96. 3.13)최초 開議하여 제47회 정기회까지 각종 條例案 심사등 46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前半期 總務委員會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條例案 및 豫算案審查와 區行政事務監査등 구민편에 서서 왕성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여 區政發展과 住民福祉向上에 크게 기여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願	其他
46	18	3	.	.	.	4	.	21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39회 임사회	제1차 (’96.3.13)	1. 財務局所管業務報告의件 -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제2차 (’96.3.14)	1. 業務報告 - 3실소관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소관 :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 보건소소관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제3차 (’96.3.1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體育진흥협의회組織·운영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民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條例폐지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西大門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西大門區住民登錄事務의 동위임條例中改正條例案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결정) (원안가결)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결정)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제4차 (’96.3.1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건강생활실천협의회條例制定案	(원안가결)
제40회 임사회	제1차 (’96.5.15)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生活安定자금운영관리條例制定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결정) (원안가결)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41회 임사회	제1차 (96.7.22)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3실, 총무국소관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2차 (96.7.23)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3실, 총무국소관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3차 (96.7.25)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3실, 총무국소관 - 내 용 : 追加更正豫算案제안설명	
	제4차 (96.7.27)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총무국, 보건소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42회 임사회	제1차 (96.8.23)	1. 幹事選任의件外 7件 - 내 용 : 건의후 산회	
제46회 임사회	제1차 (96.11. 4)	1. 幹事選任의件 - 간사선임 : 이성배의원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條例制定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 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西大門區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西大門區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수정안가결) (본회의예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본회의예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수정안가결)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47회 정기회		장상근 사회진흥과장 이길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7차 (96.12.10)	1.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 - 제안설명 : 박문규 재무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 김진태 부과과장 박중수 지적과장	
	제8차 (96.12.11)	1.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 - 내용 :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제9차 (96.12.12)	1.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豫備審査 - 내용 : 계수조정	
	제10차 (96.12.16)	1. 19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반별 동사무소 출장	
	제11차 (96.12.17)	1. 19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반별 동사무소 출장	
	제12차 (96.12.18)	1. 19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반별 동사무소 출장	
	제13차 (96.12.19)	1. 19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반별 동사무소 출장	
	제13차 (96.12.19)	1. 1997年度洞政業務報告聽取의件 - 내용 : 반별 동사무소 출장	
	제14차 (96.12.21)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결정) (원안가결)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47회 정기회	제15차 (96.12.23)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 내용 : 수정안으로 채택	

라. 議案審査 條例案

■ 條例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1.2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확충과 공평세계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세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 삭제 (안 제14조)

2) 質疑答辯 및 少數意見

가) 質疑要旨

- 전직대통령 재판이 계류중인데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少數意見

- 존경받는 전직대통령이 아니라 현재 피고인 상태이며 전국민의 비판여론이 있

으므로 전체적인 흐름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중 7명의 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2. 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제7조 2항의 생활체육과장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29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6조4항에 의거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제7조2항의 생활체육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3. 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이 1995.12.14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함.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3. 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 (각 구 공통 필수기구)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신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3. 5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 “재난관리계” 신설 및 어려운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편의를 제공할 전문유급 공무원 “서울가정 도우미”(사회복지직렬)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2조중

본청 : 865명 → 868명 [“재난관리계” 신설 — 행정6급 1명증
 “서울가정 도우미” 운영 전담 — 행정9급 2명증

2) 審査結果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 ❖

1) 提 案

'96. 3. 6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7 제3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및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함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하되 회원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3. 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7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민원편의 확대의 일환으로 온-라인 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제2조 제5호 (법제18조 및 영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 提 案

'96. 3. 7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93.10.11(조례 제217호)일자 제정되었기에 구조례 사항에 대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

2) 質疑 및 討論要旨

가) 質疑要旨

- '93.10.11 문화체육회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구민회관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나) 討論要旨

- 구민회관과 문화·체육회관의 차이는 무엇이며, 문화·체육회관을 무료로 하여야 되는 것 아닌가?

3) 審查結果

재석위원 8명중 반대 5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4.29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5.15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도심재개발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분장을 조정코자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도심재개발법 개정에 따른 도심재개발업무가 자치구로 이관('96. 6.30)됨에 따라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개발과에서 업무전담, 전문성 제고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

1) 提 案

'96. 4.29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5.15 제4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 및 상환금 운용규정이 폐지 (1995. 5. 9.내무부훈령 제1142호)됨에 따라
-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구분(저소득 마을·가구)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일원화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 거양에 기여하며, 그 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융자금의 재원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자금,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함 (안 제2조)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정함 (안 제3조)
-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자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하도록 함 (안 제5조)
-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정함 (안 제6조 내지 제11조)
-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관리·운영함 (안 제13조)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중 반대 8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의날조례제정안 ❖

1) 提 案

'96. 6.2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1396년 11월 3일은 서울의 4대문중 서대문(일명 돈의문)을 축성한 날로써 서대문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날이므로 이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코자 함

나) 主要骨子

- 구민의 날 제정목적 (제1조)
- 구민의 날 (제2조)
- 위임사항 (제3조)

2) 審査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案

'96. 7. 2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증명민원발급에 있어 이원화(인증, 소인분리)된 처리 절차를 일원화(인증, 소인 동시처리)하여 민원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 조항 신설(안 제1조의 2)
 1. 수입증지 요금 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
 2. 계기는 인영시 다음사항 표시
 - ① 수입증지 요금
 - ② 발행기관명
 - ③ 계기 고유번호
 3.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할 경우 계기설치 시행방법 고시
-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신설(안 제4조)
-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제4항)

2) 審査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7. 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구청장이 수여하는 표창서식중 서울특별시 심벌을 우리구 심벌로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추진코자 함.

나) 主要骨子

서울특별시 심벌을 서대문구 심벌로 교체

2) 審査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7. 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자치구의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안전계” 및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방위재난관리과내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내무부에서 정원을 승인하여 주므로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구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제1호 본청 868명을 871명으로 조정
 - “가스안전계” 정원 증원 [6급(화공) 1명, 7급(화공) 1명]
 - “안전지도계” 정원 증원 [6급(행정) 1명]

2) 審査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광고게재에관한조례제정안 ❖

1) 提 案

'96. 7. 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화·전문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광고를 게재하여 구수입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료광고게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대문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유료(상업)광고 게재 (제2조)
 - 1) “서대문구 소식” (현행)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 구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광고료 산정 (제4조)
 - 1) 광고료는 홍보물의 특성을 감안 주기적 홍보물과 부정기적 홍보물 및 기타 사용물로 나누어 산출한다.
- 광고심의위원회 (제5조)
 - 1) 광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광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 위원회 임기 및 기능
 - 1)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광고게재에 대한 공익성 및 건전성을 심의하고 광고게재의 가·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2) 修正內容

안 제6조(위원회구성) 제2항중 「광고관련전문가와 주민」을 「광고관련전문가와 구의원 및 주민」으로 한다.

3) 審查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 7.12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8.23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를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령이 '96. 6. 7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조례를 개정하여 징수코자 함.
-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공연장등록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 공연법령이 '96. 6.30 시행예정인 바,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징수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1,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신청 1건 50,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25,000원
-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0원

2) 審査結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동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

1) 提 案

'96.10.18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 (안 제2조)
-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공개대상 (안 제3조 제1항)
 -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 등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공개대상 (안 제3조 제2항)
 - 전년도 결산개황, 세입·세출집행상황, 공유재산·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시설공사, 물품의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함 (안 제5조)

2) 修正內容

-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사업, 정책에 관한사항”을 삭제함 (안 제5조 제2호)
- 의견제시에 대한 심의를 신설함 (안 제7조)
 - 공개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시나 건의사항을 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 (안 제7조 제1항)

- 구정에의 반영방법 및 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7조제2항)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중 찬성11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10.18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 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전직대통령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 삭제 (안 제14조)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반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0.2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본격 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조정기능 필요성의 대두로 기획실 신설과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5104호, 시행일 '96.10.29)으로 인하여 경정비업소의 등록화와 불법정비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대폭 증가 예상되므로 전문적으로 담당할 계 신설에 따른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

나) 主要骨子

- 본청 정원 871명 → 877명 (증 6명)
 - ┌ 기획실 (신설) → 4급 1명
 - └ 자동차정비계 (신설) →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2) 修正內容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실) 신설이 부결되었으므로
- 기획실(신설) : 4급 1명을 삭제하여 본청정원 877명을 876명으로 함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8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0.2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본격 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 기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실을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나) 主要骨子

- 「기획실」(기획실장 : 4급)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기획실 하부조직으로 한다.
-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변경하고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0명중 반대 5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0.31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7 제4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 지가심의회 설치·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구성에 하한선을 정하였으며,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토록하여 지가심의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명칭변경 :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함 (안 제1조)
- 위원수 변경 :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함.
- 위원자격 변경 :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함.
- 동지가심의회 위원 참석 삭제 :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중 반대 6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1.2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7 제4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본격 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 기능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획실을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나) 主要骨子

- 「기획실」(기획실장 : 4급)을 신설하고 기획예산과,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기획실 하부조직으로 한다.
-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변경하고 총무국에 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중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1.20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7 제47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본격 자치시대 도래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재정수요 확충에 따른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의 기획조정등 총괄·조정기능 필요성의 대두로 기획실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나) 主要骨子

- 본청 정원 876명 → 877명 (증 1명)
[기획실 (신설) → 4급 1명]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11.16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2.21 제47회 정기회 제 1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감면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에서 ()내 단서 규정삭제
-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각호의 1에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신설
-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의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규정을 신설
-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도 구세면세 대상에 추가적용
- 지방세 감면대상중 2이상 적용되는 경우 지방세법 규정적용 신설

2) 審査結果

채석위원 10명중 반대 6명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하였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1) 提 案

'96.11.22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2.21 제47회 정기회 제 1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유행을 되풀이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의료수요 요구에 부응코자 함.

나) 主要骨子

-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접종 종목에 인플루엔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동 의 안

❖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동의안 ❖

1) 提 案

'96.11.2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7 제47회 정기회 제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위함.

나) 主要骨子

- 구유행정재산 매입현황

총재산현황 ('96. 11.20. 현재)		매 입 현 황		매 입 대 상 재 산 의 예 정 가 총 액	비 고
건물(동) 토지(필지)	면적(m ²)	건물(동) 토지(필지)	면적(m ²)		
133	52,046	2	4,247.93	10,164,927천원	
2,085	981,621	15	1,851.3		

2) 修正內容

19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중 연희3동 165 - 2외 7필지 토지 815㎡ 건물 4,028.66㎡ 구청사 별관 확보의건을 삭제함.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중 반대 8명으로 연희3동 165 2의 7필지 건축물에 대한 구청사 별관 취득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희동 82-21 및 홍제동 107 - 10의 5필지 동청사 부지 취득의건은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

3. 市民建設委員會

가. 構成

區 分		議長團		議 員	備 考
半期別	期 間	委員長	幹 事		
전반기 (제2대)	96. 1. 1 ~ 8.22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홍성덕 정일수	총14명
	96. 8.23 ~ 12.31	김영일		김정현 김동덕 박노현 이석문 이진수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정일수 홍성덕 조갑현	총14명

나. 案件處理 現況

市民建設委員會는 제39회 臨時會(96. 3.13)에서 처음 開議하여 제47회 정기회까지 각종 條例案 심사등 38건을 처리하였으며, 제2대 前半期 市民建設委員會 원구성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 위원회 活動을 적극 추진하여 각종 條例案 및 區行政事務監査등 구민편에 서서 왕성한 議政活動을 展開하였고, 또한 '97豫算案審査를 위하여 강사를 초빙, 세미나를 통한 예산기법 지식을 습득하여 '97 豫算案審査를 원활히 하는 등 區政發展 및 住民福祉增進을 위하여 위원회 活動을 효율적으로 運營하였다.

計	條例案	制定案	承認案	決議案	建議案	豫算案	請 願	其 他
38	4	4	.	.	.	4	.	26

다. 會期別 案件 處理內容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39회 임사회	제1차 (’96.3.13)	1. 市民局所管業務報告의件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청소과	
	제2차 (’96.3.14)	1. 弘恩洞범바위周邊自然綠地不法毀損 진상규명요 求청원에대한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출석일시 : ’96.3.16(1일간) - 출석장소 : 본회의장 - 출석대상 : 청원인, 소개의원, 연합주택조합 장, 삼성건설소장, 주택·도시정 비·공원녹지과장 2. 都市整備局, 建設局所管業務報告의件 - 도시정비국 : 주택과, 주택개발과, 도시정비 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 건설국 :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 지과	
	제3차 (’96.3.16)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恩洞범바위 주변自然綠地 不法毀損진상규명요청원 - 청원인 및 소개의원의 의견청취후 다음회기로 연기	
제40회 임사회	제1차 (’96.5.15)	1. 市民局, 建設局所管業務報告의件 - 시민국 : 청소과 - 건설국 : 토목과 ※ 나머지부서 서면(유인물)대체	
제41회 임사회	제1차 (’96.7.22)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 소관부서 : 시민국, 도시정비국 - 내 용 : 개의후 산회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2차 (96.7.23)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3차 (96.7.25)	1.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시민국, 도시정비국 - 내 용 : 계속	
	제4차 (96.7.27)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停車場設置및 관리條例制定案	
	제5차 (96.7.29)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恩洞범바위주변自然綠地不法毀損진상규명요구청원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6차 (96.7.30)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恩洞범바위주변自然綠地不法毀損진상규명요구청원 - 내 용 : 개의후 산회	
제42회 임사회	제1차 (96.8.23)	1. 幹事選任의件 - 간사선임 : 기창표 의원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弘恩洞범바위주변自然綠地不法毀損진상규명요구청원 3. 1996年度第1回西大門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 소관부서 : 건설국 - 내 용 : 원안가결	(본회의에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제46회 임사회	제1차 (96.11. 4)	1. 서울特別市西大門區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 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條例폐지條例案 2. 서울特別市西大門區災害對策기금운영관리條例 制定案 3. 서울特別市西大門區수방단운영條例中改正條例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p>案</p> <p>4. 서울特別市西大門區災害對策本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條例制定案</p>	(원안가결)
제46회 임시회(예회중)	제2차 (96.11.18)	1. 1996년도 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원안가결)
제47회 정기회	제1차 (96.11.26)	<p>1. 서울特別市西大門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p> <p>2. 서울特別市西大門區公衆衛生業許可 등에 관한 手 數料徵收條例案</p> <p>3. 서울特別市西大門區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 條例案</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p>(원안가결)</p>
	제2차 (96.12. 5)	<p>1. 1995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件</p> <p>- 제안설명 : 박호엽 사회복지과장</p> <p>2. 1995年度 豫備費支出承認案</p> <p>- 제안설명 : 박호엽 사회복지과장</p> <p>3. 19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p> <p>- 제안설명 :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박문규 재무과장</p>	(원안가결)
	제3차 (96.12. 6)	<p>1. 19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p> <p>- 제안설명 : 박호엽 사회복지과장 상병욱 위생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이용표 산업과장</p>	
	제4차 (96.12. 7)	<p>1. 19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p> <p>- 제안설명 : 김명춘 환경과장 제성출 청소과장</p>	
	제5차 (96.12. 9)	<p>1. 1997年度 歲入·歲出豫算案</p> <p>- 제안설명 : 박 활 주택과장 길기양 주택개발과장</p>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47회 정기회		김정근 도시정비과장 부성철 교통행정과장 노병주 교통지도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제6차 (96.12.10)	1.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 제안설명 : 전원배 건설국장 최홍대 건설관리과장 서창기 토목과장 이상림 하수과장 전상호 공원녹지과장		
제7차 (96.12.11)	1. 1997年度歲入·歲出豫算案 - 내용 : 계수조정 2.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案 - 보고자 : 기창표 의원		
제8차 (96.12.26)	1.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案 - 내용 : 현장 출장 시찰		
제9차 (96.12.17)	1.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案 - 내용 : 현장 출장 시찰		
제10차 (96.12.18)	1.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案 - 내용 : 현장 출장 시찰		
제11차 (96.12.19)	1.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計劃案 - 내용 : 현장 출장 시찰		
제12차 (96.12.21)	1. 住宅改良開發및再建築建設現場視察結果報告의件 - 대상 :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 10개소 - 기간 : 96.12.16~12.19(4일간) - 결과 : 현장지도 및 의견청취(10개소)		

會議名	次數	主要內容	備考
	제13차 (96.12.23)	1. 1996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원안가결)

라. 議案審查 內容

■ 條 例 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

1) 提 案

'96. 6.15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 7.27 제41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주차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공중편의를 도모하여 도시 교통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主要骨子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대한 사항(안 제2조, 제4조, 제6조)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의 관리운영 사항(안 제5조)
- 운송사업용차량(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에 대해서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3조)
-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 시간을 최초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단위로 하도록 함(안 제13조)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 대상기준 및 신고·폐지에 관한 규정(안제 15조, 제16조, 제17조)

2) 審查結果

재석위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提 案

'96.10.18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廢止理由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징수등 관련업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구청장으로 권한위임 (서울특별시조례 제3317호 '96. 8.10)됨에 따라 기존의 서대문구가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

나) 主要骨子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가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를 폐지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提 案

'96.10.24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 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을 조성토록함에 따라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계획 등을 규정함.
-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재해예방등의 용도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익은 그 전액을 재해대책기금에 편입토록 함.
- 재해대책기금의 수입·지출·출납에 관한 규정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하였음.
-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결산 및 보고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정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 提 案

'96.10.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풍수해대책법이 1996. 6. 7 부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해발생 우려 지역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지역의 예찰 및 재해응급대책수립, 방재의 날 행사참여등 수방단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방단운영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거 수방단의 임무를 규정하고, 수방단원은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정함.
- 수방단원의 단장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고, 수방단업무를 총괄토록 함.
-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반별 인원 및 임무를 정함.
 - 본부 및 경계반 : 10명 내외
 - 복구반 : 30명 내외
 - 구호반 : 10명 내외
- 구청장은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수방단의 소집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집결과를 3년간 기록 보존토록 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

1) 提 案

'96.10.2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 4 제46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의하여 동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에 의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피해조사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자연재해발생에 대한 재해사전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재해대책본부를 조직하고, 재해대책본부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차장은 부구청장으로 함.
-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재해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해기간 (6.15 ~10.15) 동안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해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 재해대책본부회의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직원에게(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는 제외)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3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提 案

'96.10.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6 제47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도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5,100호 '96. 7. 1)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조례 제3336호 '96.10. 5)가 개정되었기에 구조례의 관련규정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이 '96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 표준품셈”을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함.
- 점용료의 미부과 소액점용료의 범위를 현행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함.
- 점용료의 반환 및 과오납금의 환급시에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과오납금의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함.
-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함.
 - 수도관 · 하수도관 · 전기관 · 가스관 ·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구경)에 따라 세분화함.

2) 審査結果

채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

1) 提 案

'96.10.3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6 제47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영업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하여 '97. 1. 1. 부터 서대문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었기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대상 및 금액을 정함.
- 공중위생법 영업허가 신고등에 징수하는 수수료는 서대문구 수입증지로 납부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提 案

'96.11.11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96.11.26 제47회 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전문 개정하여 '96. 2. 5 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도 '96. 7. 1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 실시 근거를 규정하는등 법령과 상위법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폐기물에 대한 법적용어의 정의변경 및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페스티로플, 폐의류, 폐건전지를 추가지정.
-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감량, 재활용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서대문구청장의 책무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서대문 구민의 책무규정을 마련
-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종량제대상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용 종량제규격봉투 가격 산정 규정마련
- 영세판매소의 재정압박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던 규격봉투대금 납기고지서를 발부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로 규정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수수료 징수근거 및 납기등을 규정
- 과태료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등 규정
-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준용근거규정 마련

2) 審査結果

재석위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4. 特別委員會

가. 活動現況

特別委員會는 '96 8. 23 構成되어 운영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의 6개 특별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區政發展과 주민복지 向上을 위한 委員會 活動을 내실있게 운영하였는 바 主要活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豫算決算特別委員會는 '96년도 第1回追加更正豫算案과 '97년도豫算案 및 '95會計年度歲入歲出決算審査처리등 회기별로 각각 구성하여 구 예산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심의하였으며
- 西大門區 관내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行政事務調查委員會는 '96.4.15~7.31까지 108일 동안 相關公부 확인 및 현장실태 조사를 통하여 가스배관시설 부실시공등을 지적하여 시정하므로써 區民의 高귀한 生命과 財產을 보호하는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制반안전대책을 强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議會議事堂建立推進委員會는 '94년 기구성되어 활동중인 바 현 의사당 건물에 낡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議政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기능에 적합한 독립의사당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을 의결하여 執行部에 건의하는등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여 왔다.
- 기타 倫理, 條例整備, 災害對策, 一般廢棄物 特別委員會는 '96.10.21 구성되어 '96定期會期中 行政事務監査등 빠듯한 議事日程으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나, '97년부터 區政發展 및 住民福祉 向上을 위하여 열심히 活動하기로 하였다.

委員會名	活動期間	內 容	委員會構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42회임사회중 96.8.23(1일간)	1996년도제1회서대문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심의	위원장 : 이석문 간 사 : 최광진 위 원 : 기창표, 홍성덕, 정일수, 권재일,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47회정기회중 96.12.16~ 12.19(4일간)	- 95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승인심사 -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 97년도예산안편성심사	위원장 : 정일출 간 사 : 오환인 위 원 : 이기봉, 박덕균, 이성배, 정혜연, 기창표, 이석문, 이진수, 정일수, 최광진
도시가스공사에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39~41회임사회 (폐회)중 96.4.15~7.31 (108일간)	'91~'95년도중 시공된 도시가스배관시설등 부실 시공에 대한 관련공부확 인 및 현장실태 조사	위원장 : 전성장 간 사 : 김동덕 위 원 : 박노현, 최광진, 박덕균, 조재구,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의사당건립추진 위원회	제47회정기회중 96.12.19~ 12.24(6일간)	현 의사당건물은 낡고 보 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 고 있어 의정활동에 지장 을 초래하는 바 독립의사 당 부지확보와 예산확보 를 위하여 구성	위원장 : 강석준 간 사 : 김종섭 위 원 : 김동덕,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인
윤리특별위원회	제45회임사회중 '96.10.21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의 제정과 윤리에 관 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 사·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 : 정연식 간 사 : 이성배 위 원 : 박노현, 김동덕, 오환인, 이진수, 권재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45회임사회중	현행 조례중 주민생활불	위원장 : 전성장

委員會名	活動期間	內 容	委員會構成
	'96.10.21	편과 행정낭비초래등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하여 구성 - 조례현황:92건	간 사 : 이기봉 위 원 : 정일출, 박덕균, 최광진, 허준구, 임재선, 기창표, 김영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45회임사회중 '96.10.21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	위원장 : 정현철 간 사 : 오환인 위 원 : 김종철, 박노현, 강석준, 홍성덕, 이진수, 허준구, 이석문
일반폐기물처리특별위원회	제45회임사회중 '96.10.21	사업장등에서 무단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 제도화하여 주민생활환경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구성	위원장 : 김정현 간 사 : 김동덕 위 원 : 정혜연, 전성장, 이진수, 정일수, 송영우, 김평락, 권재일

나.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9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96.7.13 서대문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이 예산안은 '96.8.23 제42회 임시회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상정되었으며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は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96년도 제1회 追加更正豫算案은 '96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경상적필수경비에 중점을 두고,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95년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주정차위반건 인료수입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음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차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대문구의 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主要骨子

○ '96年度 第1回追加更正豫算案 規模

(단위:천원)

회 계 명	예산(안) (A=B+E)	기 정 예 산 액			증(△)감 금회추경 (E)	%	비 고
		계 (B=C+D)	당초예산액 (C)	간주처리 (D)			
총 계	110,270,110 (채1,500,000)	98,009,662 (채1,500,000)	96,618,009 (채1,500,000)	1,391,653	13,260,448	13.5	
일반회계	100,343,374 (채1,500,000)	91,143,876 (채1,500,000)	89,752,223 (채1,500,000)	1,391,653	9,190,498	10.1	
특별회계	10,926,736	6,865,786	6,865,786	0	4,060,950	59.1	
의료보호기금	910,595	894,607	894,607	0	15,988	1.8	
새마을소득지원	566,241	261,150	261,150	0	305,091	116.9	
주차장	9,449,900	5,710,029	5,710,029	0	3,739,871	65.5	

○ 豫算科目別 追加豫算 現況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장 별	항 별			
총 계			111,270,110 (채1,500,000)	98,009,662 (채1,500,000)	13,260,448
일 반	소 계		100,343,374 (채1,500,000)	91,143,876 (채1,500,000)	9,189,498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2,891,429 (채1,500,000)	2,844,704 (채1,500,000)	46,725 816,074
	일 반 행 정 비	기 획 관 리	18,666,160	17,850,086	191,409
		공 보 관 리	1,525,100	1,333,691	39,668
		행 정 감 사	137,096	97,428	798,396
		내 무 행 정	23,122,096	22,323,700	236,704
		재 무 행 정	1,770,427	1,533,723	190,675
	보 건	보 건	2,891,785	2,701,110	18,627
	민 방 위 관 리	민 방 위 관 리	226,945	208,318	1,632,420
	환 경 개 선	환 경 관 리	18,122,271	16,489,851	83,160
공 원 녹지관리		1,543,490	1,460,330	14,000	
사 회 보 장	일반사회복지	813,364	799,364	6,849	
	생 활 보 호	1,218,349	1,211,500	674,648	
	가 정 복 지	4,948,135	4,273,487	9,299	
계	주택및지역	주 택 사 업	471,355	462,056	30,836
	사 회 개 발	도 시 개 발	313,597	282,761	2,848
	지 역 경 제 개 발	지역경제개발	331,688	328,840	-
		광 공 업 관 리	264,758	264,758	2,100
	국 토 자 원 보 존 개 발	치수및재해대책	230,002	227,902	1,606,808
	건 설 관 리	16,142,656	14,535,848	91,260	

구 분	예 산 과 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장 별	항 별			
	교 통 관 리	교통행정관리	853,385	762,125	91,260
	예 비 비	예 비 비	3,859,286	1,152,294	2,706,992
특 별 회 계	소 계		1,476,836	1,155,757	321,079
	의 료 보 호 기 금	계	910,595	894,607	15,988
		기 금 운영비	8,201	8,201	-
		의 료 보 호비	902,394	886,406	15,988
	새 마 을 소 득 지 원	사 업 비	566,241	261,150	305,091
					3,739,871
	주 차 장	계	9,449,900	5,710,029	
		주 차 장 관 리	2,173,098	1,839,104	333,994
		주 차 장 건 설	7,145,776	3,788,517	3,357,259
		예 비 비	131,026	82,408	48,618

3) 修正內容

- '96年度 追加更正豫算 총 111,270,110천원(채1,500,000천원)
 - 一般會計: 100,343,374천원(채1,5000,000천원)
 - 特別會計: 10,926,736천원
- 修正內譯-수정규모: 599,680천원
 - 총 괄
 - ┌ 삭감: 13개 항목 599,680천원
 - └ 증액: 23개 항목 599,680천원
 - 일반회계
 - ┌ 삭감: 12개 항목 289,680천원
 - └ 증액: 21개 항목 289,680천원
 - 특별회계
 - ┌ 삭감: 1개 항목 310,000천원
 - └ 증액: 2개 항목 310,000천원

○ 豫算科目別 追加豫算 現況

가) 일반회계

○ 삭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비고
세 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1211	405	다 기 능 사 무 기 기 (5860X)구입	3,600	0	△ 3,600	
의사운영	자산취득세 (자산취득비)					
1211	405	21세기 복지문화촌 서대문구	40,000	26,361	△13,639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31	201	스티카, 리본,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	18,000	8,000	△10,000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41	201	총별 사무실배치도 제작	13,800	0	△13,800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242	201	구간부 위탁교육비	19,500	13,000	△6,500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11	201	건강생활실천협의 회위원	250	0	△250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201	특정폐기물 처리비	120,000	100,000	△20,000	
2222	민간이전			0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231 도서공원 관리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수수료	22,581	12,581	△10,000	
1221 공보관리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구정홍보케이블텔 레비전 설치	46,956	0	△46,956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구정홍보케이블텔 레비전 시청료	10,836	0	△10,836	
1241 서무관리	401 시설비등 (기본조사 설 계비)	구청사 증축부분 정 밀구조 안전진단	17,565	0	△17,565	
5411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706,992	2,570,458	△136,534	
총계	12항목		3,020,060	2,730,400	289,680	

○ 증액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비고
세 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1122 의정활동	206 의회비 (여비)	국외여비 부족분 보전	10,282	15,282	5,000	
2211 보건관리	401 시설비등 (실시설계비)	보건소청사 보수	0	1,524	1,524	
	시설비등 (시설비)	보건소청사 보수	0	40,000	40,000	
	시설비등 (감리비)	보건소청사 보수	0	1,252	1,252	
	시설비등 (시설부대비)	보건소청사 보수	0	360	360	
	405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	0	3,850	3,850	
3411 교통기획 행정	301 보상금 (포상금)	교통종합대책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1,800	3,100	1,300	
1243 사회진흥	401 시설비등 (시설비)	봉원동 2-7일대 체육시설 설치	0	26,605	26,605	
1121 의사운영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영비)	행정소송비용(수송착 수금, 소송인지대, 사례 금, 자문료)	0	10,500	10,500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속기사컴퓨터위탁교육	0	60	600	
	204 일반업무추진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의회업무추진	0	28,000	28,000	
	301 보상금 (보상금)	위탁교육비	1,300	13,000	11,700	
	301 보상금 (배상금)	증인료	0	594	594	
	405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속기사용컴퓨터(노트 북)구입	0	4,510	4,510	
	405 자산취득비 (물품및 도서 구입비)	속기사용 키보드 구입	0	435	435	
1213 예산운영	204 일반업무추진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주요업무 추진	0	30,000	30,000	
1252 회계관리	405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이동전화기 구입 (기획예산과)	0	1,200	1,200	
2211	301	저소득자녀부업알선	0	250	250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조 정 내 역			비고
세 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보건관리	보상금 (보상금)	부족분				
2231 도시공원 관리	401 시설비등 (시설비)	안산공원주민휴식 시설 설치	0	56,000	56,000	
2232 녹지관리	401 시설비등 (시설비)	금화및 극동아파트 주변수로및 등산로 정비	0	54,000	54,000	
	401 시설비등 (시설비) 21항목	홍은동 산 1-216 축대보수공사	0	12,000	12,000	
합 계			13,382	303,062	289,680	

나) 特別會計

○ 삭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3211 주차장 건설	705 적립금	주차장시설적립금	2,428,941	2,118,941	△310,000	
계			2,428,941	2,118,941	△310,000	

○ 증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세목)		96추경안	조정안	증(△)감	
3112 교통관리	405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주차단속용차량 (티코2대)구입	0	12,000	12,000	
3211 주차장 건설	401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홍은3동273-4 외7필지)	794,318	1,092,318	298,000	
계			794,318	1,104,318	310,000	

4) 審査結果

재석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안 가결하였음.

□ 1997年度 豫算案

'96.11.16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예산안은 '96.12.16~12.19 제47회 정기회 제 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97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세출예산은 각종 경비의 법령 및 조례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의 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2) 主要骨子

○ '97豫算案 規模

(단위 : 천원)

회 계 명		'97 예산액	'96 예산액	증(△)감	%	비 고
총 계		111,695,994	96,618,009 (채1,500,000)	15,077,985 (채△1,500,000)	15.6	
일 반 회 계		103,981,000	89,752,223 (채1,500,000)	14,228,777 (채△1,500,000)	15.9	
특별회계	계	7,714,994	6,865,786	849,208	12.4	
	의 료 보 호	1,280,600	894,607	385,993	43.1	
	새마을소득지원사업	474,160	261,150	213,010	81.6	
	주 차 장	5,960,234	5,710,029	250,205	4.3	

○ '97豫算案

1 歲入豫算 : 111,695,994천원
 ┌ 일반회계 : 103,981,000천원
 └ 특별회계 : 7,714,994천원

○ 일반회계세입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액 ('97년도)	전년도예산 ('96년도)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103,981,000	89,752,223	14,228,777	15.85	
110	지 방 세	19,157,361	17,774,913	1,382,448	7.78	
210	경상세외수입	9,274,184	9,451,672	▲177,488	▲1.87	
220	임시적세외수입	20,310,924	16,508,723	3,802,201	23.04	
510	조정교부금	49,290,000	42,032,000	7,258,000	17.27	
610	국고보조금	2,127,885	1,330,648	797,237	59.93	
620	시비보조금	3,820,646	2,654,267	1,166,379	43.93	

○ 특별회계세입총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구 분	예 산 액 ('97년도)	전년도예산 ('96년도)	증·감		비 고
				금 액	비율(%)	
합	계	7,714,994	6,865,786	849,208	12.36	
	의 료 보 호 기 금	1,280,600	894,607	385,993	43.14	
	새마을소득지원금	474,160	261,150	213,010	81.64	
	주 차 장	5,960,234	5,710,029	250,205	4.38	

② 歲出豫算 : 111,695,994천원
 ┌ 일반회계 : 103,981,000천원
 └ 특별회계 : 7,714,994천원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97 예산액	'96예산액	증(△)감
장 별	항 별			
합 계		103,981,000	(채1,500,000) 89,752,223	△(채1,500,000) 14,228,777
의 회 비	지방의회운영	1,403,453	(채1,500,000) 2,844,704	△(채1,500,000) △1,441,251
일 반 행 정 비	기 획 관 리	21,116,438	17,987,663	3,128,775
	공 보 관 리	1,567,464	1,342,651	224,813
	행 정 감 사	110,523	100,154	10,369
	내 무 행 정	28,360,421	22,484,091	5,876,330
	재 무 행 정	992,343	1,103,431	△111,088
보 건 및 생 활 환 경 관 리	보 건	3,094,907	2,734,663	360,244
	환 경 관 리	18,295,913	16,595,350	1,700,563
	공원녹지관리	1,969,278	1,410,283	558,995
사 회 보 장	일반사회복지	4,037,807	1,702,700	2,335,107
	생 활 보 호	1,341,970	1,211,500	130,470
	가 정 복 지	3,978,249	2,985,477	992,772
주 택 및 지 역 사 회 개 발	주 택 사 업	254,379	362,172	△107,793
	도 시 개 발	802,797	323,350	479,447
지 역 경 제 개 발	지역경제개발	372,303	344,993	27,310
	광 공 업 관 리	317,770	303,758	14,012
국 토 자 원 보 존 개 발	치수및재해대책	134,358	227,902	△93,544
	건 설 관 리	12,750,881	13,508,560	△757,679
교 통 관 리	교통행정관리	1,221,496	798,806	422,690
민 방 위 관 리	민방위관리	347,111	227,721	119,390
예 비 비	예 비 비	1,511,139	1,152,294	358,845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97 예산액	'96예산액	증(△)감
장 별	항 별			
계		7,714,994	6,865,786	849,208
의 료 보 호 기 금	의 료 보 호 비	1,280,600	894,607	385,993
새 마 을 소 득 지 원	사 업 비	474,160	261,150	213,010
주 차 장	교통행정관리	5,960,234	5,710,029	250,205

3) 常任委員會 豫算審査報告書 要旨

가) 議會運營委員會

(보고자:이기봉 의원)

○ 審査日字 : '96.12.11. 제47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의결

○ 審査內容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403,453천원에 대하여 의회비 및 일반업무추진비중 자매결연도시방문 국외여비등 19개 항목 130,31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도록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증액차액 130,312천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요구하였음.

나) 總務委員會(보고자:이성배 의원)

○ 審査日字: '96.12.5. 제47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96.12.12.제47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의결

○ 審査內容

총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57,183,592천원, 특별회계 1,754,760천원으로 구전체 예산규모의 52.7%에 이르고 있는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전시적인 예산이나 선심성예산등 구정홍보예산은 이중으로 계상한 부문에 대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숙원사업등에 투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시전까지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예결특위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97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 市民建設委員會

(보고자:기창표 의원)

○ 審査日字 : '96.12.5. 제47회 정기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
'96.12.11. 제47회 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의결

○ 審査內容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일반회계 45,393,955천원, 특별회계 59,623,234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중 23개항목 463,148천원을 삭감하고 6개항목 522,8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적립금 86,850천원을 삭감하고, 주차장건설금 86,850천원을 증액하였는바, 증감차액 59,652천원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조정하도록 하였음.

4) 修正案 內容

가) 修正理由

○ 재정자립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일부계층이나 소수 계층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부문 또는 효과면에서 주민의 편익 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팽창과 소모적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문을 삭감 조정하여 경제개발비중 도로건설분야등 주민복지시설에 활용하도록 하였음.

나) 主要骨子

○ 歲入豫算 [일반회계:원안과 같음
 [특별회계:원안과 같음

○ 歲出豫算

'97예산액 총 111,695,994천원 [일반회계 : 108,981,000천원
특별회계 : 7,714,994천원]

- 삭감: 116개 항목 2,820,259천원

- 증액: 34개 항목 2,820,259천원

○ 一般會計: 103,981,000천원중

- 삭감: 115개 항목 1,671,581천원

- 증액: 25개 항목 1,671,581천원

○ 特別會計: 7,714,994천원중

- 삭감: 1개항목 1,148,678천원

- 증액: 9개항목 1,148,678천원

다) 豫算科目別 修正內譯

○ 一般會計- 삭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 계		115개항목	3,137,402	1,465,821	△1,671,581	
기획관리	일반수용비	화보제작	20,000	10,000	△10,000	
	포상금	특별상여수당	95,571	20,000	△75,571	
	물품및 도서구입비	행정비품및집기구입	60,000	40,000	△20,000	
	연구개발비	구정연구개발	100,000	50,000	△50,000	
	사회단체 보조	사회단체 임의보조	68,000	35,000	△33,000	
	시설비등	시설비	700,000	500,000	△200,000	
전산통계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287,850	187,850	△100,000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구정홍보용책자 발간	20,000	15,000	△5,000	
		신촌축제등 구정홍보	13,000	0	△13,000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공보관리	운영수당	비디오제작				
		대강당 무대장치 안	10,000	5,000	△5,000	
		전집검				
		문화회관 예술행사	11,400	0	△11,400	
		사진공모전	9,000	4,500	△4,500	
		문화회관개관 4주년 기념행사	2,500	0	△2,500	
		문화의집 사무용품	2,400	1,200	△1,200	
		서대문구소식지편집 위원 수당	3,600	1,800	△1,800	
		광고심의위원 수당	3,000	1,500	△1,500	
		문화회관영화상영필름임차	6,000	2,000	△4,000	
	임차료					
	연료비	연료비	29,286	19,286	△10,000	
	시책추진	구민의날 문화행사	20,000	10,000	△10,000	
	특수활동비	신촌문화축제 업무추진	3,000	0	△3,000	
		문화강좌수강생 간담회	10,000	5,000	△5,000	
		문화강좌실습 운영비등	4,608	0	△4,608	
	보상금	문화예술인초대전 출연자사례금	14,000	5,000	△9,000	
물 품 및 도 서 구입비	문화회관 도서구입	6,000	3,000	△3,000		
보상금	거리음악회찬조출연자사례금	3,000	2,000	△1,000		
	문화회관개관4주년	5,000	3,000	△2,000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기념행사				
	사회단체보조	한국자유총연맹보조	4,840	3,000	△1,840	
	자산취득비	문화회관 차량구입	43,448	0	△43,448	
감사관리	일반수용비	구정이동통신원위촉장	600	0	△600	
		구정이동통신원 전화카드	750	0	△750	
		전화카드 제작도완	38	0	△38	
	시책추진	통신원 수첩 제작	450	0	△450	
	특수활동비	구정이동통신원 운영	1,750	0	△1,750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현판제작	6,000	3,000	△3,000	
		청사안내표지판 제작	10,000	5,000	5,000	
	운영수당	국제화추진협의회	2,600	1,300	△1,300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요업무추진	60,000	30,000	△30,000	
		국제교류업무추진	20,000	15,000	△5,000	
	물품및 도서구입비	사무용비품구입	46,329	6,380	△39,949	
	시설비	옥상직원휴게실설치	30,000	0	△30,000	
		사무실 정비	40,000	20,000	△20,000	
	자산취득비	엠프(대체)	32,861	0	△32,861	
인사관리	시책추진	미혼남녀 사랑의커플 만들기	8,000	0	△8,000	
	업무추진비	인사업무추진	2,500	1,500	△1,000	
	시책추진	인사업무추진	2,500	1,500	△1,000	
	특수활동비					
	포상금	전화친절수화공무원 등 모범공무원포상	3,000	0	△3,000	
사회진흥	일반수용비	인쇄비	18,527	10,000	△8,527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플래카드	1,920	1,000	△920	
		어깨띠	1,200	0	△1,200	
		현수막	800	400	△400	
		사회진흥운동	1,512	1,070	△442	
		행사용품				
	임차료	생활체육교실(장소 및 시설)	13,500	0	△13,500	
	국내여비	사회진총업무추진	4,800	3,000	△1,800	
		생활체육업무추진	5,400	4,400	△1,00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사회진흥운동행사추진	3,000	1,500	△1,500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	3,600	1,800	△1,800	
		생활체육시설관리업무추진	1,200	0	△1,200	
		구청장기 대회	20,000	8,000	△12,000	
		꿈나무 축구대회	15,000	5,000	△10,000	
		에어로빅 경연대회	10,000	0	△10,000	
		문화체육회관개관기념행사	5,000	3,000	△2,000	
		시정시찰	1,600	0	△1,600	
	보상금	생활체육교실				
		볼링	10,800	0	△10,080	
		골프	3,840	0	△3,840	
		제즈에어로빅	2,880	0	△2,880	
		청소년 볼링	8,400	0	△8,400	
		어린이 제즈교실	1,280	0	△1,280	
		생활체육교실 유공자	2,000	1,000	△1,000	

예산 과 목		사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일선행정 조직운영	사회단체보조	표창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62,884	0	△62,884	
	시설비등	바르게살기운동단체사업비 보조	17,167	10,167	△7,000	
		동네체육시설확충	100,000	50,000	△50,000	
	재료비	전화친절도점검인건비	2,640	0	△2,640	
		동행정업무지원	6,000	0	△6,00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각종행사 및 주민관리지원등	35,000	0	△35,000	
		모범구민표창수상자간담회	880	440	△440	
	보상금	선행유공구민표창수상자간담회	220	110	△110	
		구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간담회	300	150	△150	
	물품및 도서 구입비	구민대상시상	4,400	2,200	△2,200	
		노후비품교체및 보강	2,640	1,320	△1,320	
	시설비	노후청사집무환경개선	18,600	9,300	△9,300	
		자산취득비	130,000	100,000	△30,000	
회계관리	애프(동)	37,208	0	△37,208		
	배상금등	3,000	0	△3,000		
부과관리	일반수용비	4,500	3,000	△1,500		
	재료비	38,480	28,480	△10,000		
보건행정 관리	살충소독약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의약관리	물품및 도서 구입비	구내식당주방용품 구입	3,280	0	△3,280	
	시설비	구내식당주방시설설 치	3,110	0	△3,11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약단체간담회	2,400	1,200	△1,2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약관리업무추진	2,000	1,000	△1,000	
	청소관리	시설비	가로휴지통교체	6,938	3,469	△3,469
			환경미화원휴게실보 수	9,600	4,800	△4,800
상·하수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준설기수리비	14,000	10,000	△4,000	
도시공원 관리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150,000	100,000	△50,000
녹지관리	일반수용비	안내표지판정비	1,000	500	△500	
	시설비	수경재배및자연 학습장활성화	30,000	20,000	△10,000	
사회복지	보상금	경로잔치 (공연출연자사례금)	10,000	5,000	△5,000	
가정복지	운영수당	가정의례준칙위원회	800	0	△800	
		가정의례식장신고	150	0	△150	
		요금심의위원				
부녀복지	특수활동비	가정의례준칙위원회	32	0	△32	
	재료비	전통요리 경진대회	880	0	△880	
	시책추진특수 활동비	전통요리 경진대회	900	0	△900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도시정비	일반수용비	지정계시대맞기기수 선보수비	600	300	△ 300	
	시설비	지하공간현황조사분 석용역	100,000	0	△100,000	
지역경제 관리	자본전출금	유기농산물전문 판매장설치	250,000	0	△250,000	
치수 및 재해대책 건설행정	시설비등	재해대책시설물 (석축)긴급공사비	100,000	50,000	△50,00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상심의간담회	828	552	△276	
	시설비등	신가판점	4,313	2,157	△2,156	
교통기획 행정	시설장비유지 비	도로안내표지판유지	16,110	8,055	△8,055	
	시설비	보행환경개선사업반 사경설치	2,750	1,375	△1,375	
사무관리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국장실 이상)	2,016	1,440	△576	
재산관리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국장실)	672	480	△192	
보건행정 관리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1,152	960	△192	
사회복지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국장실)	672	480	△192	
		신문구독료				
주택기획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국장실)	672	480	△192	
건설행정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국장실)	672	480	△192	
의사운영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2,016	1,440	△576	

○ 一般會計 - 증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계		25개 항목	2,426,364	4,097,945	1,671,581	
기획관리	일반운영	· 국장				
	업무추진비	3,000,000원×1	0	1,500	1,500	
	(기관운영	명×50%				
	일반운영					
	추진비)					
	(직책업무	· 국장				
	추진비)	350,000원×1명	0	4,200	4,200	
		×12월				
	특수활동비	· 국장				
	(기관운영	3,000,000원×1	0	1,500	1,500	
	특수활동비)	명×50%				
	(시책추진	· 기획실 업무추진	0	6,000	6,000	
	특수활동비)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 주민용 신문구독				
		- 중앙	168,000	168,000	0	
		- 지역	63,864	80,441	16,577	
녹지관리	시설비	독립문녹지대	50,000	100,000	50,000	
		시설확충				
사회복지	보상금	모범 노인교실	7,200	10,000	2,800	
도로건설	시설비	관내도로 및	1,000,000	1,100,000	100,000	
		보도장비				
		홍은동 8의429~8	0	100,000	100,000	
		의245(공사비)				
		복가좌동 144번지	0	70,000	70,000	

예산과목		사업명	심사결과			비고
세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도시공원 관리	토지매입비	445호(공사비) 천연동 98의 26~117의1간 · 공사비	0	100,000	100,000	
		· 보상비	200,000	300,000	100,000	
도로건설	시설비	어린이놀이터 토지매입 남가좌동 139-4	0	400,000	400,000	
		도로개설 · 홍제2동 156의26 ~156의55간 도 로개설(공사비)	0	200,000	200,000	
사회복지	토지매입비	· 북가좌동 144의 156~126의1(보 상비)	300,000	500,000	200,000	
		· 도시계획시설 (도로) 구간내 건물철거 공사	270,000	370,000	100,000	
의사운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보상금	홍은2동 경노당 부지 매입 전문위원 업무추진 위탁교육비 1,300,000원×10명 에어콘구입	312,500 4,800 0	388,000 7,200 13,000	75,500 2,400 13,000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의정활동	자산취득비	2,510,000원×7대 본회의장 시설보수 본회의장 시설보수	0	17,570	17,570	
	실시설계비	자매결연도시	0	2,686	2,686	
	감리비	조인식 방문	0	2,459	2,459	
	국외여비	혈액분석기 노인복지기금	0	40,000	40,000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0	33,000	33,000	
사회복지	자치단체 출연금		50,000	82,389	32,389	

○ 特別會計 - 삭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 계		1개 항목	2,700,000	1,551,322	△1,148,678	
주차장 관리	적립금	주차장 시설 적립금	2,700,000	1,551,322	△1,148,678	

○ 特別會計 - 증액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사 업 명	심 사 결 과			비고
세 항	목(세목)		97예산안	조정안	증(△)감	
총 계		9개 항목	715,834	1,864,512	1,148,678	
주 차 장 관리	토지매입비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715,834	1,260,982	545,148	
	시설비	토지 매입비				
		홍제1동 361-36	0	86,850	86,850	
		공영노외주차장 건설(579㎡)	0	500,000	500,000	
	자산취득비	북아현1동 공영 주차시설설치				
		컴퓨터 구입	0	1,200	1,200	
		잉크젯 프린트 구입	0	440	440	
		출력 장비 (C D - RECORDER)	0	1,350	1,350	
		디지털 카메라 구입(10대)	0	6,800	6,800	
		필름 스캐너	0	1,890	1,890	
포토관리 프로그램		0	5,000	5,000		

5) 豫算案總則 : 원안과 같음

6) 審査結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1~4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96.12.16~12.19)에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
원 9명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 1995年度 歲入 · 歲出決算承認案

'96.8.31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결산승인안은 '96.12.16 제4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작성한 「1995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임.

2) 1995會計年度 歲入 · 歲出 決算

- 세입
 - ┌ 예산액: 850억 81백만원
 - └ 수납액: 970억 62백만원
- 세출
 - ┌ 예산액: 850억 81백만원
 - ├ 예산현액: 880억 28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9억 47백만원)
 - └ 지출액: 707억 24백만원
- '96년도 이월액: 263억 38백만원
 - ┌ 사고이월비: 20억 19백만원
 - ├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54백만원
 - └ 세계잉여금: 242억 65백만원

3) '95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 규모

○ 總括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85,081	97,062	85,081	88,028	70,724	26,338	2,019	54	24,265

○ 一般會計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77,773	87,951	77,773	80,675	68,587	19,364	2,019	54	17,291

○ 特別會計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세 입		세 출			'95 이 월 금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계	사고이월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합 계	7,308	9,111	7,308	7,353	2,137	6,974	•	•	6,974
의료보험기금	976	979	976	976	963	16	•	•	16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220	479	220	220	31	448	•	•	448
주차장	6,112	7,653	6,112	6,157	1,143	6,510	•	•	6,510

4)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 1995년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6.8.31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이 예비비지출승인안은 '96.12.16 제47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提案理由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임.

2) 主要骨子

○ 一般會計

- 예비비예산액 : 9억 96백만원
- 지출결정사업 : 13건
 - └ 구청사 개수공사
 - └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시설 구축
 -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 예비비지출결정액 : 6억 55백만원
 - └ 지출액: 5억 81백만원
 - └ 불용액: 74백만원

○ 特別會計

- 예비비예산액 : 1억 45백만원
- 지출결정사업(1건) : 흥은3동 노외공영주차장내 조명등 설치
- 예비비지출결정액 : 27백만원
 - └ 지출액: 23백만원
 - └ 불용액: 4백만원

3) 審査結果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

다.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서울특별시서대문구관내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

1) 제안 및 상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에 시공된 도시가스 배관공사는 도시가스 사업 법령에 의한 적정한 시공을 하지않고 부실시공한 점이 곳곳에서 확인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대형 가스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 도시가스 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95.12.9 홍성덕의원의외 24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5.12.29 제38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상정 되어 구성·의결함.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

가) 구성

위원장 : 전성장

간 사 : 김동덕

위 원 : 박노현, 최광진, 박덕균, 조재구, 권재일, 홍성덕, 오환인
(총9인)

나) 활동기간

96. 4. 15 ~ 96. 7. 31(108일간)

다)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대상 : 서대문구청 산업과 (서울도시가스, 극동도시가스)
- 조사범위 : '91~'95년 기간중 시공된 도시가스 공사 및 사무
- 배관시설 : 233.4km
- 지역정압기 시설 : 18개소
- 특정가스사용 시설 : 88개소

라) 조사방법

- 설문조사 및 주민·지역구 의원 신고 접수
- 조사자료요구 및 관계인 증언 청취
- 위원회 자체조사 및 구청·가스안전공사 합동조사

마) 조사반 편성

- 1차 조사반: 4인 1조 2개반 편성
- 2차 조사반: 구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편성

3) 조사결과

가) 총괄

구 분 시설별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1 차		2 차		3 차	
		조사수	지적수	조사수	지적수	조사수	지적수
배 관 시 설	○매설 깊이	20	6	9	3	29	9
	○모래 투입		6				6
	○보호포 설치		1				1
	○기타안전시설		1				1
	계	20	14	9	3	29	17
특 정 가 스	○지상노출가스관및 고압가스실 관리	4	4			4	4
지역정압기	○계기 작동여부 및 관리 실태	4				4	
합	계	28	18	9	3	37	21

나) 주요조사사항

가스배관시설

○ 매설깊이 준수 여부

- 8m 이상도로: 1.2m 이상
- 8m 미만도로: 1.0m 이상
- 공동주택및 부지: 0.6m 이상

*상·하수관등 장애물 구간 심도 미달시-보호판 설치

- 모래투입및 되메우기 유효한 다짐
- 보호포 가스배관 상층부 설치 여부
- 가스누설및 노후 상태

지역 정압기 시설

- 원방 감시장치 작동 여부
- 배관도색 및 노후상태
- 주1회 순회점검 실시 여부
- 통풍 시설 설치 여부

□ 특정가스 사용 시설

- 가스누설 여부
- 배관도색 및 노후상태
- 가스누설 자동 차단기 작동 여부
- 지상 노출 가스배관 및 기타 안전관리 사항

다) 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배관시설]- 1차조사결과

번호	조사일	위 치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요 구 사 항	공급회사	
1	'96 4.22.	미근동 215 서소문A (동방약국 앞)	없 음		극동도시 가스(주)	제1반
2	"	연희1동 632 (다가구주택)	보호포 미설치	시설기준대로 보호포를 배 관 상층부에 설치할 것.	서울도시 가스(주)	"
3	"	연희2동 181-169 (영동석유)	없 음		"	"
4	4.23.	영천동 69- 130 (영천부동산)	없 음		극동	"
5	4.23.	냉천동	없 음		"	"

번호	조사일	위 치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요 구 사 항	공급회사	
		68(주택가)				
6	"	대현동 90-44(코알라)	자체왕사 (마사) 투입	설계시방서에 맞는 모래인지 확인하여 양질의 모래로 시공해야 할 것임.	서울	"
7	"	옥천동 109-1(주택가)	없 음		극동	"
8	"	옥천동 89-1(주택가)	모래 미투입	양질의 모래로 보강 시공해야 할 것임.	"	"
9	"	옥천동 112-2(주택가)	매설깊이 0.65m	시설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재시공해야 할 것임.	"	"
10	'96 4.27.	충정로3가 187 (의료선교원)	없 음		"	"
11	"	충 정 로 3 가 1-7 (경기의원)	· 매설깊이 0.95m · 모래 미 투입	· 시설기준대로 조치하고 · 양질의 모래를 투입 재 사용해야 할 것임.	극동	제1반
12	4.22.	홍은2동 11-143(주택가)	· 매설깊이 0.8m · 자 체 왕 사 투입 시공	· 시설기준대로 조치하고 · 설계시방서에 맞는 모래인지 확인하여 완벽 시공해야 할 것임.	서울	제2반
13	"	홍은2동 11-124(주택가)	· 매설깊이 0.45m	· 시설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

번호	조사일	위 치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요 구 사 항	공급회사	
14	4.25.	홍은2동 9-89(주택가)	·매설깊이 0.78m	·시설기준에 맞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15	"	홍은2동 9-327(홍은정육점)	·매설깊이 0.18m로 보호판 설치	·하수관 상월 구간으로 보호판으로 시공되었으나 정밀 진단후 재시공해야 할 것임.	"	"
16	"	홍제3동 267-30(주택가)	·매설깊이 0.75m 없음	·시설기준에 맞도록 조치할 것.	"	"
17	"	홍제3동 300-4(주택가)			"	"
18	"	홍은3동 265-155(주택가)	·자체왕사 투입 시공	·설계시방서에 맞는 모래인지 확인하여 완벽시공해야 할 것.	"	"
19	"	남가좌 1동 248-34(주택가)	·자체왕사 투입 시공	·설계시방서에 맞는 모래인지 확인하여 완벽시공해야 할 것.	"	"
20	"	북가좌 2동 2-25(주택가)	없 음		"	"

(배관시설)- 2차조사결과

번호	조사일	위 치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요 구 사 항	공급회사	
21	'96 7.11.	천연동 42-1 (팔구사부동산)	없 음		극동	
22	"	냉천동 123-1 (명성양복점)	없 음		"	
23	"	냉천동 106 (국민일보)	없 음		"	
24	7.13.	북가좌1동 119-37 (새재살집)	없 음		서울	
25	"	북가좌1동 135-4 (강원슈퍼)	없 음		"	
26	"	북가좌1동 382-6 (주택가)	· 조사전 보강공사 실시	· '96.7.10(조사3일전)심도 0.8m 배관 약 10m에 대하여 보호판으로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당배관과 연결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밀진단 실시후 시설기준대로 완벽시공토록해야 할 것임.	"	
27	"	홍제2동 143-6 (이조면옥)	· 조사전 보강공사 실시	· '96.7.10(조사3일전)한전케이블 상월구간 심도 0.6mm배관 약 10m에	"	

번호	조사일	위 치	지적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요 구 사 항	공급회사	
				대하여 보호판 설치 하였으나 당배관과 연결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밀진단 후 시설기준대로 완벽한 시공을 해야할 것임.		
28	7.13.	연희3동 51-13 (주택가)	· 언 덕 절 개 구간 0.05m 매설	· '94배관공사후 '95년도중 주택및 골목길 계단 설치 시 배관상부 토층 약 1m 가 절개되었으므로 완벽한 보강공사로 주민의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임.	서울	
29	"	홍제2동 88-1 (주택가)	없 음		"	7.10 폐관 이설 완료

[특정가스 사용 시설]

번호	조사일	조 사 대 상		지 적 사 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위 치	업 소 명			
1	'96 4.22.	북아현동 170-1	한성중· 고등학교	· 인입가스관 학교 담장 축대코너 설 치	· 월 사용예정 16.5 90㎡ 업소로 담장 외벽에 보호관을 설 치하였으나, 대형차 량 충돌우려등 주민 에게 불안이 없도록 보호벽을 설치해야 할 것임.	서울
2	"	북아현동 215	북성초등 학교	· 인입가스관 학교 옹벽언덕 지상노 출	· 월 사용예정 6,421 ㎡로 노출된 인입가 스관을 어린이 미끄 럼 타기등 주민의 불 안이 없도록 지하매 설토록해야 할 것임.	" "
3	"	창 천 동 30-33	그 레 이 스 백화점	· 전기스위치 유동 으로 스파크위험 · 고압가스실 출입 구 직원탈의 및 인화물질 1회용 도시락 옷장위 방 치	· 월 사용예정 89.1 43㎡ 대형업소로 전 기스위치 고정부착 및 탈의실 이전 검토 등 안전관리상의 특 별관리 요구됨.	"
4	"	북가좌동 376-17	북 가 좌 초 등학교	· 지상노출 인입가 스관 위험(안전) 표지	· 월 사용예정 12.6 03㎡ 업소로 지상노 출 배관이 안전표지 가 없어 방관할 우려 가 없도록 페인트 도 색 및 교통안전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할 것.	

[지역 정압기 시설]

번호	조사일	조 사 대 상		지 적 사 항	시정(처리)요구사항	비고
		위 치	업 소 명			
1	'96 4.29.	연희동 88-1	연희초등 학교	없 음		
2	"	홍은동 265-381 (축대)	연희로	없 음		
3	"	북가좌동 145	한양(아)	없 음		
4	"	북가좌동 99-16	삼호(아)	없 음		

라) 건의사항

- 배관매설 상태 정밀진단및 재시공 철저
 - '94년 12월 아현동 대형폭파사고 이후 현재까지 시공된 시설물은 시설 기준을 준수, 비교적 안전하게 설치되었으므로
 - '88년 도시가스 초기 공급시부터 '94년도까지 시공된 배관시설에 대하여는 자체추진계획에 의하여 최첨단 장비에 의한 과학적인 정밀진단과 재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 보강공사 추진계획서 및 관로매설 탐지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제출바라며,
 - 유사시 주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가스배관도면」을 각 동별로 비치·활용해야 할 것임.

- 도시가스 사고위험 신고 활성화 및 전시민 감독화

- 도시가스 사고 위험 신고 채널(전화번호)을 119, 112등과 같이 일원화하여 시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고
- 시설기준을 구소식지, 지역신문 및 T·V등에 수시 홍보하여 입체적인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해야 할 것임.
- 주민신고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 지역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도시가스공사에 대한 입체적인 감독체제를 확립토록 하여야 할 것임.

○ 도로굴착허가 및 원상복구 철저

- 도로굴착허가는 지하에 묻혀 있는 각종 케이블 및 상·하수관과 연계하여 설계도면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 배관시설 공사시는 지하매설 각종 시설물이 파손 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굴착된 도로는 공사완료 즉시 원상태로 복구하여 장기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부실 시공업자 관리철저

- 부실공사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 등록업체인 수탁업자에 대하여 사전 채권 확보등을 철저히 하고
-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공감리제는 공사시 상주 감독제를 도입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 구청장(담당 공무원)에게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와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도시가스인입 시설비 절감 방안

- 도시가스인입 시설비는 서울시 표준단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으나 다세대·연립주택등에 설치되는 시설비는 재조정 절

감도록 해야 할 것임.

- 일부 지역관리소에서 도시가스시설비 부담을 서울시 표준단가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비용징수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라. 西大門區議會議事堂建立推進特別委員會

1) 目的

議會議事堂建立推進委員會는 '94년 기 구성되어 활동중인 바 현 의사당건물이 낡고 보건소와 공동으로 사용하여 議政活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회기능에 적합한 독립의사당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을 의결하여 執行部에 건의하는등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기 위함.

2) 委員會 構成

- 구성일시 : '94.10.19
- 위원구성 : [위원장 : 강석준
 간 사 : 김종섭
- 위원 : 김동덕, 정혜연, 이석문, 이성배, 최광진, 홍성덕, 오환인

3) 主要活動 事項

- '96.8.23(금) 의사당매입에 관한건 (연희동 165-3외 7필지 현재빌딩)
- '96.12.19(목) 의회청사건립부지매입여부의건 (홍은동 산 26-151외 1필지)
- '96.12.24(화) 의회의사당부지확보의건 (홍은동 산 26-151외 1필지)
-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 부터 의사당건립 완성시까지

4) 推進方向

- 의사당건립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 의회기능확보를 위한 의사당 신축 추진 등
- 기타 수시 위원회의 개최 세부추진계획수립추진등

5) 現 區議會議事堂 現況

구 분	평 수	사 무 실 배 치 현 황	비고
4층	143.3평	본회의장, 상임위원장실, 의원휴게실	
3층	201.3평	의장실, 부의장실, 소회의실, 사무국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2층	217.2평	의약과의 8개 사무실	
1층	215.5평	보건행정과의 6개 사무실	
지하	176.9평	기관실, 식당, 창고, 서고	

마. 西大門區倫理特別委員會

1) 제안 및 상정

'96.10.18 정연식의원의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의 제정과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96.10.21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었다.

2) 운영계획

- 1996년 12월 20일 제4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운영계획 채택

가) 목적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 관계규정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준수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여 윤리적 지표를 확고하게 밝히고 서대문구의회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한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함.

나) 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 위원회 구성

- 명 칭 :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 위원구성 : [위원장 : 정연식 의원
] 간 사 : 이성배 의원

○ 위원 : 7명(정연식, 이성배, 박노현, 김동덕, 오환인, 이진수, 권재일)

○ 활동기간

- 활동기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월간('96.12.22~'97.4.21)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 결과보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

다) 추진방향

○ 의원의 윤리지표 명문화

○ 사전 예방활동 강화

○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규명 및 사후방향의 제시

■ 결 의 안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대한결의안 ❖

1) 提案

'96.12.19 제47회 정기회 제2차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提案理由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정하고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과 구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규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主要骨子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
-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행사 금지
-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 누설금지
-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할 것.
- 허례허식 행위를 금지하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준수
- 회기중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성실히 회의에 참여할 것.

2) 審査結果

제4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결의안을 원안 가결 하였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

- 제1조(윤리강령)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공적기능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제8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구정감사 또는 구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제10조(허례허식금지) 의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바. 西大門區條例整備特別委員會

1) 제안

'96년 10월 18일 이기봉 의원의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결의안으로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 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 편의 및 복리증진에 제약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조례와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과 한시적인 행정목적 달성에 의하여 현행 규정대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조례를 효율적으로 심사·정비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제공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다) 참고사항

-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제20조의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 2) 운영계획 : 특별위원회 구성 후 운영계획 수립 본회의 보고

2) 심사경과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의결함.

3) 위원회 구성

- 명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 위원 : 9명(전성장, 이기봉, 정일출, 박덕균, 최광진, 허준구, 임재선, 기창표, 김영일)
 - 위원장 : 전성장 의원
 - 간 사 : 이기봉 의원

※ 운영계획서 수립은 '97년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함.

사. 西大門區災害對策特別委員會

1) 제안

'96년 10월 18일 전성장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결의안으로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 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을 강구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월간으로 한다.

나) 제안이유

도시시설물의 안전여부를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의 재해와 화재, 시설물의 붕괴, 폭발 등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등 재해대책 업무를 지원하거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토·처리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다) 참고사항

-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제20조의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 2) 운영계획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 선임후 운영계획 수립 본회의 보고

2) 심사경과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의결함.

3) 위원회 구성

- 명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해대책특별위원회
- 위원 : 9명(정현철, 오환인, 김종철, 박노현, 강석준, 홍성덕, 이진수, 허준구, 이석문)
 - 위원장 : 정현철 의원
 - 간 사 : 오환인 의원

※ 운영계획서 수립은 '97년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함.

아. 西大門區一般廢棄物處理對策特別委員會

1) 제안

'96년 10월 18일 이진수 의원의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결의안으로 주문 및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문

- 1)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 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일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제안이유

일반폐기물 처리문제는 도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직결되어 있음에도 시민의 청소 행정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공동생활에 대한 낮은 인식에 의하여 사업장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와 작업등으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이 거리에 방치되어 도심의 미관과 문화 도시로서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일반폐기물 처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다) 참고사항

-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 법시행령 제20조의 3,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 2) 운영계획 :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간사 선임후 운영계획 수립 본회의 보고

2) 심사경과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을 의결함.

3) 위원회 구성

- 명칭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처리대책특별위원회
- 위원 : 9명(김정현, 김동덕, 정혜연, 전성장, 이진수, 정일수, 송영우, 김평락, 권재일)
 - 위원장 : 김정현 의원
 - 간 사 : 김동덕 의원

※ 운영계획서 수립은 '97년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함.

其他 分野別 活動

- I . 區政質問
- II . 行政事務 監査
- III . 民願處理
- IV . 研修 및 세미나

第3章 其他 分野別 活動

I. 區政質問

1. 現況

區政質問이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전반에 관한 處理狀況과 將來計劃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원의 質問權은 당해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議會의 構成員으로서 가지는 本質的인 權限이라 하겠다.

회 기	구 분	질 문 의원수	질 문 건 수	질 문 내 용						
				3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 비 국	건설국	보건소
	계	23	102	7	32	4	11	31	13	4
	제39회 임시회 (96.3.15)	10	23	1	5	1	4	10	1	1
	제40회 임시회 (96.5.13~5.14)	5	19	2	9	•	•	3	4	1
	제45회 임시회 (96.10.29)	5	10	1	1	2	1	2	3	•
	제47회 정기회 (96.12.12~12.14)	13	50	3	17	1	6	16	5	2

2. 質問 및 答辯

◎ 제39회 임시회('96.3.15 - 1일간)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박덕균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 운영 쇄신방안에 대하여? - 변상금부과에 따른 조세저항 문제 - 구의원들의 선거공약에 대한 대책 - 호국단체 지원방안 -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 1,900여 필지 - 부과금액 : 55억 5천만원('93~'95) - 징수금액 : 23억 3천만원(42%) - 대책 :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5년간 소급적용으로 부담과중, 대부요율인하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요청, 50만원이상 분할납부 홍보 ■ 구의원 공약사업 추진 (9개분야 14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기본업무와 병행추진, 연차적 타기관 협조사항은 단계별로 구정에 반영 ■ 호국단체 지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단체 : 4개단체 - '95지원현황 : 운영비 지원 ~단체별 400만원 사무실제공 ~구 홍제3동사무소 - '96지원계획: 운영비 확대지원 각종행사등 행정지원 방안강구 ■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 및 구산하 모든 공직자 엄정중립 - 통반장 엄정중립, 불법선거 개입시 법적제재
이기봉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수입 문제에 대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행정은 투자에 비하여 수입은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도 우리구 보건소 수입 : 총 2억 1천만원 - 향후 발전방향 : 1차진료 기관 + 지역복지센터 - 보건소 활성화 계획 : 한방 무료진료 실시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 통장들의 임기와 임명문제에 대하여?	<p>■ 우리구 현황 : 22개동 602통 (현재 593명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장 임기 : 2년 연임가능 - 현재실태 : 통장직 기피 경향이 강하며, 위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때문에 고령이라도 동행정 공백이나 후임자 선정 어려움 때문에 연임. 향후 지단을 받거나 품위유지를 못하는 자는 수시로 정리할 계획임. 	
이진수의원	□ 보건소 앞 좌회전 금지조치 철회요구?	<p>■ 동 지점은 사고다발 지역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었으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종전과 같이 좌회전을 허용토록 '96.1.24 서대문경찰서에 요청하였음.</p>
전성장의원	□ 행정착오 보상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p>■ 우리구에서는 민선구청장 출범이후인 '95.7부터 일부 분야 시행중임 (교통지도과 - 5,000원상당의 도서상품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민원을 취급하는 시민봉사실, 동사무소 등에 확대시행할 계획임. - 직원교육 강화를 통해 행정착오 문제 근절 하겠음.
	□ 무허가 노인정에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은 없는가?	<p>■ 노인정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노인여가시설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 후원회 조직등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하겠음.</p>
	□ 쓰레기 종량제 실시 1년 결산 실적은?	<p>■ 쓰레기 발생량은 시행전 1일 평균 389톤보다 88톤이 감소한 301톤이 발생되어 22.6%감량효과가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량은 시행전 1일 평균 63톤에서 83톤이 수거</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되어 약31.7%가 증가되었음.</p> <p>또한 종량제 실시후 뒷골목 청소가 미흡하여 “뒷골목책임 담당구역제”를 실시하여 쾌적한 청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p>
오환인의원	<p>□ 동절기 버스종점 인근 주택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에 따른 대책은?</p>	<p>■ 주사무소와 차고지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회사는 542번(현대교통)과 134번(서부운수)입니다.</p> <p>- 주거환경 저해요인으로는 동절기 엔진에열로 인한 소음발생 혹한기 밤샘시동 차고지 인근 통행주민 안전사고 우려등입니다.</p> <p>- 이에대한 대책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의 관외이전이 근본대책이겠으나 버스노선조정, 주민이해관계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 방음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주민 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원요인을 사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종철의원	<p>□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p> <p>□ 서대문구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지연되는 사유?</p>	<p>■ 당초 계획은 서울시 사업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 : 마포구 노고산동 ~ 서대문구 창천동 • 길이 : 485m • 넓이 : 15m 였으나, <p>- 마포구와 서대문구의 생활권 분리, 도시미관 저해등으로 인근 대학생 및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p> <p>이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p> <p>■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계획을 '95.12.31서울시에 결정요청하였으나 신촌지역의 7개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시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확대요청이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재공고등 절차이행상 시일이 소요되나 금번 재상정하여 서울시장</p>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에게 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홍성덕의원

□ 지역신문의 왜곡보도 및
구청의 예산지원에 대하
여?

■ 왜곡 보도가 있을 경우 정정보도를 요구하
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
로 관내 지역신문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런일
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남가좌2동 6지구 재개발
사업장 불하건 및 기존도
로 불하건?

■ 남가좌6 재개발구역은 '92.3.13건설부 고시
제98호로 구역이 지정되었고 '94.3.7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95.2.11 착공 현재 지하층
건축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가좌 6구역은 기존도로를 포함 재개발구
역으로 지정되었고 또한 사업승인 되었으며
로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국·공유지는 반드시
재개발사업에 제공토록 매각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현황도로는 주민의 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준공시 기존의 현황
도로에 맞추어 보도를 설치하고 현황도로를
유지하도록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반영하였
으며 준공시 이 계획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정화조 청소비의 자로제
도를 통한 후불제 실시
에 대해?

■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시 현장
에서 수요가의 요구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
거나 청구서를 발급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25.3%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지로고지서 제도」의 전환
실시는 체납액의 징수, 관계 법규정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일의원

□ 홍제3동 문화촌 아파트
사업승인에 관한건?

■ 문화촌 아파트

- 사업개요

• 위치 : 홍제3동 237-195외 33필지, 주
민자력 재건축

• 규모 : 4개동 769세대, 7,816평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 문화촌 재건축 조합 (조합원 456명) - 지연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에서 벽산건설과 시공계약 체결후 이주비 42억 4천만원 수령후 각자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 조합에서 벽산건설에서 고려산업개발로 시공회사변경 • 벽산측에서 계약이행 촉구소송제기, 현재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음 - 조합과 벽산건설,고려산업개발등 당사자간 해결토록 구청에서 적극적 행정지도중임. 원칙적으로 주민의 자력에 의한 사업이나 주민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방향 모색하겠음.
권재일의원	□ 노점상인 단속 및 관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노점상운영 -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대금지구역 : 4개노선(의주로,충정로,서소문로,이대앞) • 잠정허용지역 : 31개노선, 노점상362명 • 특별관리구역 : 4개소(신촌,모래내,영천,홍제지역)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기능 저하, 주민통행 방해 • 신촌등 대학가 -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 조성 - 단속 · 관리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공공기능과 영세노점상의 생계측면 조화유지 • 영업시간 위반,면적초과등 위반행위 단속 • 기동반 운영 정기적 단속실시 (1일 4회이상, 주1회 심야단속) □ 주택가 주차질서 단속대책? ■ 우리구의 주차현황은 '96.2현재 등록보유차량이 62,812대이며 주차가능공간은 총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이용업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에 대하여?</p>	<p>■ 이용업소 행정처분 기준 (공중위생법 제41조)-생략</p>	<p>37,975구획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0.5% 수준으로써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함.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설치현황은 73개소(연장 21.6km) 지역에 7,927면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절대부족하여 야간 등에 긴급차량의 소통,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호각 예고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의 날”지정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도와 단속활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하천복개, 유휴공간 활용등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p>
정일출의원	<p>□20세기 한국판 몬도가네인 서대문구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상은?</p>	<p>■ 홍제천변 자전거 전용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요 : 서울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제천 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홍연교~성산대교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총규모 : B = 4m, L = 4,597m • 서대문구 구간 : 홍 연 교 ~ 사 천 교 간 (2,040m) -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연교~홍연2교간(450m) 전용도로 개설 완료 • 홍연2교~홍남구간(600m) 96년도 공사 시행 예정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역할 미흡: 진입로, 연결도로등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구간 마포구와 협의 한강고수부지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지 연결 추진 • 전구간 완료시까지 인근 주민의 여가선 용 장소로 활용 (조깅등 레저스포츠 장소로)

◎ 제40회 임시회('96.5.13 ~ 5.14)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박덕균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제안 □ 모집에 대한 참여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발전 구민제안 모집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으로부터 구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공무원들의 편협된 시각을 탈피하여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발전 구민제안 모집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은기간 구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를 확대 실시하여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정발전 구민제안 모집을 평가 분석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하반기에도 확대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자치의 봉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이석문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이동이 많은 우리구 재개발지구 등에 대한 신속한 통·반조직 정비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예산 절감방안의 강구에 대해? □ 4천여 반장중 1,400여 반장들에게만 신문이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1개 통은 6~11개반, 1개반은 20~40가구로 구성하되 특수한 지역사정에 따라 그 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95년에는 4회에 걸쳐 불합리한 통·반조정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또한 '96년도 상반기에도 불합리한 통·반 조정계획에 따라 현재 22개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통·반의 조직운영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반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때에 신중히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부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지출이 자치시대에 합당한 지출이라 보는가?	논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진수의원	□ 홍제4동 동사무소 신축 계획 추진상황은?	<p>■ 홍제3·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내 동사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91.3부터 동청사 부지 확보 방안 및 신축계획을 수립 재개발조합측과 협의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95.9. 홍제3구역 재개발조합측으로부터 택지비 및 공사비의 부담요구가 있어서 예산조치등 문제로 해결책을 찾기위해 조합측과 연석회의 등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p> <p>앞으로 홍제4동 동청사가 당초 방안대로 건립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p>
	□ 홍제3·4 재개발 구역 진입로 주변 녹지해제 추진상황은?	<p>■ 홍제3·4구역 진입로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녹지는 765㎡(3구역 542㎡, 4구역 223㎡)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홍제동 109-11 등의 97㎡은 홍제3재개발조합측에서 녹지의 위치변경과 일부 구역해제를 요청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홍제4구역의 경우 녹지해제 신청이 없으며 민원 또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p>
	□ 홍제4동 동사무소 부지 주변순환도로 확보방안은?	<p>■ 홍제동 122-27에서 122-34의 직선도로 개설문제는 현행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부분과 연결하여 현행 4m 도로로 연결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무리하게 직선도로를 개설할 경우 조합의 부지매입이(약 500m)수반되므로 조합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역변경,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 홍제동 103-9 지상의 주유소 신축공사로 인한 동사무소의 피해대책은?	<p>■ 주식회사 영남석유의 주유소 신축을 위한 지하굴토공사로 인하여 홍제4동 청사내부에 길이 10m, 폭 10cm가량의 균열이 발생, 청사밑 지반이 일부 침하되어 대한건축사협회에 진</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단의회 하였으며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및 안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진동 및 지하수 유입·유출예방에 유리한 공법으로 변경한 굴토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정일출의원 □서대문구 홍제천변 개발 계획은 어디쯤 와 있는가?

■홍제천변 개발계획은 「홍제천 水系 고수부지 시민휴식 공간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해 좌안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안에는 배드민턴장, 씨름장등 운동시설지구와 수변 휴게시설지구를 건설할 계획임.

이와는 별도로 고수부지를 포함하여 홍제천 상부에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연가교에서 사천교까지 폭17m, 길이 570m 에 자주식 주차장 468대 규모)

□관내 노점상 상행위 단속 권은 경찰인가, 구청인가?

■노점상 단속권한은 단속의 필요성에 따라 구청에서는 시민통행과 안전을 위한 도로기능 유지와 관리목적에 따라 도로법 등을 근거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장애물 제거차원에서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노점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은 구청과 경찰에서 이중으로 단속을 받고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 앞으로는 노점상 단속시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전성장의원 □제5회 신촌문화축제를 마감하면서 초대 민선 구청장으로서 참여한 소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신촌문화 축제는 국내 유수의 명문사학이 밀집해 있어 그에 따른 대학문화등 다른 어느 지역보다 독특한 지역여건을 배경으로 시작하여 현재 5회를 치루었습니다.

“젊음과 미래와 꿈이 있는 신촌”이라는 슬로건아래 서대문구 22개동 40만 전 구민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한 화합의 한마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T.V난시청지역 해결책은 없는가?</p>	<p>당으로 구민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으며 행사후 신속한 청소, 일사불란한 교통통제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등 명실공히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p> <p>다만, 보완하여야 할 점은 5개 대학 학생들이 일부 참여하였으나 전체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점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소 시끄러운점이 있었으며 일부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였던 점은 계속 연구보완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그리고 신촌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수준높은 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전 구민의 축제로 그 위상을 높이고 지역문화 단체들의 참여폭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금년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안전한가?</p>	<p>■ T.V 난시청지역 해결책은 공영방송 차원의 문제로 이미 한국통신에서 무궁화 인공위성 발사 완료 후 한국방송공사에서 '96.7.1 이후 전국의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험방송중이므로 난시청 문제는 점차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p> <p>우리구 난시청 지역은 5곳으로 연희1동 220일대, 519, 520일대, 홍제1동 전지역, 북아현1동 800~1,000번지 일대, 북아현3동 3번지 일대 등으로 10,608세대 입니다.</p> <p>■ 우리구에서는 총 6개반 60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재해예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방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수해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각종 수방대비 공사는 물론 재해위험시설물을 사전 정비 완료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 제45회 임시회('96.10.29 ~1일간)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박덕균의원	<p>□ 관내 국·공유지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개선방안에 대하여?</p> <p>□ 사유지를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보상 대책은?</p>	<p>■ 우리구 관내 변상금 과징현황은 현재 3,300필지에 23억 정도가 부과되어 이중에서 약 10억 징수되고 13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p> <p>- 변상금 부과기준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 : 개별공시지가 • 요율 : 주거용일 때 25/1,000이며 • 대부료(사용료)에 20%를 가산하게 됩니다. <p>- 법적근거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국유지) •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 (구유지) <p>-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요율인하 (주거용 2.5%→1.5%) <p>↳서울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50%인하는 업무개선과제로 구청에서 연구 • 변상금이 50만원 이상이면 분할납부토록 하고 있음 <p>- 개선방안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정할 사항으로 구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p> <p>■ 사유지 사용에 따른</p> <p>- 보상대상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 • 공공사업 시행이 불분명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 • 공공사업 시행이 불분명하나 대법원 판례와 유이하여 승소기대가 전혀없는 토지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대상 제외토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등이 자조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민법 제245조(점유 취득시효 - 20년이상)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 • 하천구역에 무상국유화 대상토지 등입니다. - 어려운 주민들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의원	<p>□정화조 청소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화조 수거실태 - 수거차량 계량기 점검 실태 	<p>■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살수부패방식 정화조는 『쇄석층』에 혐기성 미생물막이 형성되어 부패조에서 유기물을 분해시키도록 혐기성 미생물을 제공하며, 청소시 쇄석을 제거 후 청소를 실시한 후 다시 투입하므로 이들 미생물 막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쇄석층이 없는 임호프탱크방식은 청소시 미생물 막은 파괴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쇄석층이 없는 임호프탱크방식은 청소시 주민 및 청소대행자가 인식부족으로 미생물 군을 파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거차량 계량기 점검 등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년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량기 불량에 따른 민원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p>
	<p>□불법 무허가 건물 단속실태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방지대책에 대하여?</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건물이라함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단속대상인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1981.12.31 이후 적법한 절차없이 건축된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建物を 말하며, 그 이전에 발생된 무허가건물은 양성화되어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단속실태는 '95년도에 458건이 적출되어 435건을 철거조치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신발생 무허가 건물 방지대책으로는
 - 사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센터 운영
 - 시민자율참여 정비효과 고양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의원

□ 건축법상 건축물 반자높이의 제한에 대하여?

■ 건축법상 반자높이는 일반적으로 거실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인 거실의 경우 최소 2.1M 이상, 관람집회, 종교집회 시설은 4.0M 이상 등 높이의 최소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외적인 제한규정인 "전면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및 "일조권에 의한 사선제한" 내용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제한 규정입니다. 아울러 반자높이는 건축물의 사용용도, 내부 설비 방법등에 따라 6~7M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 최고높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석문의원

□ 서대문구 관내 공원들에 대하여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제별로 특성을 부여하는 테마공원 건설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 및 예산반영 등에 대하여?

■ 우리구 테마공원 조성계획은 환경녹지의 절대보존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대문구독립공원을 축으로 5대 권역별로 각기 특성을 부여한 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5대 권역은 서대문독립공원, 무악재, 안산공원, 백련공원, 홍제천 주변공원조성 등이며 젊음과 낭만의 신촌거리를 화합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서대문독립공원 성역화사업을 마무리하고 공원의 산책로 정비등 주민 편익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 안산순환도로 건설계획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p>	<p>■</p>	<p>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안산, 백련공원, 무악재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p> <p>공원개발에 필요한 재원(870억 보상비제외)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주에 의한 개발 참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p> <p>- 안산순환도로 추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4. 16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 '96. 9. 25 : 안산순환도로 개설공사 시설계 용역발주 시행 • 설계구간 : 시점 - 서대문구 연희동 산5의 58 종점 - 서대문구 홍제동 산33의 10 • 사업개요 : B=10m, L=1,200m • 사업기간 : '96. 9. 25 ~ 2002년 • '96. 4 ~ 현재 : 보상추진 (실시계획 인가구간) • '96. 11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미협일자) <p>- 향후 추진계획 (안산 순환도로는 약 367억원이 소요될 예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보상완료 구간 (L=1,200m) '97년 도로개설공사 시행 • 도시계획선 변경 및 신설 • 사업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사업시행 예정 <p>- 사업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주변 간선도로에 가중되는 교통량 분산 처리

質 問 議 員	質 問 內 容	答 辯 內 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겸용 설치로 주민 휴식 공간 활용 • 안산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 제47회 정기회('96.12.12 ~ 12. 14)

質問議員	質問內容	答 辯 內 容
전성장의원	□ 주민숙원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p>■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정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지향적인 행정체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p> <p>이에따라 경의선 철도변 방음벽 설치,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사업등 오랜 숙원사업등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 됩니다.</p>
	□ 풍치지구의 건폐율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p>다만,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대두되지만, 그 외 법적인 제약요인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주민들의 이해관계조정등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점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p> <p>■ 풍치지구 건폐율에 관한 내용은 '96.1. 5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에서 '96. 8. 10 "서울특별시 개정건축조례"를 통합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풍치지구 건폐율 완화는 서울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p>
	□ 음식물 쓰레기 대책은 무엇인가?	<p>■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지난 9월부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협의회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오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의 반입중단을 제기함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처리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p> <p>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 하며, 이 분야의 처리기 및 시설이 극히 초보단계에 있어 시행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무대상업소 선정, 학교등 집단급식소의 자체 처리시설 및 사료화 방안, 각 가정과 음식점소에 대한 홍보등 우리구 특성에 맞게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우리 음식문화의 변화와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민선자치 1년후 구민일인당세금부담액은 얼마이며 세금부담액을 줄일 방안은 무엇인가?
- 구민 일인당 세금부담액
- | 구분 | 인구수 | 지방세부과액 | 일인당부담액 |
|----|---------|-----------------|---------|
| 계 | 371,449 | 101,753,509,441 | 273,936 |
| 구세 | 371,449 | 18,038,731,705 | 48,563 |
| 시세 | 371,449 | 83,714,777,736 | 225,373 |
- ※ 인 구 수 : '95.12.31기준,
부과기간 : '95. 7월 ~ '96.6월말까지

이기봉의원

-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우리구의 올해 방역사업은 분무소독 431ha, 연막소독 190회를 실시하였음
- 방역사업 추진의 어려운 점은, 차량 연막소독이 일출·일몰 전후에 실시되어 골목 주차로 인한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절기 방역 소독시 독극물 원액 약제 취급, 고온·다습한 작업환경등으로 일용인부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구의 대책으로 새마을 방역봉사대등 오토바이를 활용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분무소독을 확대하여 방역효과를 제고할 것이며, 연막소독시 사전홍보 및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하수도 직결 배수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 배수구역내의 토지·건물 소유자는 배수설비 연결공사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수질환경보전 및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p>□마을버스 운영실태에 대하여? (북아현1동 전철역 인근 마을버스 정류장의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에서는 타구에 앞서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에게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우리구에서는 상하수도 전문면허를 가진 4개업체가 지정업체로 신고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앞으로 13개 관내 전문업체가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 권장하겠음. <p>■북아현동에는 현재 2개의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철역인근 정류장의 이전 문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불편사항 신고 접수율 12. 24까지 하고 있으므로 의견이 수합되면 종합검토 하겠습니다.</p>	
<p>김중섭의원 □대현동 이대 상권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에 대한 대책은?</p> <p>□대현동 56 - 40번지일대에 대한 재개발계획의 세부 추진계획은?</p>	<p>■'95년 10월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는 43,726건에 17억 6,500만원이며 이중 8억 6천 만 원 을 징수 하였습니다.(징수율 48.7%)</p> <p>이대주변은 지가가 매우 높고 나대지가 없어 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며 앞으로 민간차원의 유료주차장 건설과 대현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신촌민자역사 건설시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대현동 56-40 소재 6,628㎡는 이화여대 입구 도로변에 위치한 상가 및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공원용지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11.22 재개발 구역 지정되었으며, - 조건내용은 전체면적의 1/2인 3,314㎡는 공원용지로, 나머지 1/2인 3,314㎡만 재개발하도록 되어있어 조건대로 사업추진시 사업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전체 또는 일부의 공원용지 추가해제를 요구 하고 있으나 서울시 방침상 추가해제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김종섭의원

□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신촌축제를 서대문구축제,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서대문구 대신동에 대한 구립어린이집 등 어린이 탁아시설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협의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지금까지의 축제는 구청의 지원금과 주민의 기부금, 기획사의 협찬금으로 치루어 옴으로써 신촌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신촌문화축제를 연차적으로 주민의 재정적 부담없이 기획사의 협찬금만으로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제6회 축제에서는 각종 언론매체와 서대문구 소식지 등을 통한 집중적 홍보로 더 많은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가밀집 지역인 이대입구와 대현동 일대는 거주주민보다 유동인구가 많으며 민간보육시설로 이대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대신어린이집, 구립시설인 창천어린이집 등이 있어 신촌일대 상인들의 자녀 보육수요에 충분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박덕균의원

□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진료방법을 바꾸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 생명을 돌보아주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 우리구에는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으나 이름뿐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 좀더 발전적이고 변모된 보건소 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혜가 지역주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총 25개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를 점검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또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최광진의원

□ 많은 예산을 들여 개설해 놓은 도로는 관리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하여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 관내 발주하고 있는 공사들의 감독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우리구 사회복지 혜택의 편중된 집행은 타당한 것인가?

■ 우리구 관내 주차가능 구획수는 총37,975면으로서 주차가능율은 57.9%입니다.

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90년 9월 주차단속요원을 신규채용한 이래 현재 주차단속요원 31명과 공익근무요원 39명 그리고 각 동사무소 직원 2인씩으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1회씩 (가상)소방차 진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소방차 및 구급차등이 비상사태시 원활히 진입하도록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부족한 주차구획등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차량 근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실적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친절한 태도와 공손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개선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감독 체계는 설계⇨공사시행⇨중간검사⇨준공검사등 통상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중 감독공무원이 각종 민원처리, 보상건물철거, 시설물 유지관리, 설해대책등 부대업무가 많아 현장에서 상시 주재하며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사시행시 부실시공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구에는 5개 공부방, 2개 수련실이 있으며 연희A지구, 흥은2동, 흥제3동, 흥제4동, 북아현동, 북가좌동, 현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로는 구립어린이집 16개소, 민간 어린이집 38개소, 놀이방 42개소로 총9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현저동을 제외한 각동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 무질서한 옥탑건물에 대한 대책과 과감한 구제책은 없는가?

에 끌고루 분포합니다.
97년에는 연희2동에 신축계획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 동 지역별로 균형있게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옥탑의 무허가 건물은 대부분 물탱크실을 임의개조하여 무단으로 증축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허가 옥탑의 강력한 근절책은 사전예방차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적발 즉시 강제철거함으로써 발생초기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96년도에 적출된 42건중 40건은 강제철거 조치하였고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는 사전예방활동, 주민홍보(반상회, 유인물)를 강화하고 순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복지혜택의 편중된 집행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끌고루 분포된 적절한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환인의원 □ 의회와 구청과의 관계에 대하여?

■ 의회와 구청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양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구청의 관계는
-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서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어 있으며,
-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등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호보완적 협조체제와 동반자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화합과 단결의 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구두박스등 가판점은 현재 서울시에 1,889개가 있고 우리관내에는 49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상으로 좋지않지

□ 관내 가판점의 지도에 성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오환인의원		<p>만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서울시 방침에 의해 설치되게 되었습니다.</p> <p>가판점 지정뿐만아니라 위치이동에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영업하는 분들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p> <p>향후 보다 성실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p>
정혜연의원	<p>□ 시민아파트 보수에 대하여?</p> <p>□ 동사무소 소규모 사업을 1건당 5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이 막대하니 최고 1건당 1,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동민의 편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p>	<p>■ 현 우리구의 시민아파트는 금화, 연희A·B, 홍제동 등 4개지구 49개동이 있으며, 이중 보수대상은 C·D급 41개동이며, E급 금화지구3, 연희B지구 5개동등 총 8개동이 철거 대상입니다.</p> <p>- '96년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지침은 건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주요구조체의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은 시비부담이며,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시설의 보수는 자치구에서 판단하여 구예산으로 보수여부를 결정하고, 기타 분야는 주민 부담입니다.</p> <p>- 안전점검 등을 위해 월 1회 안전점검반 운영, 동별 책임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p> <p>■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은 주민건의 사항이나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500만원 미만의 도로소파, 하수관 부설, 보안등 수리,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 등을 '93년부터 동장 책임하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p> <p>금년도에는 동별 4천만원씩 22개동에 8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8억7천만원을 동장의 요청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p> <p>그러나 도로침하보수, 옹벽, 축대 보수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공사는 경우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구청의 해당 기능부서에서 시행하다보니 적기에 집행하지 못</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혜연의원

□ 자동차 통행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관내 주요통행로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동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1건당 공사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건당 공사비의 상한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 보관소는 총 16개소 210대분으로 지하철역앞 2개소, 공원 2개소, 학교앞 1개소, 시장 및 상가앞 3개소, 도로변 1개소, 구·동청사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자전거 보관소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정비하고 지하철역, 철도역 등 다중집합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 자전거 이용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홍제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를 안전시설 보강등과 함께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자전거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구민참여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홍성덕의원

□ 연세대학교 불법 통행료 징수의 건

■ 연세대학교 북문↔동문간 주차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통과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주차시설 이용료로 편법 징수하고 있으나
-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통과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연세대학교에 주차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통과차량과 주차차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기히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체계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개선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권재일의원	<p>□ 새마을 지도자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인상계획은?</p> <p>□ 남가좌1동 152번지 무허가판자촌 개발계획 및 주민이주 대책은 계획하고 있는지?</p>	<p>■ 우리구에서는 '97년도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에 대한 보조비를 1.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97년도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자치구 각급 사회단체의 임의보조금 2억8,300만원중 새마을 지도자 방역활동비에 배정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봉사자들의 식대등으로 계상된 400만원은 하절기 4개월간 방역활동을 하는 22개동 새마을 지도자분께 월 4만 5천원을 지급하는 수준입니다.</p> <p>이번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새마을 방역봉사 활동비를 각 동별 월 15만원씩 증액되도록 배려하여 주신다면 충분치는 않지만 방역봉사활동을 하는 새마을 지도자 봉사활동비(식대, 목욕비)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p> <p>■ 남가좌1동 152번지 일대는 1970년대 건립된 노후 불량주택으로 지역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사업인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이주대책비 지급등 세입자 대책이 마련되는등 도시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 재건축사업인 경우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은 주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민영사업이므로 세입자 대책 등의 별도 조치 없이 가옥주가 직접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됩니다. <p>그러나 상기 지역은 백조아파트(100세대, 약 910평)를 제외할 경우 토지이용상 효율적인 건물배치를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백조아파트와 협의, 재개발구역 변경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권재일의원	□ 남가좌1동 262번지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민 자체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청장이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지?	■ 남가좌1동 262번지 일대는 1970년대 건립된 노후 불량주택 약 200세대(평균 15평)가 밀집되어 있고, 공공시설(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주민대표자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조속히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문의원	□ 구정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전산화 세부실천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된 업무 전산화 추진 상태에 대하여?	■ 우리구의 통합사무자동화 추진계획은 금년초에 수립시행중이며 각 단위사업별 전산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시 자치구중 최초로 직원들의 일상 업무인 기안작성 및 결재, 문서수발·보관, 전자우편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 통합사무자동화 시스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거쳐 '97 상반기에 정상가동예정입니다. 둘째,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민원행정 및 세외수입 관리 시스템을 서울시 및 각 자치구요원과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주전산기에 이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외 단위업무별로 공공용지 점용료관리 시스템, 하수도 사용료 체납관리 시스템,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 등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전산기를 이용한 업무를 중점개발토록 노력하여 구정업무 전산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포의원	□ 독립문공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무의탁 노인에 대한 급식장소로서의 문제점 및 대책?	■ 무의탁 노인급식 - 현황 ·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길봉사회(대표, 김종은)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기창표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독립문소공원내 (천연동 녹지대) 노상 • 이용인원 : 1일 평균 노인 약 200명 • 배 식 : 빵, 요구르트, 우유등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로변에 접한 공원내에서 노상취식 상태이므로 도시미관 저해 • 취식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전혀없어 불편하고 비위생적임 <p>■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식당 신설을 요함 (서울시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 홍제동 313 - 26에 설치 운영중인 서부결로식당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배식하는 방안 강구중임.
허준구의원	<p>□ 구정예산 절감방안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이 나태하고 책임감이 없다. - '97세출예산 편성에도 각과마다 동일세목의 세출액이 상이함. - 홍제천변 정비 등의 형식성 	<p>■ 예산집행시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일시적 사업비 및 에너지 관련 경비를 중점절약토록하여 5~10%의 예산절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p> <p>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각종 사업계획, 물품제조구매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신공법 도입등으로 단위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사업추진 방법, 계약방법개선 등 다각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은 다시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p>
정일출의원	<p>□ 96년도에 발간한 홍보물이 무려 15종에 이릅니다. 그 실효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p>	<p>■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5종에 달하는 홍보물을 제작·발간하고 있습니다.</p> <p>이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내용이 중복되고,</p>

質問議員	質問内容	答 辯 内 容
정일출의원	<p>□ 구 청사내 유관단체의 사무실 사용상의 문제점?</p> <p>□ 구 청사내 지하에 위치한 문서고의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p>	<p>홍보물의 발간부수가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내용의 홍보물은 통합하고 불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억제하는 한편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정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p> <p>■ 구 청사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유관단체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서대문구 협의회” 1개부서로서 사용 면적은 약 24평입니다.</p> <p>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각종 소회의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협소한 구청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무실의 축소 등을 협의회장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p> <p>■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서고는 약 25,000여권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약 50평 규모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서고가 구청사 옥상에 설치되었으나 건축된 지 19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건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p> <p>지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습기 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부득이 이전하게 되었으며, 향후 통풍, 습기방지 등을 위하여 '97년도에 창호보수공사 등을 시행함은, 항습장치를 보관하여 주요문서에 대한 보전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p>

Ⅱ. 行政事務 監査

1. 概 要

西大門區聽의 行政全般에 대한 상태를 把握하여 議會活動과 豫算審議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을 획득하고, 违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是正要求 또는 改善方向의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정발전에 寄與하였으며, 우리구 의회에서는 매년 定期會 기간중 위원 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監査를 實施하고 있다.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 議會運營委員會

가. 監査期間 : '96.12.4 (1일간)

나. 監査對象 : 의회사무국 3계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사무중 1996년도에 처리된 업무

다. 監査班 編成 : 위원장 김종섭위원 (간사-이기봉위원)

구 분 반 별	감 사 위 원 장	대 상	사 무 보 조	비 고
1반	이기봉, 전성장, 정혜연	의 정 계	전문위원 : 이상헌	
2반	정연식, 강석준, 정일출	의 사 계	보 조 : 정선경, 김미영,	
3반	임재선, 오환인	의 안 계	최민경	

라. 監査結果

■ 건 의 사 항 ■

부 서 별	감 사 사 상	건 의 및 기 타 사 항
의 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의 직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 공동경비 집행에 있어 의장이 직권남용하여 무리하게 집행된 점이 있으므로 향후 관례,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의장의 권한을 분배토록 해야 할 것이며, • 의회 공동경비 집행의 세부 집행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열람 자료실 확보 및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 예산 및 자료실을 확보하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사무보조 수당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보조직원에 대한 여비 등 예산을 확보 지원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활동 관계자료 수집에 대한 예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안건이 많이 접수되어 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사무보조 공무원들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에 따른 정보예산을 '97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것.
의 사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일정 및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일정 조정 및 회의진행은 의회운영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시정요구 사항 ■

부서 별	감사 사항	시 정 요 구 사 항
의 정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집행토록 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입찰 및 견적서의 관계규정 준수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입찰서류 및 견적서 등은 관계규정에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접수,시행토록 할 것.
의 안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안문서의 접수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기중 안건의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최소한 회기결정 3일전에 접수되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배포후 심사처리하도록 하여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제출 문서의 수정 및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질문 요지서 및 각종 자료요구서 등이 결재과정에서 수정, 구청에 통보되어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제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의원이 제출하는 구정질문서는 접수인을 찍어서 처리 할 것.

3. 總務委員會

가. 監査期間 : '96.11.28 ~ 12.4 (7일간)

나. 監査對象 및 事務의 範圍

- 監査 대상 : 3실 2국 1소 6개 동사무소
 - 3 실 :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 총무국 :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재무국 :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 보건소 :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동사무소 : 충정로동, 대신동, 연희1동, 홍제1·2동, 북가좌1동

- 사무범위 : 1996년도에 처리된 행정사무

다. 監査班 編成 : 위원장 김종철 위원 (간사 : 이성배 위원)

구분 반별	감사위원명	대상부서		사무보조	비고
		국별	실·과별		
1반	반장 : 전성장 위원 : 정현철 이기봉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전문위원 : 이상현 의사계장 : 김윤태 직 원 : 박영갑 장윤희 이영순 성기주 교석민	
2반	반장 : 정일출 위원 : 이성배 오환인 허준구	총무국 (4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3반	반장 : 정연식 위원 : 정혜연 박덕균 조재구	재무국 (4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4반	반장 : 김평락 위원 : 김종섭	보건소 (3과)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라. 監査結果

■ 총괄 ■

구분 부서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우수공무원)
계	101건	10건	60건	29건	4명
3실	22	5	10	7	1
총무국	29	1	18	10	•
재무국	11	1	6	4	1
보건소	15	2	13	•	1
6개동	24	1	13	8	1

□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별	우수 및 장려사항	비고
감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자치 1년과 구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사항 적극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적극 조사·처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함으로써, 주민자치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구정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지도감사를 통한 직원의 의식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감사 및 동종합감사를 통하여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사전교정과 미흡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등으로 직원의 의식개혁을 주도하고 있음. - 순찰업무의 적극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동순찰등 2,537건을 사전 점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해소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감사자료 성실하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제출하여 구정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음. 	
시민봉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X민원의 적극적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X민원이 날로 증가하여 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여건속에서도 1일 220건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96. 9월 ~ 11월 3개월간 9,658건의 FAX민원을 발급하였으며, - 특히 담당공무원은 22개동에 FAX민원 업무처리 요령과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소임을 다하고 있음. - 서울시에 보고하는 FAX민원 발급수수료 수입금 정산처리결과 보고서는 25개구중에서 첫 번째로 접수시키는등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민방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 재난업무의 적극적 수행 	

부서별	우수 및 장려 사항	비고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된 지 수개월에 불과하지만 민방위 훈련 및 재난에 대한 위기상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사태발생시에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 관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의 배려등 상관의 격려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세무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지방세 징수실적 거양 및 적극적 근무자세 - 10만원 이상 체납자 23,105건중 압류 20,605건 공매 25건 봉급압류 19건 고발 130건 시장조사 1,447건 무재산 879건 합계 22,226건을 조사정리하여 - 96. 11월 현재 25개구중 3위의 성과를 올리어 구재원 조달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세무관리과장은 관선시대의 관행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다른 의욕을 갖고 공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음.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병 예방 건강증진사업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의학검진등 29개 항목에 대한 검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반종합병원에서 실시하고 종합검진과 신뢰도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 '97년도 계속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줄 것을 기대함. ○ 방문간호 사업 -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독거노인환자를 위하여 직접방문간호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 	
홍제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업무 적극수행 -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등 불우한 주민을 수시 방문하여 구호대상 주민을 항시 파악하고 있으며, 취로사업등 관계서류를 철저히 정리하여 구호업무(가정업무)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모범 및 우수공무원 추천 ●

□ 민원 친절봉사 부문

○ 추천자 : 시민봉사실 황명화

- 공적사항 : FAX민원의 적극, 신속처리 및 친절봉사

□ 체납시세 징수정리 및 구재원 확충

○ 추천자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 공적사항 : '96년도 체납세 징수, 정리 서울시 자치구 3위 및 적극적
공무수행

□ 동행정 우수사례

○ 추천자 : 홍제1동 권오환

- 공적사항 : 거택보호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호업무 적극수행

※ 각부문별 공적사항 : 우수 및 장려사항 참조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부서별	감사사상	시정요구사항
문화공보실	<p>□ 문화체육회관 대강당 조명시스템 설치사항</p> <p>□ '해답는 마을' 소식지 발간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조명시스템은 '93년도에 수동식으로 설치되어 다양한 행사를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현대화의 추세에 따라 자동식(컴퓨터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각종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할 것임. ■ 매달 발행하는 해답는 마을은 서대문구 세대수 122,464세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59,000부를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소식을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는 구정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므로 예산을 증액 또는 2개월에 1회 발간으로 서대문구 전세대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구청장의 홍보기사에 편중하지 말고 구정을 공정하게 홍보하는 방안과 의회의 활동을 매회기마다 편집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해답는 마을 편집위원 8명중에 구의원을 1명이상 위촉하여 주민의 요구사항등이 소식지에 게재되도록 해야 할 것임.
감사실	<p>□ 감사업무의 전문성 향상 문제</p> <p>□ 복합민원 처리의 부서간 협조체계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목, 건축, 세무분야에 대한 자체감사는 일반행정직이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전문성으로 보아 한계가 있으므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실 정원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행정규제및 민원사무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진정민원의 경우 주무부서를 지정, 각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일괄처리해야하므로 차후로는 관계규정대로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을 적극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시민봉사실	<p>□ 음성정보자동안내 시스템 및 P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정보자동안내 및 PC 통신의 운영은 민원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4개 지역신문 및 해답는 마을에 홍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시민봉사실	통신운영 사항 □구정 종합정보센타 운영 사항	보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구정종합정보센타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안락한 시설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실내에서는 금연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흡연장소를 별도 지정운영해야 할 것임.
총 무 과	□의정활동업무 추진예산의 집행사항 □동직원 회의 참석 사항 □공무원 전보제한 준수(인사원칙) 여부 □의회협력업무	■'96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4천만원을 편성하여 '96. 10월 현재 의회와의 업무수행경비등으로 2,805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일부가 일부 소수의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경비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자치구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다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최일선의 과다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고 각, 실과별 동직원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인력 및 시간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21세기는 시간이 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동담당 회의소집을 통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내에는 전보를 제한하여야함에도 '96년12월현재 43명이 전보조치되어 업무의 지속적 추진과 전문성 확보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차후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1년이내 전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의회협력계는 각부서로부터 제출되는 조례안이나 진정 처리 및 서면질문 답변서를 이송하는 주관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서이므로 의회와 구청간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인식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심사분석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은 구정시책의 중요한 결정적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구정지표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여 공직의 깨끗한 윤리를 확보하여 심사분석시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요구사항
기획예산과	<p>□ 예산의 편성문제</p> <p>□ 컴퓨터 전문인력 확보</p>	<p>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 우선 순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깨끗한 구정실현 2) 주민생활수준향상 3)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4) 도시기능 현대화 5) 문화도시로의 발전 <p>■ 예산의 편성은 노출이 어렵도록 편성하지 말고 각 부서별로 알아보기 쉽도록 예산과목별 사업성질별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프로그래머)을 확보하여 행정의 능률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임.</p>
사회진흥과	<p>□ 체육시설의 정비 및 운영사항</p> <p>□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추진 사항</p> <p>□ 거리교통 중계표지판 관리 사항</p>	<p>■ 낡은 체육시설은 수시로 정비 또는 교체하여 운동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한 타구민보다는 서대문구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구청장기 수영대회는 참여인원에 비하여 예산이 과중하게 책정되었으므로 편성된 예산은 신축성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임.</p> <p>■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새마을 소득지원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새마을 지도자가 방역소득 참여시에는 목욕비를 지급하는 것이 방역활동 활성화에 유익할 것임.</p> <p>■ 거리교통 중계표지판 117개가 거리에 방치되어 있고 북아현1동 23개소의 각 동에서도 관리가 극히 부실하여 시설물 자체 존·폐여부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내재산같이 연간 관리</p>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사회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수터 관리사항 □동네 뒷산 체육시설 관리 □새마을 지원단체 감독 및 사회지원금 정산 부실 	<p>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해야 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내 약수터 32개소중 홍은2동 욱모정 약수터 관리가 부실함에도 다수 주민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정기수질검사 등 약수오염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생활체육시설 46개소 1,030개 시설물에 대하여 '90년 이후 형식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시설물 이용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96년도에 지원한 8,430만 8천원의 많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리책임공무원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관리계획에 의하여 철저히 정비하도록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새마을 지원단체의 감독이 부실하고 지회에 지원된 예산의 정리가 극히 형식적이므로 지원된 예산은 재무회계규칙등에 의하여 철저히 집행·정산하도록 수시로 감독하여야 할 것임.
민방위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대장 위촉사항 □방공호 관리실태 □민방위장비 (방독면, 메가폰) 보관·활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방위대장 총581명중 60세이상인 72명, 70세이상은 3명으로 민방위대원의 통솔 지휘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규정에 따라 세대교체가 되어야 할 것임. ■홍은3동 421-1 부지에 설치된 방공호는 그 규모가 5.4평으로 내부는 양호한 편이나 외부에 설치된 첩스가 부식·파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고 현대 전시상황하의 전술상 존속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쇄 조치방안을 강구하거나 도색등 철저히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방독면등 민방위 장비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한 동별인구 분포에 의해서 공평하게 배부하도록 하고 유사시에 주민의 대피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화생방교육시 방독면 사용 방법을 수시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민방위 재난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손된 메가폰에 대하여는 일제점검후 보수 또는 불용 처분토록 할 것임.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등록대장 정리상태 □ 공문서 편철 상태 □ 계약의 체결방법 (계약심의 위원회 의 사전승인절차 여부) □ 일반공개경쟁입찰의 지양과 수의 계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등록대장의 문서와 확인란에 공란이 많이 있고 인계 인수사항이 불명확하고 문서접수대장의 인수자서명이 없어 문서추적이 곤란하므로 관련문서의 추적이 항시 가능하도록 대장정리에 철저를 기할 것. ■ 공문서의 편철은 업무수행의 1단계적 사무인데도 색인 목록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직원 860명에 대한 재형저축 및 지출명세서철의 문서편철 상태가 불량한 바, 관련문서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편철 보관해야 할 것임. ■ 공사의 계약 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저하게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9. 5. 준공된 냉천동 101-1 위험절개지 응급복구공사(공사비 ₩55,911,900)과 - '96.3.21. 계약 '96.12.31까지 준공연기한 경기대~독립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의사전 승인 사항을 보완조치(사후승인)하여 계약체결에 한치의 흠이라도 없도록 조치할 것. ■ 계약의 체결은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선의적으로 적용하여 가능한 한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94-16%, '95-42%, '96-45%로 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관계규정을 수의계약으로 확대해석하고 비민주적 행정과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찰에 대한 신성함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임.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부 과 과	□세무부과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등 이중으로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100만원 이상 109건 16억 9,467만 4천원과 '96년도중 부과된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 철저하게 재확인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구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지 적 과	□지가조사의 현장 조사 실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평가의 조사는 주민의 각종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자료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사인력을 충분히 보강배치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현장 조사가 확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구청토지평가조사위원회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것을 검토 협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불량지역 방역소독사항 □무료순환버스운행 □의료기기 성능사항 □X-RAY 검사실 적 관리사항 □저소득 거동 불편 환자 방문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소독은 주택개량 재개발 및 재건축지구등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무료순환버스운행은 한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서대문구 관내를 고루 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기록하도록 할 것임. ■ 성능이 떨어지는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오진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기기의 노후여부를 정밀하게 진단하도록 하고 낡은 의료기기는 교체토록 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화학 분석기 ├ 혈액 분석기 └ 필름자동현상기 ■ X레이 검사현황이 의약과와 보건지도과에서 각각 관리함으로써 통계의 착오등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한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저소득 거동 불편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은 뇌졸중, 고혈압등 중풍환자에 대해서 매월 또는 매주 주기적으로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보 건 소	<p>업</p> <p>□ 순회진료사업</p> <p>□ 초·중·고교 성 교육</p> <p>□ 보건소 환경정비</p> <p>□ 의약지도사항</p> <p>□ 차량운행일지</p> <p>□ 에이즈 홍보활동</p> <p>□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기록부 관리상태</p>	<p>방문 간호하며 실질적인 구민건강을 증진토록 해야 할 것임.</p> <p>■ 순회진료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 및 취로사업장등에 집중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진료결과에 의해서 중증환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진료를 해야 할 것임.</p> <p>■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학교 당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에 의하여 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p> <p>■ 보건소는 의료기관답게 방문객 및 진료시민이 위생적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실내의 청소등 주변환경을 청결히 해야 할 것임.</p> <p>■ 병·의원 391개소, 약국 240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부족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연2회이상 실질적 감독과 의·약단체의 자율감독에 의하여 의·약업소를 찾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p> <p>■ 방문진료시 운행구간의 방문지역 및 주행거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일지서식을 변경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에이즈에 관한 홍보교육은 연간 12회 매월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7회 실시하였으므로 '97년도에는 연 1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구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p> <p>■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어 있으나 노후된 차드장(78. 5월 구입)에 성의없이 보관하는등 관리상태가 부실하므로 차드장 정비 또는 교체로 기록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p>

부서별	감사사상	시정요구사항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병검사 추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병검사 목표는 '95년도보다 57%증가한 7,168명으로 하여 놓고 검사실적은 예년수준인 5,212명, 73%에 그치고 있으므로 목표를 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성병검사의 추진은 월별추진계획에 의하여 목표대 실적을 비교하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임.
충정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종량봉투 판매사항 □취로노임 지급사항 □주택가 골목길 소방차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봉투판매현황을 월별, 분기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종합적으로 정확히 작성비치 할 것. ■취로노임의 지급은 취로인부가 취로에 동원되어 일을 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로사업복명서등을 비치, 철저히 확인토록 할 것. ■화재발생 우려등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이면도로상의 야간주차단속을 철저히 하여 소방차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대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사업 □문서수발대장 관리 및 서류편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사업은 동절기전에 완료하여 부설시공을 예방토록해야 함에도 16건중 9개소를 12월에 시공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할 것임. ■문서수발대장의 공문수령인을 반도록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색인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는 페이지와 색인목록이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편철하여 누구나 관련문서를 찾아볼수 있도록 할 것.
연회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폐기물 집하장 관리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제천변에 설치한 대형폐기물 집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상태가 지극히 불량하므로 환경미화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폐기물 집하장을 긴급보수하여 홍제천 정비사업에 기여토록 할 것.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89~'90년도부만 정리하여 주차수용의 확인등 주차장을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

부 서 별	감 사 사 상	시 정 요 구 사 항
연 회 1 동		하는 사례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을 철저히 정리하여 주차난해소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홍 제 1 동	□ 소규모 추진 사업 □ 문서관리 실태	■ 소규모추진사업은 시행계획에서부터 예산집행시까지 사업현장을 중심으로 철저히 조사, 집행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며 관계서류를 순서에 의하여 편철 보관토록 해야 할 것임. ■ 문서의 편철, 보관은 색인목록작성 및 결표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깨끗히 편철 보관토록 해야 할 것이며 문서수발시 인계인수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임.
(각동공통)	□ 도시가스배관망 비치	■ 도시가스배관망이 없는 경우 유사시 사고 수습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가스 배관망을 비치하여 안전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북가좌1동	□ 한가족 결연 사업 추진 □ 노인교통수당 지급 사항 □ 재물조사 및 물품 관리 상태	■ 한가족결연사업 추진실적이 13가구 157만원에 불과하므로 전직원이 혼연일치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할 것임. ■ 노인교통수당을 과다 책정하여 '96. 12월 현재 3,727명에 대하여 4,925만 3,440원 집행되어 잔액이 475만 400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행정을 하도록 노인교통수당대상자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 ■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용처분하지 않는등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불용물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각동공통)	□ 월동대책	■ 월동기 제설 및 빙판제거등 재해대책에는 기동성있는 인력 및 장비가 요구되므로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해야 할 것임.

부서별	감사사상	시정요구사항
(각동공통)	□증개축 건축물 허가 (신고)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개축허가(신고) 및 준공시에는 증·개축 전·후 사진을 반드시 비치하여 관련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임.
문화공보실	□예산집행시 관계 규정 준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예산의 집행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고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간이영수증등 형식적인 영수증으로 예산을 집행, 정산하는 것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시민봉사실	□지하종합 서고 관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지하종합서고에 보관중인 문서가 습기로 인한 부식 또는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종합서고를 정확하게 안전진단후 즉시 보수 또는 정비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관되어야 할 것임.
총무과	□인쇄비 예산의 범위 준수 및 합목적 집행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11.15. 현재 2,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인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비민주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의 절감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한 여러 인쇄업소의 견적서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하도록 하고 ■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제출토록 해야 할 것임.

□ 건의사항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문화공보실	<p>○문화체육회관 공과금 납부 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회관 공과금을 각 시설별로 현금을 분담 징수하여 통합 납부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것은 현금의 관리 문제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시설별로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p>○주차관리직원 친절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회관 주차시설이 73대분이 확보되어 있으나 주차수요문제로 인하여 이용시민과의 마찰등 불친절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월3회 이상 직원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봉사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p>○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예산의 낭비등 불용처분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의회가 편성·승인하여준 예산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사업계획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예산편성요구시부터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을 과다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절약으로 인한 불용처분예산은 관계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반납조치해야 할 것임. <p>○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 방법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96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등에 연600만원씩 3,000만원의 정액보조와 2억8천3백만원을 임의보조하는 것은 서대문구 재정여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내무부 또는 서울시에 건의하여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를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하거나 예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문화공보실	산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할 것임.	
시민봉사실	<p>○호적관리 전산시스템 설치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적관리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제고와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p>○지역의료보험창구 설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실내에 의료보험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임. 	
총무과 (각실·과 공통)	<p>○감사자료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통계자료 일괄성 유지 요망 - 고의적인 누락이나 유사자료 제출 금지 <p>○행정행위의 허와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적, 선심성 행사위주 행정 지양 - 기관장과 하위직간 중간관리자의 허리역할 충실 요망 - 일선 동사무소와의 연계행정 요망 - 눈치행정의 탈피 	
재무과	<p>○예산의 흐름과 통제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와 집행자간 감독체계 유지 요망 - 의회승인 대상 사업의 철저 이행(재산의 매각 및 취득) - 관행화된 졸속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 행정 요망 <p>○재물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물조사시 물품대장과 차이나는 원인규명 및 관리책임자 지정요망 	

부 서 별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등 인수인계 철저 이행 - 보험료 운영에 대한 지침확립 요망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친절히받기운동 계속 추진 - 친절봉사운동중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화 친절히 받기가 근간에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임. ○해외연수자 사례발표회 개최 - 직원해외 연수자에 대한 사례발표회를 구의원까지 참여토록하여 선진문화창달과 우수보고자에 대한 시상으로 직원의 사기 앙양 대책 강구바람 ○연가의 적극적 실시 - 연가를 가지 않는 직원이 많으므로 연가 미시행에 대한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본래의 취지대로 연가를 못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총 무 과 (각 실·과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전행사의 적극적 추진 - 구청과 동에서 주관하는 의전행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지역 단체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조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재산 취득, 매각시 관계법규 준수 - 지방재정법 및 구조례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충청로동 및 북아현2동 청사부지 취득의 건과 같이 관계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재무과	<p>○회계증빙자료보완</p> <p>-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완해야 할 것이며 모든 예산은 사용근거에 합당한 관계서류를 보완하기 바람(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p>	
총무과	<p>○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인사제도 확립</p> <p>-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므로 미래 지향적이고 본인이 예측 가능한 발전적인 인사제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각부서간 공조체제의 확립</p> <p>- 원두막 설치시 공원녹지과와 동사무소, 도로개설시 토목과 등 관련부서간 동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해당부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원활한 공조체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임.</p>	
기획예산과	<p>○기획 및 예산 전공분야 이수자 배치</p> <p>- 기획예산 분야는 구정시책의 결정 및 지표의 설정등 구정 업무전반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부서이므로 경력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을 배치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도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인사고가 반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p>	
총정로동	<p>○민방위장비 관리 실태</p> <p>-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정문에 장비현황을 부착하여 장비현황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p> <p>○주민요구사항</p> <p>- 서대문 로타리 주변발전 및 경의선 철로 복개요망 - 전매창 창고 이전요망</p>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총정로동	<p>○신규직원 동사무소 전보지양</p> <p>- 신규임용 직원은 구청에서 소정의 경력을 이수한 후 동사무소에 전보요망</p> <p>○취로인부 안전사고 대책</p> <p>- 취로사업동원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등 대책요망</p> <p>○총정로동장 지속근무 요망</p> <p>- 현 동장이 신청사 건립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므로 다수주민이 현동장이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고 있음.</p>	
홍제2동	<p>○대폭인사(전보)지양</p> <p>- 동직원을 대폭 전보하는 경우, 동행정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고충상담 직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인사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p> <p>○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제도 확립 요망</p> <p>○재물조사시 동직원 조사반 편성 제고 요망</p>	
총무과	<p>○구청사내 유관단체 대여 사무실 효율적 운영</p> <p>- 구청사 규모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사무실은 실·과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유하여 운영규모 및 근무직원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p> <p>- 비교적 협소하게 구분되어 있는 각 실·과 및 구청사 여건을 고려하여 유관단체 사무실 대여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여 구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임.</p>	

4. 市民建設 委員

가. 監査期間 : 96.11.28 ~ 12.4 (7일간)

나. 監査對象 및 事務의 範圍

- 監査 대상 : 3개국 산하 16개과
 - 시민국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 도시정비국 : 주택과, 주택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건설국 :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 사무범위 : 1996년도에 처리된 행정사무

다. 監査班 編成 : 위원장 김영일 위원 (간사 : 기창표 위원)

구분 반별	監査 위원 명	대 상 부 서		사 무 보 조	비 고
		국 별	실 · 과 별		
1반	반장 : 조갑현 위원 : 기창표 김동덕 이진수 권재일	시민국 (6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전문위원 : 한중현 의안계장 : 이유연 직 원 : 박천기 조화동 장혜경 신성운 고석민	
2반	반장 : 임재선 위원 : 김정현 최광진 박노현	도시 정비국 (6과)	주택과 주택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3반	반장 : 정일수 위원 : 이석문 강석준 홍성덕	건설국 (4과)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라. 監査結果

■ 총괄 ■

구분 부서별	계	우수사항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비고 (우수공무원)
계	53건	2건	38건	11건	2건
시민국	22	2	13	5	2
도시정비국	21	·	19	2	·
건설국	10	·	6	4	·

□ 우수 및 장려사항

부서별	우수 및 장려사항	비고
사회복지과	<p>○서울 가정도우미 활동 격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도 처음 시행되고 있는 서울가정도우미 26명이 관내 어려운 노인 150명을 직접 방문 간병, 세탁, 청소년 노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과 희생으로 저소득층 노인들로부터 칭찬과 호응도가 높음 - 실질적으로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도움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은 증대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확대시행되어야 할 것임. * 서울가정도우미 우수자 표창 추천 - 자기희생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의 사기진작과 선행을 격려코자 표창 추천함. <p>(추천대상자 : 4명) 1지구 : 이동임 (610315-2254229) 2지구 : 김정임 (610208-2446918) 3지구 : 조연옥 (460604-2063224) 4지구 : 박림남 (500116-2002323)</p> <p>○장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중 장기 환자를 구분하여 요양 및 입원시켜주는 사례 -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소외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모든 공무원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임. 	
가정복지과	<p>○저소득층 김장담귀주기 봉사 활동 격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96.11.21 ~ 11.22(2일간) 	

부 서 별	우 수 및 장 려 사 항	비 고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소 : 서대문문화회관 - 봉사내용 : 김치담궤주기 배추 2,500포기 - 배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소녀가장 21세대 □ 거택보호노인세대 220세대 - 봉사단체 : 서대문구 새마을부녀회 110명 참여 <p>○비누제조기 저공해비누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에서 배출된 폐식용유를 새마을부녀회를 통해 수거하여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를 제작 배포하는 부녀회 활동은 좋은 계획이며 장려되어야 할 사항임. -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장려 요망. - 비누 제조기 1대 2,365,550원 	

□ 건의 및 기타사항

부서별	건의 및 기타사항	비고
사회복지과	<p>○시범노인정 선정 중점육성 및 확대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정의 이용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전놀이문화개발과 노인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우수한 노인정을 중점 발전시켜 타노인정에 전파시키고 노인정 생활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p>○노인정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비품중 기본비품(예:라디오, CATV, 조리기구, 가구, 냉난방기구등)에 대해 정수를 책정보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p>	
가정복지과	<p>○폐식용유 자원재활용 무공해비누 생산</p> <p>○'96년 3월이전에는 공부방이 전무한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실로 전환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련단련실로 전환 - 문화체육공간으로 전환 - 청소년 지도자 배치 - 청소년 업무 전담화 - 청소년의 수련실이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입시철만 잠깐 이용하는 공간이 안되도록 활성화시킬 것을 요함. 	
산 업 과	<p>○미국시카고에 설치된 상설전시 판매장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궁금함. 또한 현장을 확인해 보지도 않아 문제가 많음.</p> <p>'96.11.6 ~ '96.11.14동안 방문계획을 세웠으나 구의회 임시회 일정 및 감사원 감사로 연기되었음.</p> <p>조속한 시일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구 상품의 판촉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p>	
청 소 과	<p>○청소행정 수입과 지출 분기점상의 목표 설정 요망</p>	

부 서 별	건 의 및 기 타 사 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구에서 종량제 실시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앞으로 전지역 종량제 실시하기 바람 - 앞으로 대행업체(서부환경, 서울환경)이외에는 다량 폐기물 배출업체들의 자율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주기 바람. - 우리구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의 적체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바 환경미화원은 20%, 자동차는 25% 감축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화원 20% : 74명 감축가능 (미화원 1인당 연간예산 평균 24,000,000원×76명 인건비 : 1,776,000원 과다지출) • 차량보유 82대, 청소차량 적정대수는 62대임 (청소차량 동별 2대×22=44대, 재활용사업자 소요 20여대의 청소차량 감축가능) <p>청소차량 1대 보유 : 운전원 급여평균 2,400만원, 연료비 보험등 380만원, 연 2,780만원, 20대 총 556,000,000원</p> <p>서대문구 청소예산중 과감히 차량과 인원 감축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강력히 건의함.</p>	
주 택 과	<p>○청구 3차 아파트 공사장 주변 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일정단위 이상의 대형공사허가등에 있어서는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토목과, 하수과등 관련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 후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됨. <p>청구3차건도 주택과, 토목과, 환경과등 관련 과들의 협조가 사전에 있었으면 주민피해가 훨씬 적었을 것임.</p>	
도시정비과	<p>○안산순환도로 개설계획에 따른 문제점 시정건의</p>	

부서별	건의 및 기타 사항	비고
도시정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순환도로의 도시계획은 연희로와 연세대학교 북문을 통과해서 순환도로까지 연결되어야 할 것이며, - 안산순환도로 도시계획선상 봉원사 진입로와 금화터널구간이 곡선으로 계획된 것을 가급적 직선으로 바로잡아 줄 것을 건의함. 	
토목과	<p>○토목과 자재창고 이전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화터널 고가도로 지하에 위치한 토목과 자재창고는 고가도로 보수공사등을 위해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서울건설안전본부로 부터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라도 낡고 협소한 장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음. <p>○'96년도 시공된 과속방지턱 32개소에 대하여 현장 답사한 바 높이 10cm 넓이 3.7m의 규격에는 적합하게 설계되었으나 색채가 부실하여 야간 차량통행시 사고 위험이 우려됨. 재도색등이 요구됨.</p>	
하수과	<p>○준설 및 토사량 확인사항을 해당동의 동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할 것을 건의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 되어있는 하수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면도로상에 설치 되어있는 빗물받이에 대한 준설을 동사무소에서 취로인부 및 환경미화원을 활용 준설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인 바 하수도 준설시 준설을 위하여 동사무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기시 빗물로 인하여 배수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기 바람. 	

□ 시정 및 요구사항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대문구 전반	감사준비에 대한 사항	<p>○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의 불성실 불투명은 공무원의 정신상태가 해이해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각자의 자세를 변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합되는 공무원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강확립을 강력히 촉구함.</p> <p>○ 감사자료 작성시 오·탈자, 불확실한 숫자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문서로써 가치를 높이고 의회감사에 있어서 의원까지를 경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 요망</p> <p>○ 경로당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경로당내에서 노인분들의 건전놀이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받았음.</p>
사회복지과	<p>○ 지시사항 이행 상태</p> <p>○ 불용액 부분</p> <p>○ 여성단체 예산집행 내역</p>	<p>○ 경로당 현장확인</p> <p>경로당 4곳 방문결과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영화상영등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일부 노인정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사료됨.</p> <p>○ 서류철 색인표 작성 전무</p> <p>- 공무원 서류철 편철규정을 철저히 적용시켜 서류 유출 까지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리요망</p> <p>○ 불용액 처리가 35건에 약13억원</p> <p>- 확인결과 자료철에 제시한 약13억원은 미집행 부분이었음. 실무자의 보다 철저한 공문서 작성 요망</p> <p>○ 1개 여성단체(여성단체연합회)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 발행(임의로 도장을 새김)</p>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p>사회복지과</p>	<p>○가정복지과장과 유아원 원장과 금전거래</p> <p>○감사기간중 가정복지과장 출근시간 지연</p> <p>○시민알뜰시장 추진 사항</p>	<p>※비리척결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함.</p> <p>○감독부서장과의 금전거래 행위는 상하관계를 떠나 상식 이하 행태로 간주됨 (공과사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이 요구됨)</p> <p>○정상출근시간 : 09:00 (1시간 15분 지연 : 10:15분 출근)</p> <p>○상부기관 지시사항</p> <p>내 용 : 결혼예식 풍토 개선 결 과 : 여성단체연합회 회의주제로 끝맺음 했음. 시정사항 : 관내 예식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상업소와의 협조 및 확인감독 계획 수립후 이행바람</p> <p>○시민알뜰시장 운영은 예산상 4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2회만 운영한 것은 예산수립시의 상황을 잊어버린 무계획한 행정임. 보다 철저한 계획만 적극적 추진이 요구됨.</p>
<p>건축과</p>	<p>○홍제3동 우리어린이집(우드룸 및 벽지)</p>	<p>○당초 시방서에는 인건비포함 4,278,900원임. (평당 55,000원이었음) 도배 : 비닐벽지 1,478,000원 일반벽지 4,970,900원 합 계 6,448,000원 추가 공사포함하여 총 6,448,900원 지출됨 - 그러나 실제로는 크리스탈 초이스] 중에서 시공했음 여기서 시방서에서보다 (4,278,900원) 차액이 1,638,900원 생기며(저급지로 시공) (33,000 × 80 = 2,640,000)</p>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p>건축과</p>	<p>○공부방 인건비, 운영비에 문제점 - 예산인건비 213,115,920원 - 합:2억6천만원 소요</p>	<p>- 실제 시방서상의 우드룸을 시장조사한 결과 평당 40,000~45,000원으로 처음부터 견적서상 평당 1만~1만5천원의 차액이 발생, 당초부터 시장가격보다 80평에 120만원이 높은 견적을 받은 것임.</p> <p>- 시공한 청심지물포(TEL 395-4124)에 확인 결과 총 시공비 수령은 4,700,000원 뿐임 상기 사항으로 미루어 우드룸으로 재시공 요망 구청에서 조치후 그 결과 의회에서 보고요망</p> <p>○예산은 약2억6천이 들어간데 비해</p> <p>- 청소년의 이용율이 극히 적으며, 소득수준 향상으로 청소년 각자 집에 자기방이 있음</p> <p>- 관리소홀등으로 청소년끼리 어울리는 탈선장소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음</p> <p>○개선책으로</p> <p>- 이용율이 낮다고 해서 청소년 공간을 줄일 수는 없지만, - 담당공무원이나 공부방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유용한 시설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예산 소요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개선노력이 요구됨.</p>
<p>산업과</p>	<p>○중소기업 업무추진비</p> <p>○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p>	<p>○공장대표자 간담회의비로 4,020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미집행 되었으므로 연내에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할 것.</p> <p>- 현재까지 미집행상태임</p> <p>○예산편성 내역은 250,000천원으로 지금까지 후보지 11곳을 선정하여 농협중앙회에 협의하였으나 장소 부적합</p>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항
산 업 과	○해제농협 직판사업 철수에 관한 사항	<p>및 일정 판매량이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미개설 되었으므로 조속히 장소를 선정하여 본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임.</p> <p>○서대문구와 전남 무안 해제농협과 '95.11.10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임시장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좋은 동 428번지는 사유지로 장기적인 장터개설이 불가하여 '96. 9. 5일부터 해제농협 직판사업 마무리 통보를 받고 서도 위촉자인 문한순이 철거에 응하지 않으므로 현재까지 컨테이너 박스 및 여러가지 물건을 철거치 못함. 산업과 자체 인력으로 철거에 한계가 있으므로 각 기능 부서와 협조하여 철수시켜야 할 것임.</p>
위 생 과	○특수관리 대상업소 관리	<p>○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등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카드 작성, 전산입력 및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하여야 함에도 '96년도에는 특별관리대상업소 변동상황 및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임.</p> <p>이에 대하여 즉시 특별관리대상업소 현황 및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그 변동상황을 월별로 관리토록하여 집중적인 지도·단속으로 위생업소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바람.</p>
청 소 과	○청소인력 및 다량 배출업소 실태 조사	<p>○서대문구 예산 15%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업무계획에 철저를 촉구하며 적체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을 탄력성 있게 수시로 적재 적소에 배치 요망</p> <p>또한 가로 환경미화원 작업구간이 재조정되어 1인 1km로 조정, 남은 인력을 재활용장으로 배치토록 하여 환경미화원 수를 절대 감축하는데 노력하기 바람.</p> <p>○다량 쓰레기 배출업소 배출량과 수수료 부과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사실과 같이 부과 징수하기 바람.</p>
주 택 과	○무허가건물 철거 확인	○무허가 건물은 발생초기부터 철저히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내 순찰등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적도록 할 것.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주 택 과	<p>○재산관리 부실실태 조사</p> <p>○청구3차아파트 공사장 주변 민원</p> <p>○무허가 건물의 신발생 근절대책 촉구</p>	<p>○또한 건축법상 허가·신고처리가 가능하면 선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건축행정이 요구됨.</p> <p>○홍제2동 시민아파트내 부속건물 1동이 구청에 기부체납되어 있으나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현재까지 무단방치되어 있음. 앞으로 원인 규명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망(약29평)</p> <p>○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세부이행조건 제23항에 의거 무진동·무소음 공법으로 시공토록 조건부여되어 있으므로, 추후 공사시 소음·진동 발생을 극소화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p> <p>○1996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 244건에 대하여 강제철거 조치 211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33건으로 조치 완료되었으나, 앞으로 재발생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특별 지도단속으로 신발생이 없도록 조치할 것.</p>
주택개발과	<p>○대현럭키아파트처리 방안 (지적사항) 동호수추첨 144가구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내용과 상이하게 '93. 6.18.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불법 입주</p> <p>상위평형배정:38 공유지분소유자 각각배정 :12 1조합원에게 2가 배정 :2 미증재무허가</p>	<p>○구청 불법 입주자 처리방안 : 아래 3가지 안중 하나를 선정하여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바람</p> <p>①안 : 불법추첨 입주자(144가구)를 조합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후 조합원으로 양성화 계획</p> <p>②안 : 공유지분 소유, 소규모 연고로 입주한 자, 선별 규제 완전무자격자 및 무연고 입주자를 별도 사법 처리</p> <p>③안 : 불법입주자 전원을 고발등 사법처리에 의한 강제조치후 일반분양처분 한다고 하였으나 조합장 최청곡에 대한 문제는 엄청난 것으로 봄. 단, 문제는 크다고 봅니다.</p>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항
주택개발과	건물소유자 배정 :2 └분양자 제외·배정 :80	
교통행정과 재 무 과	○서대문구청은행 예탁금에 대한 사후 조치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적립금:64억원 └이 자:3억원 ○노선적정여부 (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도로안내표지판 부적정	○정기예금된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약400억원 정도가 상업은행에 독점예치된 상태임. <시정요구> - '96년도 구금고 계약채결전에 구청장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현행 5%~9%정도의 낮은 금리에서 추가로 2%이상 상향조정하여 체결하되, 만약 상업은행에서 이 조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시중은행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구금고로 계약하여 우리구 재정확충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9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64억원에 대하여 주관부서조차도 분명한 책임의식 없이 회피까지 하는 행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관리등에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임. <시정요구> - 자금관리 운용에 있어 효율적인 기금관리등을 위해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기업경영방식"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됨. ○가좌지역 통과 마을버스는 (남가좌1동, 2동, 연희1동~거북골길)이용주민 대다수가 서민층임. 불편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함. ○시정사항 - 수색로 2방향 지시표시 및 예고표지 시정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림간호병원 및 교차로 2방향 예고표시 시정 - 홍제초등학교 방향교차로 2방향 예고표지 시정 <p>※'95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서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정요함.</p>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속방지턱의 문제점 ○연세대학교 북문~연세대동문간 단지내 도로사용료(통행료)징수에 대한 시정 대책 (통행료:30 회 1,500원) ○공영주차장 건립 위치:연희동 105-8 규모:1636.4㎡ 예산:1,888백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속방지턱의 미 도색, 퇴색등으로 특히 야간에는 식별이 곤란하여 야간주행시 위험 - 공동주택 건설시,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규격에 맞지도 않게 임의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 상기 사항등을 중점적으로 일제 재정비하여 안전운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요구됨. ○연세대학교 북문~동문간 도로통행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일명:통행료)을 1,500원씩 징수함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주차장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승인규정에 맞지 않으며, 주차하지도 않은 차량들에 대하여 단지 통행하였다고 하여 통행료를 부과함도 위법하다고 사료됨. <p><시정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물 사용료를 주차장 시설이용료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하기 바람. ○연희동 주차장 매입부지는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나 타지역에 비해 효율성이 뒤떨어지는 지역으로 우선순위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외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p>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6호에 의한 의회의결의건)</p> <p>○주차단속의 문제점</p>	<p>면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의 2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또한 법이전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시행한 상기 사항은 분명 시정되어야 할 사안임.</p> <p>- 또한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검토가 요구되나 각 관계부서간의 책임 전가로 심의조차 되지 않았음은 효율적인 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단면이라 할 것임.</p> <p>○우리관내 소재하고 있는 버스종점에 불법주차와 야간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변 교통소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음. 특히 교량위에 불법주차가 많으며, 동절기 언덕길 주차가 많아 설해시 사고발생이 예상됨.</p> <p><시정요구사항></p> <p>- 일시적 주차단속이 아닌 지속적 주차단속에 많은 지도가 요구됨.</p> <p>- 주택가중 불법주차 취약지역에 주차시설확충대책이 요구됨.</p>
<p>건축과</p>	<p>○'96년도 신축건물 사후관리 부적정</p>	<p>○신축건물 준공후 옥상(옥탑)에 무단용도 변경 및 무단증축건물 발생이 많아 관계공무원들의 순찰 및 예방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됨.</p> <p>○연희3동 344-106, 107호 양지상 건물의 일조권 및 이격거리 미확보된 위법건물 준공 사례 - 시공감리건축사 위법사항 조치요.</p> <p>○관내 옥내 창고지 무단용도변경 정비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무단용도변경 시정중인 곳 1개소, 미시정된 곳 2개소로 옥내 주차장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p>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건축과		<p>〈시정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주차시설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전담반시설 요함. - 옥내차고지는 주차관리 부서인 교통지도과로 이관 하는 것이 필요.
건축과 문화공보실	<p>○'96년 6월 5일 측량한 현황도에 의하여 구민회관 지하옹벽(상단화단 조성)일부 (약 1.2M)가 계획도를 침범하여 시공되었음.</p>	<p>〈시정요구〉</p> <p>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 통보하여 발주회사로 하여금 변상 조치토록 할 것이며, 도로확보에 따른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바 빠른 시간내에 도로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처리요망</p>
건설관리과	<p>○민사소송 패소 3건</p> <p>①계쟁지: 홍제3동 266-273 대지 127㎡(현황도로) - 원고:이하우 패소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4,217원을 지급 및 소유권 상실하는 날까지 매월 금 449,262원의 금액을 지급하라 (판결문)</p> <p>②계쟁지: 홍은동 326-1 대지 41㎡(현황도로)</p>	<p>① 소송사건은 '91. 10. 8. 대법원 제2부선고(상고기각)패소하여 금14,508,273천원('87. 1. 1~'91. 3.15)을 지급한 바 있고, '96. 2. 2 패소하여 점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23,204,217원('91. 3.16~'95. 5.31) 및 매월 449,26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을 바람.</p> <p>② 소송사건은 92.10.14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에서 항소기각 패소사항으로 부당이득금 2,487,000원('88.5.1~'91.12.16)을 지급한 바 있고 '96. 6.25. 패소 금3,974,999원('92. 1. 1~'96. 5.31)지급하고 월</p>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건설관리과	- 원고:이장호외 3인 - 패소주문:피고는 원고에게 금3,974,999원을 지급하라	부당이득금 7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함.
	③계쟁지:북가좌동 83-15 대지 136㎡(현황도로) 대지주:박왕성 - 원고:가국현 - 패소주문:피고는 원고 가국현에게 부당이득금16,365,574원을 지급하라 (판결문)	③ 소송사건은 '94. 3.22. 대법원선고 패소하여 ('86. 6. 5.~'88. 4.30)금3,600원(시에서 지급)부당이득금 15,581,962원('88. 5. 1~'92 9.30)지급한 바 있고 원고의 채권자가 가국현이 소송하여 '96. 1.30. 패소금 16,265,574원('92.10.1~'95.12.31)을 지급하고 있는 바 근본적인 해결하고 앞으로 소송에 패소하여 예산 낭비를 하지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토목과	○토목공사 - 현대교통~백련교간 도로개설공사 (B=25m, L=440m)	○현대교통~백련교간 도로개설공사를 '96. 4.10 착공하면서, - 최소한 일반감리라고 지정하였어야 하나, 예산부족등의 이유를 들어 감리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결과임. - 또한 공사시행전에 관련 유관공사들 (상수도, 한국통신관로 공사등)을 사전계획 검토하여 함께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뒤늦게 관련공사등을 위해 도로등을 파헤쳐 엄청난 주민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킨 점은 역시 직무태만이라 할 것임. * 상기 공사들에 대하여 시공사에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여 조속히 민원해결하기 바람.

부서별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항
토목과	<p>○예산사업 이행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동초등, 금화초등학교 육교설치 공사 	<p>○준공일이 4개월 넘도록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억9천여만원이 넘는 공사를 시행하며, 사전계획단계에서 부터 문제 야기시킴. (공사계약조건의 철저한 이행촉구, 지체보상금:6억에 대한1/1000반환 하루 60만원) <p>○신중치 못한 공사 착공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불편불만 고조 (육교하나 만드는데 무려 8개월이 넘는다) - 혼잡지역에 공사자재 방치, 주민통행에 불편 초래(8개월이 넘도록) - 구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는 불신감을 야기시킨 대표적인 사례임.
하수과	<p>○'96 하수도 준설 현황조사</p>	<p>○'96년도 하수관 도급 준설시 흡입차량의 준설물량(물과 흙포함)계산에 철저를 기할 것.</p>
공원녹지과	<p>○도시환경림 조성 사업현장 확인</p>	<p>○'96년도 춘기에 식재한 연희1동 산66-15호 외 1필지에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으로 산벚나무의 5종 9,200주를 식재하였으나, 본의원이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벚나무 147주, 때죽나무 43주, 갈금나무 39주, 소나무등이 활착상태가 불량한 상태임.</p> <p>〈조치사항〉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조치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업자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 호 : 대한조경 •대 표 : 김 형 의 •소재지 : 은평구 녹번동 160-36 (☎355-1485)

부 서 별	감 사 사 항	시 정 및 처 리 요 구 항
공원녹지과	<p>○웬스보수 및 도색</p> <p>○노인 급식방법 개선</p>	<p>○서대문공원, 산복도로, 서대문 소공원등 관리가 무방비 상태임. 웬스가 부서져 나일론끈으로 묶어 놓고 잔디도 없으며 나무 또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임.</p> <p>- 산복도로에 있는 시설물중 웬스가 부식하여 많이 망가져 있고 또한 도색을 하지 않아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하기 바람.</p> <p>○서울의 한복판에서 아직까지 불우이웃돕기로 중식을 하고 있어, 외국인등에게 치부를 드러내는 모양이 좋지 않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p>
사회진흥과	<p>○새마을 소득지원금 관리</p> <p>○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금의 무분별한 대출 및 사후 관리 미흡</p>	<p>○새마을 소득지원금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장기 체납자 증가와 타지역 이주자가 발생되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 향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매월 1회정도 상환을 독려하여 빠른 기간내에 상환하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주기 바람.</p> <p>○ <지적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대상자 선정의 부적정 - 대출가구 전출로 인한 회수 곤란 사례 다수 발생 <p><시정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대상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사후 관리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여 회수불능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요함.

Ⅲ. 民願處理

○ 請願

청원은 住民이 地方議會에 일정한 意見 또는 希望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住民의 權利 또는 利益이 侵害되었다고 할 때 구제를 호소하는 하나의 住民權利이다.

청원은 議員紹介가 있어야 하며, 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은 의회의 審議·議決 대상이 된다.

○ 陳情

진정은 住民의 權利와 利益이 侵害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要請한다든가, 또는 建議나 希望을 표시하기 위하여 地方議會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陳情書는 지방의원의 紹介없이 자유로이 提出하는 것으로써 議會의 議決을 요하는 案件은 아니다.

1. 現 況

총 계	청 원				진 정 서			
	소 개	처 리	미처리	철 회	소 계	처 리	미처리	반 려
1	1	1	·	·	11	11	·	·

2. 請願處理

【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 】

가.청원 요지

- 건 명 : 홍은동 범바위주변 불법훼손 진상규명 요구 청원
- 접 수 : 1995. 12.22
- 청 원 인 : 서대문구 홍은동 10 -233, 김성순
- 소개의원 : 박 덕 균
- 청원내용 :
 - 홍은동 연합주택조합은 홍은동 10 - 233 소재 13세대 빌라와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부지 조성공사를 난폭하게 시행하여 지역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당하였으며,
 - 조합아파트 부지를 무리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부지경계선 일대의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를 상당면적 불법 훼손하여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 수백년동안 토속신앙의 기도처로서 신성시 전해 내려오고 있는 「범바위」를 불법침해하여 일부 소멸됨에 따라 「범바위」를 홍은동 마을 수호신으로 수호하고 있는 주민과 토속신앙인들이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음에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조합측은 「범바위」를 위협물이라하여 무참히 훼손하여 가면서 그자리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 자연환경 보존과 범바위 원상회복 및 보존을 위해 이를 명확히 규명하여 달라는 청원임.

나. 심사경과 사항

- 1차 심사 : '96. 3.16 제39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
 - 심사결과 - 범바위 주변 자연녹지 불법훼손 사항에 대하여 주민입회 하에 경계명시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 하도록 의결.
- '96.3.20 - 경계명시 현황측량 요청

- '96.5.16 홍은동 김길만이 고소한 '도시공원법 피의사건' 은 무혐의로 통보됨.
- 경계명시 현황측량
 - 일 시 : '96. 5.22(수) 10:00 ~ 11:00
 - 위 치 : 홍은동 산1 - 64 조합아파트 경계지역(일명 범바위)
 - 측량기관 : 대한지적공사 서대문출장소 (기사3명)
 - 측량주관 : 연합주택조합
 - 참관인 : 17인 (주민3, 구의원2, 공무원6, 조합1, 시공회사5)
 - 결 과 : 콘크리트 옹벽은 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연녹지 및 범바위 훼손여부는 현장확인 사항임

다. 토론 요지

- 절개지 부분에 대한 10m에 상당한 콘크리트 옹벽 설치공사는 절개지 공사 안정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되며,
- 일명 범바위가 토속신앙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 심사경과 기간중 김길만의 「도시공원법 피의사건」이 혐의없는 것으로 되어 있음도 참고해야 할 것임.

라. 심사결과

-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설치공사는 조합아파트 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원인께서 요구하고 있는 자연녹지훼손에 대한 원상 복구조치에 대하여 '95. 8월중 그 일부를 감독기관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법조치된 사실이 있고 일부 훼손되었다는 범바위는 주변의 제반 여건으로 보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3. 陳情處理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번호	월 일		성 명	주 소	
1	'96년 1월18일	홍제동 273-169 사도건설 관계서류 의 신청	이갑열	서대문구 홍제동 273~169	도시정비과에서 기 처리된 민 원으로 8회에 걸쳐 회신한 바 있음.
2	96년 2월13일	홍제동유원APT 뒷문 장애물철거 요청	금강정 사 리수실	서대문구 홍제3동 산1~162	'95. 5.28입주자 대표회의에 서 진입로 철문설치, 진입로 폐 쇄로 다시 개방함
3	96년 3월18일	96. 6착공된 제일 교회 신축공사로 문화주택 균열등	김도성 외26인	서대문구 홍제3동 283~21	균열등 건물피해사항은 민사적 으로 해결토록 권고, 소음·진 동등 공사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시함
4	96년 3월27일	대현제1구역 재개 발 아파트 불법입 주자처리를 위한 조사위구성요청	남복성 외1인	서대문구 대 현동 54~24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에 의 거 조사할 수 있음. 다만 발의 하기 위해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함
5	96년 4월2일	연희동산2-90한양 아파트 조합주택사업승인 요청	오재선 외 198	경기도 과천 시 중앙동1번 지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서류 심도있게 검토중임
6	96년 5월8일	재개발지구에 포함 된 사찰의 이전 문제	리수실	서대문구 홍 제동 산 1~162	금강정사는 토지수용법에 의거 시행조합에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바 당해조합과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
7	96년 6월8일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부과에 대한 시정·협조	배경남 외4인	서대문구 남 가좌동 237- 305	변상금 부과는 지방재정법 제87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면제는 불가하며 분할납부는 가능함

접 수		건 명	진 정 인		처 리 결 과
번호	월 일		성 명	주 소	
8	96년 6월15일	홍제동 342 초원연 립주택 고층아파트 화 반대	이명규 외104	서대문구 홍제1동 335~10	재건축과 관련 구청에 공식적 으로 접수된 바 없음
9	96년 6월15일	재활용품 적치장 이전요청	김홍기	서대문구 북가좌동 417~9	진정장소는 대형생활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로 난지도 반입 이 정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체된 것으로 조속히 처리하 겠음
10	96년 7월11일	모래내천변 하천부 지 대여 요청	박상균	서대문구 홍은동 418~38	점용허가 신청지는 둔치까지 물이 넘쳐흐르는 지역으로 인 명·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됨 허가 불가
11	96년 9월2일	서대문구 노인대학 교육비 지원의 건	이영우	서대문구 홍은동 9~794	관내 등록 노인교실중 2개소에 운영비를 연 4,800천원 지원하 고 있으나 차후 이용인원 등을 고려 증액지원을 고려하겠음
12	96년 10월24 일	홍제동 342초원연 립주택 고층아파트 화 반대	이명규	서대문구 홍은동 335~10	초원연립 재건축사업은 '96. 8.18. 사전결정서가 접수되어 사전결정특하였으나 사생활침 해, 일조권상실 등 진정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통 보

Ⅳ. 研修 및 세미나

1. 議員研修 및 세미나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참석인원	비 고
'96.7.8 ~ 7.12	지방의회 비교 시찰	○의회 운영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등 비교시찰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목포시의회 • 신안군의회 • 서귀포시의회	(14명) 의원9명 직원5명	
'96.11.7 ~ 11.9	구례 그로리 관 광호텔	○행정사무감사대비 구정질문, 예산심의 토론 세미나	...	(35명) 의원29명 직원6명	
'96.11.22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	○'96정기회 대비 행정사 무 감사 및 예산심의 기법 예산심의 기법	○박옥순 교수 (명지전문대)	(35명) 의원29명 직원6명	
'96.12. 6	금모래신협지소 (남가좌2동소재)		○박옥순 교수 (명지전문대)		

2. 海外研修

방 문 기 간	방 문 국 가	연 수 목 적	연 수 인 원	소요예산
(제 1 차) '96.1.28 ~ 2.10	피지, 뉴질랜드, 호주등 3개국 9개도시	해외 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견학	15명 의원12명, 직원3명	38,478천원
(제 2 차) '96.5.29. ~ 6.10	덴마크,노르웨이, 스웨덴,핀란드, 네덜란드,러시아	해외 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견학	24명 의원19명, 직원5명	62,386천원

◆ '96년 제 1 차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 보고서 ◆

1.시찰 개요

가.시찰목적

- 해외 의회제도 및 운영실태 비교
- 국제 경쟁시대의 해외 현장 체험
-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실무 행정능력 제고 등

나.기간

- 1996년 1월 28일(일) ~ 2월 10일(토)

다.시찰국 : 3개국 11개 도시

- 피 지 : 나디, 마나섬
- 뉴질랜드 : 오클랜드, 로토루아, 크라이스트처치, 마운틴 쿡, 퀸스타운, 테아나우, 밀포드사운드
- 호 주 : 시드니, 브리스베인

라.시찰단 및 부여과제

구 분	성 명	소 속	부 여 과 제
단 장	송영우	의 장	시찰단 총괄
부단장	김평락	부 의 장	시찰단 총괄보좌 및 의회현황
총 무	이석문	운영위원회 간사	시찰단 일정 및 재정관계
의 원	기창표 김종섭 김영일 최광진 홍성덕 정일수 정일출	시민건설위원회 " " " " " 총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분담현황
공무원	한중현 노남규 조희동	전문위원 의회협력계장 의안계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기간중 의원보좌 •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업무 비교 고찰

2. 주요도시 시찰내용

○ 오클랜드 : 뉴질랜드 ○

가. 일반현황

뉴질랜드 구 수도였던 오클랜드시는 7개의 구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뉴질랜드 전 국민의 약 1/3이 이 도시에 거주하며 면적은 268km² 임.

나. 방문지역

오클랜드 시청, 쓰레기 매립장, 마운틴 쿡, 마오리 민속촌

다. 주요시찰 내용

○ 오클랜드 시청

- 시 장 : 오클랜드 전체시민이 직접 선출하며, 시의회 의장이 겸직하고 있음
- 시의원 : 24명
- 상임위원회 : 9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행정업무 및 조직

- 행정업무 관장 및 시정부 수뇌는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4명의 국장 및 그 이하 직원통솔
- 4개국 조직 현황
 - 시용역 사업국 : 시 정부 사업 즉 도로, 하수, 폐기물처리, 주차차시설, 공원등의 업무를 지역사무소를 통해 관장
 - 재 무 국 : 재산 및 회계, 재무
 - 기획 및 개발서비스국 : 시정의 각 분야 책임자 협조하에 기획분야 전반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되도록 함

○ 쓰레기 매립장 견학

- 현장 설명 및 현황 청취
- 개인회사에 쓰레기 매립량, 기간, 관리 등을 용역

- 개인땅을 임대해서 지하200m 굴착 후 지하로부터 매립하며 매립이 끝나면 다른곳으로 이전 (계약기간은 통상 30년)
- 1일 매립량은 약 600톤으로 오클랜드시의 1/3을 매립하고 있음
- 매립장 주변에 50m높이의 파이프 망을 설치하여 쓰레기등이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침하수가 토지를 오염시키는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으며,저수지를 만들어 정수된 침하수에 오리 등을 키우고 있었음.
- 반입되는 쓰레기를 보면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어 인구비례로 볼 때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고 있었음.

● 크라이스트처치 : 뉴질랜드 ●

가. 일반 현황

영국의 19세기를 재현한 뉴질랜드 남섬 제일의 도시로 도시 전체가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방문 지역

크라이스트처치 대성당, 빅토리아 광장, 헤글리 공원, 전쟁기념물 등 도시시설물

다. 주요시설 및 하천

-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에는 꽃축제등 시민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물오리,고기떼등이 서식하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음
- 보도, 차도 경계지점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턱을 설치한 점등은 특히 눈길을 끌었음
- 자연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은 감탄을 자아내며, 시민공원내에는 일체의 민간 시설물이 허가되지 않고 있음
- 가로환경 유지에 따른 공해 방지책으로 광고물 규제가 엄격

○ 시드니 의회 : 호 주 ○

가. 일반현황

인구 40만명으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써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도시임
하버브리지, 오페라 하우스, 서큘러 부두, 하이드 파크, 환락의 거리 킹크로스
그리고 주정부 청사가 위치하고 있음

나. 시찰내용

- 주의회의 정부형태 : 영국과 미국의 정치형태를 혼합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
- 주 의회 조직
 - 위원회 : 10개 상임위원회
 - 위원수 : 99명
 - 임 기 : 4년
- 18세이상 투표권이 있으나 투표에 기권하면 50불 벌금 부과
- 교통정책 : 지하철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에는 15분 간격, 평시에는 1시간 마다 1대씩 배차
하고 있어 자가용이 필수요건임

○ 브리스 베인 : 호 주 ○

가. 일반 현황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주인 퀸스랜드의 주 도시로 인구는 약 25만명이며 강
우량이 적은 도시임

골든 코스트시내에는 30층 이상의 높은 임대아파트와 약32km의 해변, 코알라
와 캥거루보호구역, 조류공원 및 약30만평의 동물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나. 시찰내용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양한 교통정책 개발 확대시행
- 도로 교통위반은 무인카메라를 활용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교통경찰관을 볼

수가 없었음

- 횡단보도에 수동버튼 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인이 없을 때 교통흐름 차단을 사전방지
- 보도블럭을 다양한 색상으로 설치하여 도시전체에 예술적 감각을 잘 표현하고 있음

다. 기타사항

- 가족 및 노인 수당지급등 시민을 위한 복지분야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수당지급시 운동실적이 있어야 수당지급하므로 건강생활을 유지토록 함
- 시 청사 건물은 시민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행사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하여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3. 시찰의견

13박 14일의 일정으로 남태평양 3개국에 대한 시찰을 통하여 우리 의원들이 보고 느낀 것들은 극히 피상적인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고국을 떠나 서구식의 다른 정치, 경제, 문화시설들을 직접 접하면서 느낀 감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으며, 다시한번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0년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단기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책 결정과정과, 긴 안목에서 정확한 수요 판단과 문제점을 신중하게 분석한 후 결정된 사업을 차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급하게 서둘러 단기 일내에 끝내는 습성과 장래 예측 곤란 등의 이유로 단기적 목표 책정과 특정사업추진시 공명심을 앞세워 목표를 과다 책정하고 전시성 사업추진으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비교가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있는 자치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부터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세계화에 부응하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치보다는 내실을 중히 여기는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며, 일하는 시간 대에는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자기일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가정과 여가를 중시하는 개인위주의 다양한 생활패턴이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한 것 같으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자활심이 강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정신등이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강과 호수, 산과 바다 등 자연과 인간생활간에 조화와 균형이 있었으며 이를 깨지 않으려는 많은 노력들, 특히 쓰레기 처리, 자연환경 보호, 철저한 상하수 처리 등에 대해서 배울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정책들로 인한 재정소모와 개인주의적 성향, 안정에 따른 향락 추구등으로 인한 사회의 문제점들도 우리가 방문하는 도시의 구석구석에 얼룩과 그늘로 배어 있어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향의 나라만도 아니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와 공해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홍제천을 되살려 고기떼가 놀고 오리떼가 서식하는 살맛나는 서대문구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들에게 떼떼할수 있는 자치행정을 펼쳐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우리의 자치제도를 비교시찰하러 오는 나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96년 제 2 차 지방자치제도 비교시찰 보고서 ◆

1. 시찰 개요

가. 시찰 목적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의회제도, 환경 및 사회문화 시설 등의 비교시찰을 통한 폭넓은 견문과 전문 지식을 축적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기 간

1996년 5월 29일(수) ~ 6월 10일(월)

다. 시찰도시 : 5개국 8개 도시

- 덴 마 크 : 코펜하겐
- 노르웨이 : 오슬로, 라에달,
- 스웨덴 : 스톡홀름,
- 핀란드 : 헬싱키
- 러시아 : 성 페테스 부르그, 모스크바

라. 연수단 구성

구 분	성 명
단 장	임재선 의회운영위원장
1반(9명)	○부단장 : 김종철 총무위원회 위원장 ○총 무 : 이성배 " 간 사 ○반 원 : 김동덕, 이기봉, 정현철, 전성장, 김정현, 정혜연, 박노현
2반(9명)	○부단장 : 조갑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 ○반 원 : 정연식, 이진수, 박덕균, 조재구 강석준, 권재일, 오환인, 허준구

○공무원 : 5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구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 정 열	
"	의 정 계 장	조 영 환	
"	직 원	박 천 기	
"	직 원	고 석 민	
서 대 문 구 청	직 원	박 우 동	

라. 주요 시찰내용

- [덴마크 - 코펜하겐] : 콩겐스니 광장등 시민휴식공간 시설
- [노르웨이 - 베르겐, 오슬로] : 비겔란드 조각공원, 요한거리등 시내도로망 견학, 오슬로 의회 및 하수처리장 방문
- [스웨덴 - 스톡홀름] : 칼 요한 광장, 시청사등 시민휴식공간 시찰 스톡홀름 시의회 및 쓰레기 처리장 견학
- [핀란드 - 헬싱키] : 야시장, 문화센터, 건축가의 집, 올림픽 경기장등 시설물 견학
- [러시아 - 성 페테스부르크, 모스크바] : 에르미타주 박물관, 푸쉬킨 미술관, 문화시설 및 붉은광장, 대통령선거연설회 참관

2. 연수의견

○ 김종철 위원장(총무위원회)

● 청소 및 환경분야 ●

- 스탁홀름 쓰레기 처리장의 자원 재활용 및 관리상태는 20여년전부터 일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준높은 환경정책은 폭넓은 교류를 통해 우리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다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공공건물과接客업소는 분리수거를 의무화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 사치보다는 내실을 중히 여기는 검소한 생활과 대부분 연수국가의 국교가 기독교로 가정에서 여가를 즐기는 가족위주의 생활패턴들에서 오랜 민주주의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음.

○ 조갑현 위원장(시민건설 위원회)

● 청소 및 환경분야 ●

-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낮게하여 새벽에 흡입식 특수청소차로 보도와 차도를 청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건축물 폐자재류 처리를 차량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 원형의 홈통을 이용하여 처리하므로써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려는 공동체의식은 배울점이라 생각되며,
- 쓰레기 소각열을 발전, 냉난방,급탕에 이용하고 불연성 쓰레기처리 시설에서 알미늄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분리시설등은 향후 우리가 소각장 신설계 획시 반영이 요구됨.

○ 정현철 의원(총무 위원회)

- 스웨덴의 쓰레기처리장은 민간 위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협조로 오염 물질 최소화에 노력하는 면이 상당히 돋보였으며, 분리수거를 위한 법적 강제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잘 이행되고 있음
- 1953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핀란드의 신도시는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공원도시로 계획하여 개발한 점들은 매우 인상적임.

○ 전성장 의원(총무 위원회)

- 스웨덴등 연수국가의 지방자치가 100~150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온 체취를 새삼 느낄 수 있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음부즈맨 제도의 도입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도 권한 확대만 하지말고 전문인력 양성에 보다 많이 투자하여 공직의 전문성 확보등 여건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도 지방의 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그 위상과 중요성이 거듭 요구됨.

○ 조재구 의원(총무 위원회)

- 노르웨이는 풍부한 물을 이용하여 수력자원을 발전시켜 5인 가족기준 3개월 동안의 난방비 포함한 전기료가 월 평균 50,000원 정도로 국가가 부를 축적하여 국민의 복지혜택을 키운 결과임.
- 국왕이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스웨덴의 입헌군주제도를 보면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부러움과 함께 성숙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우리도 그러한 시대상을 정립토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함.

○ 허준구 의원(총무 위원회)

- 도시전체의 시설물을 계획성 있게 건설하는 점과 핀란드 헬싱키 시내의 시내 버스안내도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복잡한 시내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편의 시설로 무척 인상적이었음.
- 연수국을 방문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점은, 서유럽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태도, 외세의 침략이 반복된 국가이면서 민족유산을 잘 보존·관리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의 보존과 개발, 세계최강국이었던 러시아가 치안불안, 집단 결인이 많은 빈민국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소득 10,000\$시대의 우리에게 사회안정의 중요성등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연수국가의 지리,관습 등에 대해 좀더 많은 연구를 하지 못하고 방문했던 점이 아쉽게 생각됨.

○ 오환인 의원(총무 위원회)

-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정비되어 생활속에 자전거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고있으며, 건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여 도시 전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인 듯한 느낌을 주고 있음.
-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과 소각,미소각으로 세분하고 있음.
- 사회복지 제도가 훌륭히 시행되고 있으나 과도한 세금부담 등의 부작용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불합리한 단면도 보여주고 있음.

○ 정연식 의원(총무 위원회)

- 공공청사를 시민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점과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시 재정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은 우리의 행정풍토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음.
- 문화수준과 국민소득이 높은 관계로 교통질서등 질서외식이 몸에 배어 있음.

며 개인주의적 성향도 아주 뚜렷함.

- 러시아는 주택등도 국가소유로 사유재산이 통제되어 있으나 자유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야에서 느낄 수 있음.

○ 김동덕 의원(시민건설 위원회)

- 연수국인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GNP가 우리의 3배 정도이나 자동차가 대부분 소형이며, 특급호텔에서도 재생휴지를 사용하는 검소한 생활과
- 러시아에서 많은 도시건물들이 100년 이상된 건물들로 우리의 마구잡이식 건축과 철거문화를 자꾸만 생각하게 되었음.
- 또한 도시를 질주하는 차량들은 폐차대상의 낡은 차량들로 심각한 경제난을 실감할 수 있었으나 교통질서는 정연한 모습임.

○ 이진수 의원(시민건설 위원회)

- 차량의 60% 이상이 소형이며 양보운전등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있음
우리나라 60년대 수준의 전차 및 전기버스 등을 공해등 환경을 고려하여 현재도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임.
- 임산물도 풍부한 나라들이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산림보호정책, 재활용품 센터에 수집된 나무상자 등을 연료로 사용후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는 점들은 우리도 적극 배워야 할 점들임.

3. 맺 음

지방자치의 역사와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의회제도와 사회문화 시설 등을 비교.시찰하고자 지난 5월 29일부터 12박 13일의 일정으로 비교적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었다는 북유럽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수단은 서구의 정치, 경제, 문화시설 등을 직접 접하면서 보고 배운사항들이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늘 격려해 주시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록

전화번호

서대문구의회 · 구청

서울시 각구청

서울특별시의회

유관기관 및 각종
안내전화

서대문구의회 · 구청 전화번호

구의회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의 장	364-5900	의 사 계	364-5903
부 의 장	364-5901	의 안 계	364-5904
사 무 국 장	364-5905	의 원 휴 계 실	390-4184
의 정 계	364-5902		

서대문구청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구 청 장	324-5994, 336-5878	담 당 관 문화관광계	330-1410, 330-1411
부 구 청 장	330-1303, 330-1333	(FAX)	330-1412
	324-7742, 330-1304	시설운영계	330-1430
	330-1334	(문화회관)	391-9032
		(FAX)	330-1560, 330-1561
기 획 실 장	338-0712, 330-1631		391-9031
기획예산 기 획 계	330-1632	총 무 국 장	324-7455, 330-1305
담 당 관 예 산 계	330-1315, 330-1316	총 무 과 총 무 계	330-1335
법 제 계	330-1317		324-6343, 330-1310
전 산 계	330-1318	인 사 계	330-1311
(FAX)	330-13139	동 정 계	330-1312, 330-1329
감 사 민원자동응답	330-1442	대의협력계	330-1313, 330-1314
담 당 관 구청기동처리반	323-0120	(FAX)	330-1323
감 사 계	330-1414	시 민 과	전화민원
조 사 계	330-1470, 330-1471		330-1449
민원관리계	330-1472, 330-1473	1 회 민 원	332-3001, 333-3001
(FAX)	330-1566	문서관리계	322-8282
문화공보 공 보 계	391-9031	호 적 계	330-1435, 330-1436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민원창구	330-1421, 330-1422	지가조사계	330-1452
자동응답(ARS)	330-1423~7	(FAX)	330-1498
(FAX)	330-1114	시 민 국 장	330-1307, 330-1337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330-1596	사회복지과 사 회 계	330-1355, 330-1357
생활체육계	330-1320	복 지 계	330-1356
시설관리계	330-1321	취업정보	330-1419
체육회관	330-1322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	330-1490, 330-1491
민방위계획계	395-8233~4	부녀청소년계	330-1492, 330-1493
민방위재난관리과 교육훈련계	330-1324	위 생 과 식품위생계	330-1360, 330-1361
재난관리계	330-1325	공중위생계	330-1362, 330-1363
안전지도계	330-1326	위생관리계	330-1364
병 사 계	330-1328	산 업 과 상 공 계	330-1365
	330-1327	유통지도계	330-1366
재 무 국 장	330-1306, 330-1336	연 료 계	330-1367
재 무 과 재산관리계	330-1340, 330-1341	가 스 계	330-1368
계 약 계	330-1342, 330-1343	환 경 과 환경관리계	330-1370, 330-1371
지 출 계	330-1344, 330-1553	수질보존계	330-1272
(FAX)	330-1429	대기보존계	330-1373
세부관리과 세입총괄계	330-1349	청 소 과	330-6000
징 수 1 계	330-1345, 330-1346	서 무 계	330-1375
징 수 2 계	330-1347, 330-1348	작 업 계	330-1376
(FAX)	336-2991	재 활 용 계	330-1377
부 과 과 부 과 1 계	330-1350, 330-1351	장비관리계	330-1378
부 과 2 계	330-1352	차 고	373-2773
부 과 3 계	330-1353	도 시 정 비 국 장	330-1308, 330-1338
부 과 4 계	33-01354	주 택 과 주 택 계	330-1380
조사평가계	330-1554	주택관리계	330-1381
지 적 과 지 정 계	330-1495	주택정비계	330-1382
토지관리계	330-1450	대 기 실	330-1358
지적관리계	330-1497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주택개량과 개 량 1 계	330-1455	도로조명계	330-1563
개 량 2 계	330-1456	금 화 터 널	313-7902
주거환경계	330-1457	대 기 실	364-5965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330-1385, 330-1386	(FAX)	330-1615
광고물관리계	330-1387	하 수 과 하 수 계	330-1415, 330-1416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	330-1481, 330-1482	하수과징계	330-1417, 330-1418
교통시설계	330-1483	대 기 실	330-1580
자동차정비계	330-1627, 330-1628	(FAX)	330-1547
자동차등록계	330-1484, 330-1444	공원녹지과 공 원 계	330-1395, 330-1396
(FAX)	330-1445	녹 지 계	330-1397, 330-1433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	330-1485	독 립 공 원	330-1398
교통과징계	330-1486	대 기 실	364-4686, 330-1394
운수지도계	330-1487	기 타	
단속원(여)	330-1432	종 합 상 황 실	333-4599, 337-200
단속원(남)	330-1589	당 직 실	330-1300, 330-1330
공익요원실		FAX	336-0425
건 축 과 건축관리계	330-1390, 330-1391	대 회 의 실	330-1431
건 축 1 계	330-1392	기 획 상 황 실	330-1570
건 축 2 계	330-1393	지 하 상 황 실	330-1434
영 선 계	330-1448	공 직 자 윤 리 위 원 회	330-1438
건 축 과 건축민원실	330-1567	전 산 실	330-1460
(FAX)	330-1440	자 료 실	330-1439
건 설 국 장	330-1309, 330-1391	전 화 기 계 실	330-1331, 330-1332
건설관리과 관 리 계	330-1399, 330-140	전 기 실	330-1374
보 상 계	330-1401, 330-1402	기 관 실	330-1474
가로정비계	330-1446	등 사 실	330-1475
증기등록	330-1559	운 전 기 사	330-1477
신촌초소	330-1447	대 기 실	330-1478
토 목 과 토 목 계	330-1405, 330-1406	총 무 과 (남)	330-1359
도로관리계	330-1407, 330-1562	주 차 타 위	330-1420

구 분	전 화 번 호	구 분	전 화 번 호
청 사 정 문	330-1593	방 사 선 실	390-4448
청 사 후 문	330-1594	약 국	390-4449
중 대 본 부	330-1479	안 내	390-4413, 390-4414
증 지 판 매	330-1409	당 직 실	390-4415
구 내 식 당	330-1591, 330-1592	기 사 실	390-4416
청 소 노 조 지 부	324-7685	기 관 실	390-4417
구 내 약 국	330-1488	전 화 기 계 실	390-4331
구 내 상 업 은 행	324-1318	동 사 무 소	
보 건 소		총 정 로 동	363-2142~4
보 건 소 장	362-3534, 390-4421	천 연 동	363-2533~5
보건기획계	390-4422, 390-4410	현 저 동	363-3481~3
보건행정과 운영계	390-4411	북 아 현 제 1 동	363-4251~3
방역계	390-4412	북 아 현 제 2 동	363-4273~5
(FAX)	392-2137	북 아 현 제 3 동	363-4913~5
보건지도과 보건지도계	390-4424, 390-4425	대 신 동	363-7542~4
가족보건계	390-4426	창 천 동	363-5851~3
건강관리계	390-4427	연 회 제 1 동	322-1381~3
의 약 과 의 무 계	390-4423, 390-4425	연 회 제 2 동	322-3146~8
약 무 계	390-4441	연 회 제 3 동	322-3121~3
검 진 계	390-4442	흥 제 제 1 동	391-4541~3
결 핵 관 리 실	390-4428, 390-4429	흥 제 제 2 동	733-2791~3
예 방 접 종 실	390-4430	흥 제 제 3 동	394-3271~3
검 진 실	390-4431	흥 제 제 4 동	733-3581~3
영 유 아 실	390-4432, 390-4433	흥 은 제 1 동	3216-4491~3
모 성 실	390-4434	흥 은 제 2 동	396-4211~3
가 족 계 획 실	390-4435	흥 은 제 3 동	396-4811~3
내 과	390-4443	남 가 좌 제 1 동	375-7501~3
치 과	390-4444	남 가 좌 제 2 동	375-6222~4
물 리 치 료 실	390-4445	북 가 좌 제 1 동	374-7241~3
임 상 병 리 과	390-4446, 390-4447	북 가 좌 제 2 동	375-4181~3

서울시 민원전화는 국번없이 120번으로

서울시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상담·문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서울시 「120 민원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본청 : 국번없이 120번
자치구 : 해당국번 + 0120번

전화번호 및 코드 번호	민원내용
1번 + # →	수 도 민 원
2번 + # →	교 통 민 원
3번 + # →	의 학 정 보 제 공
4번 + # →	행 정 법 규 상 담
5번 + # →	주 택 상 담
6번 + # →	관 광 안 내
7번 + # →	도 시 계 획 상 담
8번 + # →	지 방 법 률 상 담
9번 + # →	지 방 세 세 무 상 담
10번 + # →	건 축 상 담
11번 + # →	중 소 기 업 지 원 및 구 인 구 직 안 내
12번 + # →	시 정 안 내
13번 + # →	공 직 자 부 조 리 신 고
14번 + # →	생 활 관 련 신 고 및 고 발
15번 + # →	시 설 물 체 손 신 고

- [이용요령] • 버튼식(전자식) 전화기로 국번없이 120번을 누르십시오.
•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이용코드번호와 전화기 0번 오른쪽의 “#”을 누르시면 해당상담센터에 전화가 연결됩니다.

- [운영시간] • 상수도민원, 교통민원, 의학정보제공은 24시간 운영하고 그밖의 민원 신고 및 상담은 근무시간중에만 운영합니다.

서울시 각 구청 전화번호

구 청	구청장실	대표전화	당직실	일반민원 (시민봉사실)	총무과	보건소	각구의회
총 로	731-0333	731-0114	732-2000	731-0435	731-0310	725-6982	723-6813~5
중 구	260-1303	260-1114	266-2000	260-1301	260-1310	250-4401	269-3103~7
용 산	710-3333	710-3114	710-3300	710-3301	710-3310	710-3422	790-4381~6
성 동	290-7333	290-7114	290-7300	290-7435	290-7310	290-7422	299-1544~7
광 진	450-1333	450-1114	453-0001	450-1301	450-1310	450-1422	450-1441~7
동 대 문	920-4303	920-4500	920-4300	922-3001	920-4310	920-4420	214-8040~5
중 량	490-3303	490-3114	490-3300	433-3001	490-3310	490-3422	438-6011~8
성 북	920-3333	920-3500	920-3300	920-3301	920-3310	941-2672	927-8094~7
강 북	901-6333	995-0120	901-6300	901-6435	901-6310	901-6422	901-6441~7
도 봉	901-5333	903-3001	901-5300	901-5301	901-5310	901-5422	997-8813~8
노 원	950-3333	950-3114	950-3300	938-3301	950-3310	950-3422	950-3441~7
은 평	389-2000	350-1399	389-2000	350-1301	350-1310	350-1691	350-1441~7
서 대 문	330-1333	330-1114	330-1300	332-3001	330-1310	390-4411	364-5900~4
마 포	324-2000	330-2114	330-2300	330-2301	330-2310	330-2422	325-1987~8
양 천	650-3333	650-3114	650-3300	645-3001	650-3310	650-3422	652-7234~5
강 서	603-0001	600-6114	602-2000	600-6435	600-6310	3664-6932	3664-1810~5
구 로	856-2442	860-2114	856-2000	853-3001	860-2310	860-2266	852-0272~4
금 천	890-2303	890-2114	890-2300	890-2435	890-2310	890-2422	896-5765~7
영 등 포	670-3333	670-3114	633-2000	634-3001	760-3310	630-0311	670-3446~7
동 작	814-2000	820-1114	814-0001	820-1301	820-1310	820-1422	823-6492~4
관 약	888-0001	880-3114	874-2761	877-3001	880-3310	874-2761	880-3441~7
서 초	574-1230	570-6462	588-2000	570-6301	570-6310	570-6572	570-6670~80
강 남	510-1333	510-1114	545-2000	510-1420	510-1310	3451-2510	561-9947~9
송 파	415-0881	410-3114	410-3300	410-3434	410-3310	410-3422	203-1811~4
강 동	478-2000	480-1114	477-0001	476-3001	480-1310	224-0710	224-9071

※ 기타 전화번호는 “대표전화”에 문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시 의회

직 책	연 락 처	직 책	연 락 처
의 장	723-6981~2	의 사 담 당 관	725-1981~3
사 무 처 장	723-6983~6	의 안 담 당 관	723-9231~4
의 정 담 당 관	723-7761~4		

시의원 명단

선 거 구	성 명	소속상임위원회	연 락 처
제1선거구 (충정, 북아현1.2.3, 대신동)	문 석 진	내무위원회	363-6050
제2선거구 (창천, 연희1.2.3동)	이 강 옥	도시정비위원회	322-0678
제3선거구 (천연, 현저, 홍제1.2.4동)	박 정 구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장	735-2527
제4선거구 (홍제3, 홍은 1.2동)	김 옥 원	내무위원회 간사 ('96. 9.12 보궐선거)	395-8147
제5선거구 (홍은3, 남가좌2동)	김 평 락	수자원관리위원회	303-4747
제6선거구 (남가좌1, 북가좌1.2동)	신 경 식	내무관리위원회	754-0058
비례대표	김 방 림	도시정비위원회	307-7142

유관기관 및 각종 안내전화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마포구 공덕동 105-1)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국민생활침해사범신고	3273-3333	3 호 수 사 관 실	711-4387
지 청 장 실	706-1691	공 안 과 장 실	711-4382
차 장 검 사 실	706-1692	공 안 과	711-4383
형 사 제 1 부 장 실	706-1693	사 건 과 장 실	706-8656
형 사 제 2 부 장 실	706-1694	사 건 과	706-8657
특별수사부장실	706-1695	집 행 과 장 실	706-6740
사 무 국 장 실	706-8291	집 행 과	711-4381
서 무 과 장 실	706-8292	법 률 구 조 공 단	
수 사 과 장 실	711-4384	서 부 직 할 출 장 소	
1 호 수 사 관 실	711-4385	자 동 상 담 실	700-2080
2 호 수 사 관 실	711-4386	법 률 상 담 실	713-6009
		전 담 변 호 사 실	707-3749

서대문 경찰서

(미근동 163)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 장 실	362-2345	형 사 과	393-1683
경 무 과	363-0310	교 통 과	313-9395
민 원 실	362-4400	경 비 과	362-2546
위 민 실	362-7000	정 보 과	362-4450
방 범 과	362-6443	보 안 과	361-0113
방 범 순 찰 대	312-2418	경 우 회	362-2368
수 사 과	362-2548	경 목 실	

서부 경찰서 (은평구 녹번동 177)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	장	실	359-4100	정	보	과	387-0326	경	무	과	357-2527	보	안	과	384-0113		
민	원	봉	358-0112	경	목	실	355-8956	경	비	과	385-9191	방	범	순	찰	대	386-5210
교	통	과	359-0663	청	소	년	359-4941	청	소	년	지	도	육	성	회	359-4941	
방	범	과	384-0672	청	소	년	359-7000	경	우	회	모	범	운	전	자	회	355-8876
수	사	과	386-3766	모	범	운	372-2578	모	범	운	전	자	회				
형	사	과	358-6112														

파 출 소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파출소명	관할지역	전화번호
충정로파출소	충정로일부	362-3557	연궁파출소	연희2동	334-0113
의주로파출소	충정로일부, 미근, 합동	362-3558	연희파출소	연희3동 일부	334-5169
독립문파출소	영천, 옥천동	363-5316	홍연파출소	"	334-0112
천연파출소	냉천, 천연동	363-2513	홍은1파출소	홍은1동	3216-9947
현저파출소	현저동	363-6696	홍은2파출소	홍은2동	395-1775
북아현1파출소	북아현1동	362-1615	홍서파출소	홍은3동 일부	303-9902
북아현2파출소	북아현2동	362-4476	홍남파출소	홍은3동 일부	391-5568
북아현파출소	북아현3동	362-3559	홍제파출소	홍제1동	396-5247
대신파출소	대신동일부 신촌, 봉원동	393-0113	안산파출소	홍제2,4동	735-8254
대현파출소	대신동일부	363-0469	문화촌파출소	홍제3동	379-6737
신촌파출소	창천동	392-2113	남가좌1파출소	남가좌1동	373-4762
연희1파출소	연희1동일부	336-0113	남가좌2파출소	남가좌2동	373-4113
서연파출소	연희1동일부	324-7110	북가좌1파출소	북가좌1동	372-5488
			신가파출소	북가좌2일부	372-0520
			북가좌파출소	북가좌2일부	302-1443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251)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안 내	287-4613~4	재 산 세 과 장	287-4330
당 직 실	287-4611~2	재 산 1 계	287-4331~5
민 원 봉 사 실	379-2100	재 산 2 계	287-4341~4
F A X	287-4674	법 인 세 과 장	287-4400
서 장	287-4201~2	법 인 1 계	287-4401~5
총 무 과 장	287-4240	법 인 2 계	287-4411~5
행 정 계	287-4241~4	법 인 3 계	287-4421~5
징 세 계	287-4251~4	부 가 가 치 세 과 장	287-4500
소 득 세 과 장	287-4260	부 가 1 계	287-4501~5
소 득 1 계	287-4261~6	부 가 2 계	287-4511~5
소 득 2 계	287-4281~6	부 가 3 계	287-4521~5
		소 비 세 계	287-4541~2

서부 세무서 (은평구 응암동 84-5)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안 내	380-0114	소 득 세 1 과	380-0261~9
당 직 실	380-0611~2	소 득 세 2 과	380-0281~6
민 원 봉 사 실	380-0221~4	재 산 세 과	380-0330~6
F A X	352-9294	법 인 세 과	380-0400~5
서 장	380-0201~2	부 가 세 1 과	380-0501~5
총 무 과	380-0240~5	부 가 세 2 과	380-0561~8

은평수도사업소

(홍제 4산1-173)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 장 실	730-3859	요 금 과	722-0655~7
총 무 과	730-3852~3	공 무 1 과	730-3854~6
민 원 상 황 실	730-3850	공 무 2 과	730-3857~8
상 황 계 (FAX)	722-3602		
관 리 과	720-9262~3		

서대문교육청

(대현동 67-2)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교 육 장 실	362-1090	관 리 국 장	362-1201
학 무 국 장	362-1095	관 리 과 장	363-2751
초 등 교 육 과 장	362-0544	서 무 계	363-2755
초 등 교 육 계	364-6613	문 서 수 발 실	313-4507
유 아 교 육 계	392-6586	당 직 실	363-2751
학 사 계	363-2752	관 리 계	362-1420
중 등 교 육 과 장	364-6616	기 획 감 사 계	362-1432
중 등 교 육 계	362-0804	전 산 실	313-4908
교 육 상 담 실	362-5796	재 무 과 장	362-7289
과 학 기 술 계	312-2701	경 리 계	363-2753
사 회 체 육 과 장	362-9490	관 재 계	363-2754
사 회 교 육 행 정 계	362-1729	시 설 과 장	363-0170
사 회 교 육 지 도 계	364-8783	시 설 1 계	364-8784
체 육 청 소 년 계	362-7288	시 설 2 계	364-8785
학 교 보 건 계	364-8782	F A X	364-6057~9

서부 소방서

(은평구 녹번동 48-5)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 장 실	359-0119	북 가 좌 파 출 소	372-0119
소 방 과	355-1119	(북가좌 333-9)	
방 호 과	357-8509	연 회 파 출 소	336-0119
F A X	382-1149	(연회 81-10)	

종로 소방서

(종로구 수송동 146-2)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서 장 실	733-0119	서 대 문 파 출 소	312-2119
소 방 과	723-2124	(미근 165)	
방 호 과	722-0120		

서대문 등기소

(은평구 응암동 95-1)

안 내	민 원 접 수	F A X
382-0153	352-0999	355-0458

우 체 국

우 체 국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서 대 문 우 체 국	창천동 98-3	324-0014
신 촌 우 체 국	대현동 90-68	362-0205
홍 제 동 우 체 국	홍제1동 158-45	379-3790
모 래 내 우 체 국	북가좌2동 424-29	373-2005
연 회 동 우 체 국	연희2동 90-15	333-6004
연 대 우 체 국	신촌동 134	392-0205
이 대 우 체 국	대현동11-1	312-0500
명 지 대 우 체 국	남가좌동 50-3	373-0182
경 찰 청 우 체 국	미근동 209	393-2001
홍제 3 동 우편취급소	홍제3동 278-10	391-8910
홍은 3 동 우편취급소	홍은3동 275-28	395-2749
홍 남 우 편 취 급 소	남가좌2동 338-39	307-2005
독 립 문 우 편 취 급 소	현저동 52-3	312-0225

전 화 국

우 체 국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광 화 문 전 화 국	홍제동 전지역	국번+0000
불 광 전 화 국	홍은, 남가좌, 북가좌지역	국번+0000
신 촌 전 화 국	기타지역	국번+0000

의료보험조합 (연희동 134-5 한일은행 2층)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이 사	338-1307	징 수 과	3141-2752~4
관 리 과	3141-4386~9	급 여 과	3141-4386~9
총 무 과	326-0658		

서대문도서관 (연희동 산2-113)

부 서 명	전 화 번 호	부 서 명	전 화 번 호
관 장 실	396-3156	열 램 과	396-3159
서 무 과	396-3157	관 외 대 출 실	379-8619
사 서 과	396-3158	F A X	391-6172

초 등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 화 번 호
미 동 초 등 학 교	미근동 36	1896	364-6524
경 기 초 등 학 교	충정로 2가 70	1965	336-2908
금 화 초 등 학 교	천연동 13	1924	364-9275
대 신 초 등 학 교	대현동 67-1	1965	363-1564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학부속초등학교	대신동 20	1955	312-5227
창 서 초 등 학 교	창천동 53-1	1961	332-9531
북 성 초 등 학 교	북아현 2동 215	1941	362-0669
추 계 초 등 학 교	북아현 3동 190-1	1965	312-7701
연 희 초 등 학 교	연희 3동 88-1	1968	336-4597
고 은 초 등 학 교	홍제1동 320	1971	395-6034
안 산 초 등 학 교	홍제 2동 산 44	1962	735-3069
홍 은 초 등 학 교	홍제 3동 286-5	1974	391-2196
인 왕 초 등 학 교	홍제 3동 245-1	1962	391-59722
홍 제 초 등 학 교	홍은 1동 산 48	1937	3216-3354
홍 연 초 등 학 교	홍은 3동 305	1975	379-6528
연 가 초 등 학 교	남가좌 2동 224-228	1973	309-0587
명 지 초 등 학 교	남가좌 2동 50-3	1967	309-1839
북 가 좌 초 등 학 교	북가좌 1동 376-17	1969	372-4042

중 · 고 등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 화 번 호
인 창 · 고 등 학 교	충정로 2가 69	1922	363-3393
동 명 여 자 중 학 교	천연동 31-1	1921	363-5042
금란여자중 · 고등학교	대신동 113	1960	392-4368
이화여자대학교사범 대학부속중 · 고등학교	대신동 47	1955	392-2062
한성중 · 고등학교	북아현 1동 170-1	1928	363-4943
중앙여자중 · 고등학교	북아현 3동 190-1	1940	393-5128
서 연 중 학 교	연희 1동 산 267-1	1985	332-7376
서 울 외 국 인 학 교	연희3동 55-1	1958	334-3660
신 연 중 학 교	연희 3동 산 2-6	1987	379-9233
연 북 중 학 교	연희 3동 산 141	1985	332-7377
한성화교중 · 고등학교	연희 3동 89-1	1968	324-0664
홍 은 중 학 교	연희 3동 186-3	1984	3216-0512
정 원 여 자 중 학 교	홍은 3동 산 11-97	1969	379-4310
명지중 · 고등학교	홍은 3동 354-1	1948	305-5953
명지여자중 · 고등학교	홍은 3동 354-1	1969	303-9230
연 희 여 자 중 학 교	남가좌 2동 368-1	1975	372-2992
한성과학고등학교	현저동 산5	1992	365-2851

대 학 교

학 교 명	소 재 지	설립년도	전 화 번 호
경 기 대 학 교	충정로 2가 71	1957	390-5114
감 리 교 신 학 대 학	냉천동 31	1895	361-9114
연 세 대 학 교	신촌동 134	1885	361-2114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현동 11-1	1886	360-2114
서 울 간 호 전 문 대 학	홍제3동 287-89	1954	395-8012
명 지 대 학 교	남가좌 2동 50-3	1970	300-1700
명지실업전문대학	남가좌 2동 50-3	1974	300-1000
추 계 예 술 학 교	북아현 3동 190-1	1974	362-4513

지 하 철

역 명	전 화 번 호	역 명	전 화 번 호
신 촌 역	334-7001	홍 제 역	736-0517
이 대 역	313-9713	무 악 재 역	736-0518
아 현 역	313-9712	독 립 문 역	733-7457
충 정 로 역	313-9711	서울시지하철공사	520-5114

기차역

역 명	전 화 번 호	역 명	전 화 번 호
신 촌 역	363-7788	가 좌 역	373-1280

관내소재 기타기관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기 관 명	전 화 번 호
경 찰 청	363-0112	서대문독립공원	364-4686
서울시건설안전관리본부	362-4286	종합사회복지관	375-5040
프랑스대사관	312-3272	금화터널관리사무소	364-5965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동아일보	361-0114